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학술발표회



-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 일시 : 2017년 3월 22일(수) 14:00 ~17:00
- 주최 : (사)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학술발표회



-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 일시 : 2017년 3월 22일(수) 14:00 ~17:00
- 주최 : (사)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학술대회 일정

14시 00분-14시 20분	[개회사]	[사회] 신영우(충북대)
	[축 사]	
14시 20분-14시 40분	[기조강연] 전봉준의 심문 전말과 처형 과정 발표 Ⅵ 이이화(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14시 40분-15시 05분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전봉준 장군 발표 Ⅵ 배항섭(성균관대)	
15시 05분-15시 30분	전봉준 장군의 정국 구상과 서울의 장소성 발표 Ⅵ 왕현종(연세대)	
15시 30분-15시 55분	역사인물의 동상 제작과 전봉준 장군 동상 발표 Ⅵ 신영우(충북대)	
16시 00분-17시 00분	종합토론	
17시 00분	폐회	

目 次

[기조강연] 전봉준의 심문 전말과 처형 과정	1
이이화(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전봉준 장군	13
배항섭(성균관대)	
전봉준 장군의 정국 구상과 서울의 장소성	45
왕현종(연세대)	
역사인물의 동상 제작과 전봉준 장군 동상	77
신영우(충북대)	
부록1 전봉준 공초	107
부록2 전봉준 판결선고서	135

전봉준의 심문 전말과 처형 과정

이이화(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目 次 >

1. 서울에서 전봉준 심문
2. 공초(供草)인가, 공초(供招)인가
3. 연이은 전봉준 구명공작
4. 다섯 지도자를 골라 사형판결
5. 왜 서둘러 사형 집행했나

1. 서울에서 전봉준 심문

전봉준은 1894년 12월 2일 순창의 민정들에게 잡혀 순창 소모영에 억류되어 있었다. 일본 정토군의 총지휘관인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는 호남소모관인 임두학을 압박해 전봉준을 인계받아 나주 초토영(招討營)에 끌고 와서 일본군이 설치한 순사청 임시 감옥에 가두었다. 미나미 고시로는 1895년 정월 끝 무렵, 나주에서 전봉준 손화중 등을 서울로 끌고와 진고개(지금의 충무로와 명동 일대) 언저리에 있는 일본영사관 순사청(지금의 중부경찰서 자리)에 가두었다. 전봉준 일행만이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에서 잡혀온 농민군 지도자들도 함께 여기에 갇혀 있었다. 당시 남산 밑에 있는 진고개 주변에는 일본인 거주지역이 있었고 일본 영사관과 영사경찰도 있었던 것이다. 순사청은 영사경찰이

업무를 보는 곳이었다.

진고개 일대는 경비가 삼엄한 안전지대여서 일본인들은 계다를 신고 돌아다닐 정도로 멋대로 활개를 쳤다. 또 일본 음식점과 주점도 있어서 유성기를 통해 일본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하였고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들도 거리낌이 없이 돌아다녔다.

전봉준이 일본영사관 순사청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서울 거리에 짹 퍼졌다. 그리하여 서울 주민들은 일본영사관이 있는 진고개 거리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어떤 사람은 동학군 괴수를 보러 왔다거나, 어떤 사람은 역적의 거괴를 보러 왔다거나, 어떤 사람은 창의군 대장을 만나 뵈러 왔다거나, 자기들 뜻에 따라 여러 말을 늘어놓으면서 떠돌았다. 물론 서울 주민들은 전봉준이 일본경찰의 엄중한 호위 속에 갇혀 있어서 그의 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었다.

전봉준은 서울에서도 일본군 군의에게서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노우에 공사를 비롯해 일본군 수뇌부와 일본공사관 관계자들은 전봉준 등 남접 지도자들을 순사청에 잡아놓고 나서도 아연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을 역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의 입을 통해 흥선대원군과의 연루사실을 캐내 죄를 물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어느 유력한 일본인이 전봉준에게 접근하여 “그대의 죄상은 조선국 법률에 비추어보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거니와 우리 일본 법률로 따져볼 것 같으면 상당한 국사범이라, 사형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수도 있나니 그대는 마땅히 일본인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재판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정부에 양해를 얻어 살길을 찾음이 좋지 아니하겠는가?”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일본은 곧 나의 적국이다. 내 구차한 생명을 위하여 적국에 살길을 찾음은 본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한 마디로 거절하였다.

당시 개화정부는 박영효 서광범 등이 실권을 잡고 있었다. 이들도 일본사람들보다 더 긴장하였다. 개화정부에서는 예전처럼 의금부에서 다루지 않고 법무아문 산하에 임시로 재판소를 만들어 다루게 하였다. 이를 권설재판소라 부른다. 권설재판소에서는 전봉준을 인계받는 형식을 취하여 재판을 진행시켰는데 재판장은 법무대신 서광범이었으나 회심(會審)이란 이름으로 일본영사가 빠짐 없이 참여하였다.

2. 공초(供草)인가, 공초(供招)인가

전봉준에 대한 1차 신문은 1895년 2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법무아문의 대신과 협판이 자리하고 있었고 일본의 영사가 입회하였다. 이를 조선시대 법률 용어로는 공초(供招)라 부른다. 이 공초 기록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국가기록원(「전봉준판결선고서」도 함께)에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공초의 한 본은 국한문 혼용, 한 본은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초(供招)는 ‘죄인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말’로 공사(供辭) 또는 초사(招辭)라 한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본 표지에는 공초(供草)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역지로 진술을 초기(草記)했다고 풀이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기록은 초기가 아니므로 이 표기는 근거가 없다 하겠다. 추정컨대 사서(司書)가 책을 정리해 보관하면서 세밀한 검토가 없이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

또 문초의 순서에 따라 제목을 붙였는데 초초(初招) 재초(再招) 삼초(三招) 문초(問招) 심문(審問)이라 표기한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 다른 사례를 들어 보면, 표지에 「중범공초(重犯供草)」 「이병휘공초(李秉輝供草)」 「이준용공초(李俊鎔供草)」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모두 규장각 소장본이다. 좀 더 검토가 요구된다. 하나 더 붙이면 국어사전 한자사전 법률사전 등에도 ‘풀초’ 자 공초는 나오지 않아 이 용어가 오류임을 증명해 준다.

아무튼 그 문초 과정을 살펴보자. 전봉준이 재판소에 출두할 적에 걸을 수 없어서 짚등우리에 누운 채 들어갔다. 담당 법관(장박)은 위압을 부려 좌우의 니줄을 호령해 전봉준을 일으켜 앉히려 들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묻고 대답하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문: 일개 죄인이라, 감히 어찌 법관의 앞에서 불공함이 심하는고?

답: 네, 어찌 감히 나를 죄인이라 이르나뇨?

문: 소위 동학당은 조정에서 금하는 바라, 네 감히 도당을 불러 모아 난리를 지은 자라, 반란군을 몰아 고을을 함락하고 군기 군량을 빼앗았으며 크고 작

은 벼슬아치를 마음대로 죽이고 나라 정사를 참람하게 마음대로 처단하였으며 나라의 세금과 공공의 돈을 사사로이 받고 양반과 부자를 모조리 짓밟았으며 종 문서를 불 질러 강상을 무너뜨렸으며 토지를 평균 분배하여 국법을 혼란케 하였으며 대군을 몰아 왕성을 휩박하고 정부를 부셔 버리고 새 나라를 도모하였나니 이는 대역 불궤(不軌, 역적의 행동)의 법에 범한지라, 어찌 죄인이 아니라 이르나뇨?

답: 도 없는 나라에 도학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나? 동학은 “사람을 하늘이라”하니, 과격하다 하여 금한단 말이나? 동학은 과거 잘못된 세상을 고쳐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나선 것이라, 민중에 해독되는 탐관오리를 버히고 일반 인민이 평등적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복을 채우고 음탕하고 샅된 일에 소비하는 국세와 공전을 거두어 의거에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고 여러 사람의 피땀을 굶어 제 몸을 살찌우는 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하여 귀천이 있게 하고 공토로서 사토를 만들어 빈부가 있게 하는 것은 인도상 원리에 위반이라, 이것을 고치자 함이 무엇이 잘못이며 악한 정부를 고쳐 선한 정부를 만들고자함이 무엇이 잘못이나? 자국의 백성을 쳐 없애기 위하여 외적을 불러들였나니 네 죄가 가장 중대한지라, 도리어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전봉준공초』)

법관은 연달아 전봉준이 흥선대원군과 연계했는지를 캐물었다. 전봉준이 다시 이를 완강하게 부정하자 주리를 틀고 고문을 가하면서 심문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의 적이라, 내 너희를 쳐 없애고 나라 일을 바로 잡으려 하다가 도리어 너희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나를 죽이는 것뿐이요 다른 말을 묻지 말라.

전봉준은 말을 마치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법관은 다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김방서 등을 차례로 불러 심문하였으나 이들도 전봉준과 같은 뜻을 말하였을 뿐 특별한 비밀을 토설하지는 않았다. 이들도 신문관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대하여 일본 기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다.

3. 연이은 전봉준 구명공작

한편 집강소 기간 전봉준을 만났던 일본의 낭인들은 2차 농민전쟁이 일어난 뒤 전봉준에게 접근하여 다시 회유작전을 벌이려는 공작을 꾸몄다. 그런데 일본군이 농민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자 이들이 일본 국내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폭탄제조범 강도범 따위의 죄명으로 체포령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천우협 관련 인사들은 전봉준 포섭작전은 작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이들의 일본 안에서의 활동이다. 천우협의 두목격이요 야심가인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일본 정부에서 지목을 받아 도망치는 몸인데도 히로시마에 있는 대본영으로 찾아가서, “동학당”의 본질에 대해 진술하기도 하고 “동학당”의 장래에 대해 크게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진언하였다. 그 진언의 내용은,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농민군을 이용해야 하는 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천우협 인사들이 직접 전봉준을 만나 설득하는 공작을 벌였다. 전봉준이 일본영사관 순사청에 갇히자 이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용하려는 공작을 꾸몄다. 예전 전봉준을 만난 적이 있는 다나카 지로(田中次郎)는 서울로 잠입하였다. 그는 영사경찰의 양해를 얻어 죄인을 가장하고 감옥으로 들어가 전봉준을 만났다. 다나카는 전봉준과 여러 정세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천우협의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전봉준에게 일본으로 탈출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은 그 후의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내 형편이 여기에 이른 것은 필경 천명이니 굳이 천명을 거슬러서까지 일본으로 탈출하려는 의사는 없다. 근일에 사형에 처해질 테니 그 뒤에는 천우협의 손으로 동학당(농민군을 가리킴)을 구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고 태연하고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다나카는 전봉준을 위로하고 감옥에서 나왔다.(『이용구의 생애』와 『홍주유적(洪疇遺蹟)』 등)

다나카는 이노우에 일본공사를 면회하고 전봉준을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희망하였다. 이노우에의 반응은 이러하였다. 이노우에 공사는 처음에는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동학당”을 흉적으로 보아서 미워하였다. 전봉준이 순사청 감옥에 갇힌 뒤 인격이 고결하고 행동거지가 엄숙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다나카의 희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뒤의 사정이 달라졌다.

전봉준을 조선 재판소에 인도해야 할 사정이 생겨나자 “사형을 시키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희망조건을 붙여서 신병을 인도했다. 이노우에가 본국으로 돌아가 머무는 동안 전봉준이 사형에 처해져 전봉준의 구명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이것이 전봉준 구출의 개요이다.

한편 다케다는 옥중에 있는 전봉준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다케다는 전봉준이 사형을 받던 날, 그 사실을 모르고 히로시마의大本營을 찾아가서 “동학당”의 본질을 설명하고 몇 가지 계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는 하룻밤 전봉준을 생각한 나머지 한통의 편지를 썼다.

그 내용에는, 전봉준이 추구하는 유불선 합일의 동학사상을 존중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귀천이 없고 평등이 보장된 개혁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또 조선은 힘이 약해 자주국가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도 하였으며 부정부패가 없는 좋은 세상을 여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 긴 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전봉준이 사형에 당하여 전달되지 않았으나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낭인들은 이처럼 전봉준이 추구하는 개혁이나 변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척하면서 회유책을 썼으나 전봉준은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손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깨끗한 신념을 다름없이 표방할 뿐이었다. 일본영사관에서는 먼저 그를 국사범으로 다루어 살려주고서 일본의 협조자로 만들려는 공작을 꾸미던 것이다. 또 천우협 인사들이 동원되어 전봉준의 회유를 벌였는데 다케다가 그 표면에 나선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높은 자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얻을 수도 있었고 출세의 길을 열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봉준의 신념은 너무나 단단하였다. 결코 그의 마음속에는 일본이나 개화정부와의 타협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그가 이용구처럼 변절해 일본에 협조하는 인물이 되었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일본은 한일 합병의 공작을 꾸미면서 북접농민군의 지도자인 이용구를 친일부역배로 만들어 이용하였던 것이다. 전봉준이 그런 꼴로 변절하였다면 동학농민혁명에 역사적 의미는 평가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4. 다섯 지도자를 골라 사형판결

전봉준과 성두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은 중죄인으로 취급되어 법무아문으로 넘겨졌다. 일본 영사경찰에서는 알아볼 것은 모두 알아보고 난 뒤 인도하였던 것이다. 일본측에서는 이들에게서 더 나올 중대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일본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려 검토하였지만 그랬다가는 그 정당성의 문제로 국내외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일본법을 적용하게 되면 전쟁의 장수 또는 포로의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수 있었다.

어쨌든 일본측은 이들 죄인을 법무아문으로 넘겼다고 하여 재판에 간여치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 영사 우치다는 회심(會審)이란 직함으로 재판에 끝까지 참여하였다. 하지만 조선 법에 따른 형식 요건과 절차를 갖추는 방법으로 조선의 권설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게 하였다.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는 “권설”(權設)의 의미는 임시로 설치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전의 의금부의 추국청(推鞠廳)을 개편한 기구나 다름없었지만 사건에 따라 새로 만든 기구였다. 추국청은 역적질을 한 중죄인을 다루는 기구여서 때로는 임금이 참석해 신문을 하기도 하였다. 권설재판소에도 사법의 총책임자인 법무대신이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

전봉준과 농민군 지도자들은 한성부 중부 서린방의 전옥서(典獄署, 의금부 옆에 있던 감옥)에 갇혔다. 전옥서 감옥은 지금의 종로 1가 종각역 1번 출구 언저리에 있었다.(제일은행 본점의 남쪽 종로 건너편, 종각의 서쪽 건너편에 있었다.) 전봉준은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호된 신문을 받았다. 이를 공초(供招)라 하였다. 공초 자리에는 법무아문의 대신과 협판이 자리하고 있었고 일본의 영사가 입회를 하고 있었다. 일본 영사가 참석한 것은 말로는 공정을 기하려 임석하거나 입회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감시의 역할을 하였다. 일본영사인 우치다 사다츠지[内田定槌]는 문초가 있을 때마다 거의 입회

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그 내용을 이노우에 공사에게 보고하였다.

재판관 장박은 전봉준의 성명 나이 거주지 직업 등을 물은 뒤 고부의 1차 봉기와 무장 봉기 등을 차례로 물었다. 사건 전개를 캐물으면서 중간 중간에 흥선대원군과의 연계 관계, 다른 지도자의 역할, 농민군의 규모 등을 물었다. 31일 동안 모두 6차례 신문하였는데 일본영사의 단독 신문이 2차례 있었고 총 문항은 275개였다.

전봉준은 당당하고 서슴없이 대답하였으나 기억이 희미하면 다시 살려내 대답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봉준은 질문이 중대한 일에 관련되는 내용이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여 죄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일관되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 한 토막, 전봉준의 사진이 찍혀져 역사기록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일본의 사진사인 무라카미 텐신(村上天真)은 일본 영사인 우치다로부터 전봉준의 호송 장면을 사진에 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무라카미는 2월 27일(양력) 일본 영사관 구내에서 사진을 찍었다. 나라여자대학 연구원인 김문자는 「전봉준의 사진과 무라카미 텐신」이라는 논문에서(『한국사연구』 154) 이렇게 쓰고 있다.

수괴 전봉준 및 최경선 두 사람은 발에 중상을 입어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사는 의사를 초치하여 정중하게 치료하도록 했으며 법무아문으로부터 회송해 온 들것에 태워 호송했다. 나는 미리 그들에 대한 촬영 건을 영사에게 조회해 두었기 때문에 즉각 달려가서 그 같은 사실을 봉준 등에게 알렸더니 그들 얼굴 가득히 희열을 보이면서 들 것 그대로 찍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스스로 명을 내려 일산을 치우게 했다. 그러나 촬영하는 동안에도 다친 곳이 아픈 모습이였다. 듣건대 봉준은 전라도 태인의 일개 농민으로 금년 40세로 평소에 대단히 학문을 좋아하고 공맹의 가르침을 믿었으며 동학도의 무리에 들어간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다고 한다.(〈메사마시신문〉)

이 사진은 찍은 날자보다 보름이 지난 3월 12일자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대판매일신문에서는 “압송 당하는 전봉준장군”이라는 제목을 붙여 사진과 같은 구도로 삽화를 그려 설명과 함께 게재하였다. 그런데 사진에는 나무 건물 앞에 전봉준을 포함해 네 사람이 드러나 있고 뒤에 얼굴 모습을 드러낸 제복 입은 순검이 보이고 있으나 삽화에는 건물을 삭제하고 다섯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왼쪽 순검복을 입은 사람이 빠져 있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전봉준의 사진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남아 있다. 여러 차례 신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전봉준의 입을 통해 흥선대원군의 개입을 확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기쿠치 겐조[菊池謙讓]는, 1894년 8월 초순 흥선대원군이 보낸 박동진과 정인덕이 동곡리 집에서 쉬고 있는 전봉준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전봉준과 대원군 사자와의 담화에서는 “경성 정부는 일본의 지휘로 행동하고 일본 군대는 대궐을 침범하여 서울은 모두 일본인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니 마땅히 대군을 움직여 경성에 진격해 와야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합심하여 일을 계획하여 왜군을 토벌하고 왜인을 쫓아내어 백성을 편안히 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이야기되었으며 청군의 대군도 잠시만 경성에 주둔해야 한다는 것을 의논하였다.(『동학당의 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자를 보낸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관련설에 대해 배항섭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봉준과 대원군의 접촉은 이미 교조신원운동 시기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원군은 자신의 정권 장악을 위해 동학교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며, 전봉준 역시 대원군을 이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항섭,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1997 겨울)

하지만 전봉준은 “흥선대원군은 유세한 사람이어서 상관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대답하였다. 다만 흥선대원군이 보낸 비밀 사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는 흥선대원군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을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끝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침내 판결은 3월 29일에 내려졌다. 판결문의 주문은 그가 농민전쟁을 일으키고 동도대장이 되어 활동한 사실과 전주성을 점령한 뒤 화해를 한 조건과 일본인을 축출키 위해 2차 봉기를 주도하여 공주전투를 벌인 일 등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끝에 “함께 모의를 꾸민 몇 사람과 의논하고 각기 옷을 바꾸어 입고서 가만히 경성으로 들어가 정세를 알고자하여, 피고는 장사꾼 맨도리(맨

드리, 옷을 입고 매만진 맵시)를 하고 홀몸으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태인을 떠나 전라도 순창을 지날 새 민병한테 잡힌 것이니라”라 기재하여 전봉준의 마지막 행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다.

그의 죄목은 『대전회통(大典會通)』(조선말기에 이루어진 법전)에 규정된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이었다. 꽤나 긴 죄명이었다. (『전봉준판결선고서』) 이를 풀이해 보면 “군복차림을 하고 말을 타고서 관아에 대항하여 변란을 만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죄”이다. 그리하여 전봉준과 같은 사형언도를 받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한 등 4명은 판결이 난 다음 날 새벽에, 곧바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형은 모두 5명 뿐이었다. 이 중 성두한(『갑오군정실기』에는 성두환으로 기재)은 충청도 청풍을 거점으로 활동한 지도자였다. 그의 활동상은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어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었다. 근래에 새로 발굴한 『갑오군정실기』에는 청풍 제천 단양 영춘 충주 일대에서 활동한 그의 행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들이 교수형에 처해진 것은 갑오개혁 때 개정된 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역적죄에 해당하는 사형수는 모조리 참형을 가하여 목을 잘라 관아의 문 앞에 걸어두거나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조리를 돌렸다. 이를 효수경중(梟首警衆)이라 한다. 예전 중죄인을 죽일 때 서울의 경우 사람들이 많아 모이는 서대문 언저리에 있는 서소문 거리나 동대문 언저리에 있는 수구문 밖에서 거행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잘린 머리를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돌리기도 하였다. 백성에게 역적질을 하면 “너희들도 이런 꼴을 당한다”는 엄포를 놓는 의도였다.

이런 효수형이 너무 참혹하다고 하여 갑오개혁 때 철폐하였다. 사형수에게도 시체를 훼손치 않는다는 근대 인권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다섯 명에게 처음으로 교수형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5. 왜 서둘러 사형 집행했나

그런데 사형을 즉각 집행한 조치에는 중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개화정부

는 형법을 개정해 “모든 재판과 소송은 2심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들 5명에게는 그 시행을 불과 2일 앞두고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리니까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2심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속전속결로 들뜬 민심을 가라앉히려 한 것이다. (왕현종의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참고)

아무튼 잡혀온 나머지 100여 명은 죄의 경중에 따라 무죄를 내리기도 하고 곤장이나 태형을 때리고 유배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장흥전투의 총지휘자 이방언과 함께 활동한 김방서 등은 무죄로 풀려났으며 고창에서 천민부대를 이끌고 활동한 홍낙관은 곤장에 유배형, 복첩 지도자 황하일은 태형 1백대에 유배형을 받았다. 아주 너그러운 조치였다. 왜 그랬을까?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일본측과 개화정부는 농민군 지도자들 속에서 다섯 명만 골라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살려주어 관대한 은전을 보인 것이다. 그리하여 장흥전투를 야기한 장본인인 이방언이나 복첩의 강경파로 2차 봉기를 주도한 황하일 같은 중범을 풀어준 것이다. 앞으로도 우려되는 농민군의 강력한 저항운동을 이런 방법으로 누그러뜨리려 하였다. 교활한 전술이었지만 그런 대로 왕조시대의 일벌백계의 대량살육보다는 나은 것이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엔 소란스러웠다. 특히 일본인 기자들이 더 들떠 있었다. 선고 법정에 입회하였던 재판관인 장박은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전봉준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장: 나는 법관의 몸으로 죄인과 한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목숨이 아까우냐?”

전: 국법을 적용했다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장: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너희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해 아직 분명한 규정이 없다. 문명한 여러 나라에서는 국사범으로 다루어 사형을 면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구나.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해보라. 오늘의 죽음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네가 전라도에서 한번 일어나자 일청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크게 개혁되었다. 너희가 탐관오리로 지적한 민영준 등도 국법에 처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흔적을 감추었다. 그래서 너희의 죽음은 오늘의 공명한 정사를 촉진한 것이므로 명복을 빈다.

여기에서는 1차 농민전쟁으로 청일전쟁이 유발되고 갑오개혁이 이루어졌으

며 민씨 정권이 타도된 사실을 말하였다. 여기의 “공명한 정사”는 갑오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갑오개혁은 농민군의 요구조항을 참고해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화정권은 이를 인정하여 전봉준의 명복을 빌었던 것이다. 기회주의자 장박의 현실인식은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다섯 지도자들은 3월 29일(음력) 사형언도를 받고 다음날 새벽 2시(양력으로 4월 24일) 한날에 처형되었다. 판결이 선언된 이날에는 아침부터 비가 질척거릴 정도로 내렸다. 전봉준은 “부대시참”이라는 판결문을 듣고 불편한 몸을 불끈 일으키면서 “올바른 도를 위해 죽는 것은 조금도 원통하지 않으나 오직 역적의 누명을 받고 죽는 게 원통하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전옥서 감옥에서 그들이 죽은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시각인 새벽 2시에 처형하였다. 전봉준·손화중·최경선·성두한·김덕명 등 다섯 사람을 한꺼번에 단단한 끈으로 목을 졸라 소문도 내지 않고 은밀하게 죽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형벌제도가 생긴 이래 최초의 교수형이었다.

* 이 기초발제 원고는 이이화 저 『전봉준, 혁명의 기록』(생각정원 발행)과 이이화 번역 『전봉준 공초』(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국역총서 12집)와 일본 신문 기록의 내용을 보충하고 요약하여 정리했음.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전봉준 장군

배항섭(성균관대)

< 目 次 >

1. 머리말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해
2.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3.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 1) 농민군의 폭력행위(인명살상)의 강도
 - 2) <무장포고문>
 - 3) 반외세 투쟁과 ‘민족적 대연합’ 선도

1. 머리말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여기서 보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은 ‘반봉건’, ‘반외세’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

한 정의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¹⁾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이 가진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오래 동안 동학농민군과 농민혁명이 비적 혹은 이단사설을 신봉하는 무리들의 반란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별법에 규정된 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무색케 하는 작태들이 횡행하는 현실이나,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와 강대국의 이해에 휘둘리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할 때 ‘반봉건(봉건체제의 개혁)’과 ‘반외세(를 통한 자주적 국권수호운동)’라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한 현재성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이러한 현재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운동”이라는 이해 너머의 새로운 의미도 아울러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은 서구적 근대에 대한 오늘날의 비판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반봉건적, 반침략적 근대 민족운동”이라는 이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시기 우리 ‘민족사의 과제’가 ‘반봉건 근대화’와 ‘반외세 자주화’에 있었다는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사의 전개과정도 서구의 경험과 마찬가지로의 길을 거치며 ‘근대’를 향해 진화해가는 과정이었다는 점, 19세기 말은 전근대의 낡은 체제가 붕괴되고 근대라는 ‘신세계’가 열려가는 막바지라는 목적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역사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의 동학농민혁명 인식은 ‘서구중심적’이고 ‘근대중심적’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목적일 수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

만은 없다. 서구적 근대가 추구해 온 역사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이미 오래전에 서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서구가 앞서 걸어간 역사과정을, 더 이상 발전 내지 진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역시 서구 근대가 ‘발전’을 향해 달려온 현재의 도달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서구 근대와 그에 대한 맹목적 추구가 발전과 진보의 이름으로 자행해 온 자원악탈과 환경파괴, 그것이 초래한 생태위기이다.

서구 근대에는 여전히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적지 않지만, 근본적인 재고가 요청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서구 근대에 대한 근본적 재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비서구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 특히 근대전환기 민중사에 대한 재조명일 수 있다.

‘근대화’나 ‘민족’이라는 코드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보였던 ‘근대전환기’ 민중사의 복원은 민중들의 고단한 삶, 그리고 복잡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그 시대 역사상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는 점은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서구의 시선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독일의 시사 주간 차이트(Zeit) 계열의 온라인 매체 ‘차이트 온라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의 한국에 대해 “한국은 최근 시민과 의회가 어떻게 하면 최고 권력의 실패를 평화적으로, 규율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나서 쓰레기를 치웠다”라며 평화로운 주말 촛불집회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선 오히려 미국과 유럽인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 배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²⁾

촛불집회가 서구에 의해 주목받고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여기에는 서구적 경험이 비서구의 경험을 선도한다는 전통적 서구중심주의와는 다른 시각이 보인다. 곧 서구 근대의 일방적 추종은 이제

2) 「연합뉴스」, 2016년 12월 16일

시대착오적일 정도로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는 물론 서구 근대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전봉준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 본 후,³⁾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새로운 의미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른 나라의 민중운동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글에서는 크게 ① 무장포고문, ② 반외세 투쟁과 민족적 대연합의 추진, ③ 농민군의 폭력행위(인명살상)의 강도 등으로 나누어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1) 출생과 가족관계

1855년 12월 3일(이하 음력) 천안 전씨의 집성촌인 전라도 고창군 덕정면 죽림리 당촌에서 부친 奎基과 모친 언양 김씨 사이에 태어나 외아들로 자라났다. 족보명은 炳鎬이고 字는 明淑, 호는 鐵爐이다. 성년이 되어 그보다 4살 위인 여산 송씨 斗玉의 딸과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다. 그러나 23세인 1877년 4월 24일 전처와 사별하고 남평 이씨의 딸을 후실로 맞아 두 명의 아들을 보았다.⁴⁾ 고창군 당촌에서 태어난 후 태인 고부(정읍)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 다녔으며, 童蒙들을 가르치는 훈장 등을 하며 생활하였다.⁵⁾

2) 동학입도와 척왜양운동의 전개

1892년에는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이 전라도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세력이 확산되자 동학의 조직을 활용하여 마음을 바른 사람들끼리 '협동일치'하여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輔國安民의 大業"을 이루기 위해 동학에 입도하였다.⁶⁾

3)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최근의 글로는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참조.

4) 『천안전씨세보 ; 丙戌譜』

5) 송정수, 「전봉준의 가계와 출생지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2, 2000 ; 이이화, 「전봉준의 가계와 태생설에 대한 재조명」, 『동학학보』 8, 2002

6)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の審問續聞',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이하 『총서』)』 23,

1892년 10월부터 시작된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892년 11월 3일 동학교도들의 삼례집회 당시에는 탄압이 두려워 訴狀을 제출할 사람이 없자 자원하여 대표가 되어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올렸다.⁷⁾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은 직접 '倡義文'을 작성하여 전라도 각지로 돌렸다. 창의문은 남원·운봉·곡성·구례 등 전라도 일대 각 군의 衙門에 같은 시각에 붙였다.⁸⁾ 이를 계기로 종교적 성격이 강하였던 교조신원운동은 斥倭洋運動으로 전환되어 2월 8일 동학교단 대표들이 복합상소를 위해 상경한 직후인 2월 10일 개최된 전라도 삼례집회와 복합상소 직후부터 경향 각지에서 척왜양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1893년 3월 11일(양력 4월 26일)부터 20여일 간 충청도 보은 장내리와 전라도 금구 원평에서 전개된 척왜양운동을 벌였으며, '반봉건 과제뿐만 아니라 '반외세'과제를 동시에 포착하고 있던 전봉준은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찍부터 "儒林側과 裸負商 등이며 油.鎭.宕糖商 等이며 술장사派까지라도 서로 서로 連絡을 지었"다.⁹⁾ 또한 서울로 가서 대원군과 접촉하는 한편 정국의 추이와 외세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3) 사발통문 거사계획의 수립과 고부농민봉기

1893년 11월에는 2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군수 조병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 고부에서 민란을 일으킨 다음 인근 읍의 '난민'을 규합하여 전주성을 함락하고, 여기서 전라도 일대의 변혁세력을 규합하여 서울로 직향하여 탐관오리를 축출한다는 거사계획을 세우고 1894년 1월 10일에는 드디어 "世事가 日非하기로 慷慨하여 一番 濟世하자는 뜻"을 가지고 고부민란을 일으켰다.¹⁰⁾

4) <무장포고문>과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p.171 ;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 p.371

7) 崔炳鉉, 『南原郡東學史』, 1924

8) 『南原郡東學史』, 1924

9) 『동학사』(초고본), 『총서』 1, p.455

10) 『全琫準供草』 再招問目, 『동학사상자료집』 1, p.332

고부민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1894년 3월 20일에는 손화중 등과 힘을 합하여 전라도 무장에서 <布告文>을 발표하여 동학농민혁명 봉기를 시작하는 한편 봉기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¹¹⁾ 4대명제의 내용은 ① 사람을 살상하지 말며 재물을 손상시키지 않는다(不殺人 不殺物). ②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도탄에서 건지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다(忠孝雙全 濟世安民). ③ 왜놈들을 전부 몰아내어 이 나라에 성인의 도를 명징하게 세운다(逐滅倭夷 澄清聖道). ④ 동학농민군을 진격시켜 서울로 쳐들어가 권세 있는 귀족들을 모두 몰아내고 기강을 크게 바로잡고 명분을 바로 세워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다(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등이다.

이후 전봉준은 농민군 최고 지도자가 되어¹²⁾ ‘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운¹³⁾ 농민군을 이끌고 무장(3/20) - 고창(3/20-3/21) - 흥덕(22) - 부안.정읍 - 고부(3/23) - 고부.태인(3/24) - 금구.원평(3/25) - 고부.백산.예동 등지를 파죽지세로 석권하였다.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이어 백산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한편 “우리가 義를 擧하여 此에 至함은 (중략) 안으로는 貪虐한 官吏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橫暴(強暴)한 強賊(盜賊)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倡義 檄文을 발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⁴⁾ 이후 태인 용산면 화호리(3/26-3/28) - 태인(3/29) - 원평(4/1) - 금구(4/2) - 태인 인곡면 북촌 용산.부안 부흥역(4/3-4/5) - 고부 도교산 황토현(4/6) - 정읍 삼거리(4/7) - 흥덕 - 고창(4/8) - 무장(4/9-4/11) - 영광(4/12-4/15) - 함평(4/16-4/17) - 함평.무안 삼내면(4/18) - 함평(4/19-4/20) - 장성(4/21-4/22) - 갈재와 정읍 사이(4/23-4/24) - 정읍 - 원평(4/25) - 두정(4/26)을 거쳐 1894년 4월 27일에는 전라도 감영이 있던 전주성을 점령하였다.¹⁵⁾

5) “전주화약”과 폐정개혁활동

11) 『大韓季年史』, 『총서』 4, p.363 ;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pp.292-293, p.295
12) 『전봉준공초』, 재조문목, 『동학사상자료집』 1, p.337
13) 『大阪朝日新聞』, 明治 5月 31日, 『총서』 23, pp.12-13
14) 『東學史』, pp.467-468 ; 『東學史』(초고본), pp.456-457
15) 1차 봉기시기 농민농민군의 진격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 11, 2002 참조

그러나 전주성을 점령해 있는 동안 5월 5일 오후 6시경에 聶士成이 지휘하는 청군 910명이, 5월 6일과 7일에 걸쳐 葉志超가 이끄는 1,550명이 아산만에 도착하였고,¹⁶⁾ 일본군도 5월 6일부터 인천에 상륙하기 시작하였고, 5월 7일 오후에는 일본공사 大鳥圭介가 42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입경하면서¹⁷⁾ 자칫 자신들의 봉기가 조선을 청일간의 전쟁터로 만들 우려가 있자, 청일 양국 군대가 더 이상 병력을 주둔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5월 8일 <폐정개혁안> 27개조를 국왕에게 계달하겠다는 관군측의 약속을 얻어내고는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¹⁸⁾ 폐정개혁안에는 외국상인들이 도성에 들어와 상행위를 하는 데 반대하는 등 외세의 경제적 침탈을 배격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전주성에서 철수한 농민군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군 도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이 전주성을 철수한 이후에도 청일 양국 군대는 계속 증원되어 청국 군대는 5월 21일까지 모두 2,865명,¹⁹⁾ 일본 군대는 6월 8일까지만 하여도 혼성여단 7,857명, 제2전선 가설대 345명, 군악대 58명, 해군원 943명, 운송선 승조요원 80명 등 9,300명 정도에 이르렀다.²⁰⁾

6) 일본군의 침략행위와 반일항쟁 준비

조선정부는 농민군이 이미 해산하였음을 알리면서 청일 양국군의 철수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을 자국의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일전쟁의 전단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은 조선 정부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철군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이미 5월 25일경부터 경북궁 공격 계획을 세워두었던²¹⁾ 일본은 드디어 6월 21일 새벽 4시 20분 경북궁을 기습하여 약 3시간의 전투 끝에 경북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조선군의

16) 參謀本部 編纂,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 制1卷(후쿠지마 현립도서관 소장), pp. 77-82 ; 李重夏, 『南征日記』, 『총서』 6, pp.229-233 ; 『兩湖電記』, p.125 ; 『東匪討錄』, p.338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76, p.83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 pp.176-177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274

18) 『兩湖電記』, p.150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95 ; 『大阪毎日新聞』, 明治 27年 7月 10日, 『총서』 23, pp.255-256

19) 參謀本部 編纂,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 制1卷(후쿠지마 현립도서관 소장), pp.77-82

20) 姜孝叔,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 防衛研究所圖書館所藏史料を中心に』, 『歴史學研究』 762, 2002

21) 參謀本部, 『日清戰爭 第5篇 第11章』(第三草按, 후쿠지마 현립도서관 소장) ; 參謀本部, 『明治二十七八年 日清戰爭』(第2冊 決定草案, 후쿠지마 현립도서관 소장), p.2

무장을 해제시켰으며, 병기와 탄약 등을 압수하는 한편,²²⁾ 국왕을 사실상 인질로 삼은 상태에서 친일적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폭거를 단행하였다.

이어 이틀 뒤인 6월 23일에는 청일전쟁을 개시하였다. 6월 25일과 26일(양력 7월 29일)에는 성환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8월 16일 벌어진 평양전투에서 일본이 대승을 거두면서 청국 군대를 조선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 일본은 승리가 점차 확실해 지자,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경복궁 강점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일본의 출병에 대해 壬辰倭亂 때 일본이 내세운 ‘征明假道’를 연상하며 그들의 침략의도를 간파하고 있던²³⁾ 전봉준은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사태가 일어나자 이것을 중대한 침략행위로 받아들였으며,²⁴⁾ 청일전쟁에 대해서는“우리들의 거사는 생각지도 않게 오늘 청일이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실마리가 되기에 이르렀는바 우리는 이를 천추의 유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²⁵⁾

이에 따라 전봉준은 7월 6일“국난을 함께 극복하자”는 전라감사 김학진의 제의를 받아들여 ‘官民相和’를 성립시키고 각지에 설치된 집강소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면서 폐정개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앙정국의 동향과 청일전쟁의 추이를 예의주시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士族이나 지주층까지도 포괄하는‘반외세’를 위한 ‘민족적 대연합’을 통해 광범위한 항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봉준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국왕 유폐 소식을 접한 후, 임진왜란의 참화를 연상하며 “국가가 멸망하면 生民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국가와 멸망을 함께”하기 위해,²⁶⁾ 또 “君이 욕을 보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 죽은 다음에야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재기포를 결심하였다.²⁷⁾

7) 제2차 동학농민혁명 = 반일항쟁의 전개

일본의 침략행위를 물리치기 위한 반일항쟁을 결심한 전봉준은 9월 10일경

22) 나카츠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옮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23) 海浦篤彌, 『東學黨視察記』, 『日本人』 18, 명치 28년 2월 3일, p.130

24) 『全瑋準供草』 再招問目, 340쪽 ; 『동경조일신문』 명치 28년 3월 5일자

25) 『日清交戰錄』 12, 明治 27年 10月 16日, p.43

26)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총서』 23, p.168 ;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총서』 22, p.367

27)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2日, 『총서』 23, p.167 ;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5日, 『총서』 22, p.366

삼례에 大都所를 설치하고 기병준비에 착수하였다. 전봉준은 각지의 “忠義之士”에게 함께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않는 자는 不忠無道한 자”라는 통문을 돌렸다.²⁸⁾

삼례에는 4천여명의 농민군이 모였으며,²⁹⁾ 전봉준은 제1차 봉기에 이어 또 다시 제2차봉기, 곧 반일항쟁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농민군을 이끌었다.³⁰⁾ 전라 각지 畵鎭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력을 강화한 농민군은³¹⁾ 이미 일본군이 농민군 무력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인 10월 12일경 복상을 시작하여 10월 12일 논산에 도착하였다.³²⁾

논산에 진을 친 전봉준 부대는 10월 16일 “兩湖倡義領袖”의 자격으로 골육상쟁을 피하고 항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관군의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냈다.³³⁾ 이어 은진, 노성 일대에서 군량미를 확보하여 공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천으로 미리 옮겨둔³⁴⁾ 전봉준은 10월 23일 밤 농민군을 진격시켜 공주에서 남쪽으로 30리 지점에 있는 경천을 점령하였다.

또 전봉준은 논산에 진을 치고 있던 무렵 보은의 북접 농민군과도 연락을 취하여 공주 공격에 합세하자는 약속을 이끌어내었으며, 이에 따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농민군은 옥천을 거쳐 10월 23일경 대교로 직행하였다.³⁵⁾ 남북접이 연합한 농민군은 사방에서 공주를 협공하고자 하였다.³⁶⁾ 이때부터 약 20여일에 걸쳐 농민군과 일본군 및 관군 사이에는 공주감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되며, 이 전투는 동학농민혁명의 성패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투인 우금치 전투는 11월 8일 오후 3시쯤 시작되었다. 농민군은 11월 9일 오후 8시까지 일본군 및 관군과 40-50여회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많은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으며, 11월 11일, 12일경에는 능치 등 공주 부근 산봉우리에 남아있던 농민군마

28) 『全瑋準供草』, pp.321-322, 373-375, p.378, pp.381-382 ; 『判決宣告書』(『東學黨聯判決文集』, 總務處 政府記録保存所, 1994), 30쪽 ; 『梧下記聞』 3筆(『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p.253

29) 『전봉준공초』, 삼초문목, 『동학사상자료집』 1, p.358 ; 4차문목, 『동학사상자료집』 1, p.376

30) 『전봉준공초』, 4차문목, 『동학사상자료집』 1, p.381

31) 『啓草存案』, 高宗 31年 9月 17日

32) 『東學亂記錄』 下, p.382

33) 『東學亂記錄』 下, pp.383-384

34) 『東學亂記錄』 上, p.79, p.222, p.406

35)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의 농민군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의 농민군이 논산에서 합세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신영우의 연구에 공주 전투 무렵 북접 농민군의 행로가 새롭게 밝혀졌다. 신영우, 『北接農民軍의 公州 牛禁峙·連山·院坪·泰仁戰鬪』, 『한국사연구』 154, 2011 참조

36) 『東學亂記錄』 上, p.419, p.426 ; 『東學亂記錄』 下, p.10

저 일본군과 관군에 쫓겨 계룡산 등지로 후퇴함으로써 20여 일에 걸친 공주공방전은 농민군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³⁷⁾

논산 전주, 원평을 거쳐 퇴각해간 전봉준은 11월 27일 태인에서 관군과 최후의 전투를 치렀으나, 패배한 후 농민군을 다시 결집하였으나, 이미 더 이상 전투에 임할 대오조차 갖추 수 없었으며 여기서 농민군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³⁸⁾

8) 체포와 최후

태인 전투 후 농민군을 해산한 전봉준은 11월 29일 입암산성을 거쳐³⁹⁾ 김개남과 만나기 위해 순창 피로리로 잠입하였다가 12월 2일 밤 주민 한신현 등이 끌고 온 주민들에게 체포되었다. 전봉준 스스로는 상경하여 서울의 정국을 상세히 탐지하기 위해 상경하려다가 체포되었다고 하였다.⁴⁰⁾ 전봉준은 순창관아에 수감되어 있다가 12월 7일 일본군에 인계되어 초토영이 설치되어 있던 나주로 이송되었으며, 최경선과 함께 임시로 설치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로 압송되었다.⁴¹⁾ 재판을 받고 3월 29일 사형에 언도되고 손화중 최경선 등의 동지들과 함께 곧 바로 처형되었다.⁴²⁾

3.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 전봉준 장군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1) 농민군의 폭력행위(인명살상)의 강도 : 폭력행위에 대한 극단적 절제

① 한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봉건말기나 근대전환기에는 민중운동이 빈발하였다. 이러한 민중운동들은 그 핵심 원인이 관리들이나 귀족 등 지배층의 부정부패나 부

3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pp.209-210, pp.246-248 ; 『東學亂記錄』 上, pp.228-238, p.426, pp.440-444 ; 下, pp.10-22, pp.28-32 ; 『公山剿匪記』, 『총서』 2

38) 全琫準供草, 『동학사상자료집』 1, p.320

39) 『東學亂記錄』 下, p. 287, p.300

40) 『東學亂記錄』 上, p.253, p.574, p.580 ; 『東學亂記錄』 下, p.208 ; 『全琫準供草』, p.320

41) 『東學亂記錄』 上, pp.61-62, p.611 ; 『東學亂記錄』 下, p.221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p.52 ; 『梧下記聞』 3筆, p.309

42) 『東京早日新聞』, 明治 28年 4月 26日, 『총서』 22, p. 272. 『二六新報』, 明治 28年 4月 26日, 『총서』 22, p.272

당한 수탈에 있었다는 점 등의 공통점도 가지지만, 차이점도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민중운동 주체 측이 반대세력, 곧 관리나 귀족을 비롯한 영주나 지주층에 가하는 폭력의 강도, 특히 인명 살상의 정도에서 보인다.

한국의 민중운동에서도 운동 주체 측에 의한 반대 측의 인명살상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62년 농민항쟁 때도 많은 곳에서 평판이 나쁘거나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연루된 부자들, 그리고 특히 鄉吏들의 집이 불태워지거나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몽둥이에 맞아서 혹은 밧혀 죽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은 민란과 달리 군현 단위를 뛰어넘어 거의 조선 전역에 걸쳐 일어난 대규모 민중반란이었다. 농민군은 민란의 반란군과 달리 몽둥이가 아니라, 죽창은 물론 관청이나 전투 중 관군에게서 빼앗은 총이나 칼로 무장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을 다른 나라의 대규모 민중운동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농민군에 의한 인명 살상이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에서 인명살상을 극단적으로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점은 농민군의 행동 준칙에서도 잘 드러난다. 1894년 3월 처음 일어날 당시에 농민군이 내건 <四大名義>의 첫 번째 조항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⁴³⁾ 인명에 대한 존중은 농민군 가담자가 급증하는 4월 12-16일 무렵에 발표한 <대적시의 4가지 약속>이나 <12개조 계군호령>에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준칙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농민군 지도부의 생각일 것으로 거기에는 최고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의중이 깊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적시의 4가지 약속>

1. 적과 싸울 때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공으로 삼는다
2. 부득이 전투를 하더라도 절대로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3. 행진하여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지 않는다.
4. 효자나 형제 에 우애가 있는 사람,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사는 마을 가까이 군대를 주둔하지 않는다.

43) 『大韓季年史』, 『총서』 4, p.363 ;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pp.292-293, p.295

<12개조의 계군호령>

1. 행복한 자는 받아들여 대우해준다.
2. 곤경에 처한 자는 구제해준다.
3. 부패한 관리는 쫓아낸다.
4. 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경복한다.
5. 도망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는다.
6.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인다.
7. 간악하고 교활한 자는 그 짓을 못하게 한다.
8. 가난한 자는 구원하여 도와준다.
9.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거역하는 자에게는 타이른다.
11. 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불효한 자는 죽인다.

위의 조항은 우리들이 행동의 근본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지옥에 가둘 것이다.⁴⁴⁾

<약속 4항>에서는 인명을 중시하는 내용(1, 2항)이 주목되는데, 거기에는 특히 적과 싸울 때도 살상행위를 자제하라는,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12개조 계군호령>에는 부정하고 탐학한 자들에 대한 경계(3, 7, 9, 10),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인본주의적 배려(1, 2, 5, 6, 8, 11)가 두드러진다. 특히 부패한 관리, 간악한 자 등 민중을 도탄에 빠트린 장본인들에 대해서도 살상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후술할 중국이나 서구 민중운동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오직 불충하고 불효한 자에 대해서만 제거(除)하거나 죽일(殺) 것을 지시하였다. 또 <12개조 계군호령> 말미에는 “위의 조항은 우리들이 舉行하는 근본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地獄에 가둘 것이다.”고 부기하여 행동 규율에 대한 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사료를 통해 볼 때, 전투과정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점령한 이후 혹은 행군하는 과정에서 농민군이 사람을 죽인 사례는 다음의 몇 가지뿐이다. 1894년 5월 말 전주를 향해 진군하던 농민군은 전라도 원평에서 농민군

44) 김윤식, 『속음청사』 上, 국사편찬위원회, 1960, p.311 ; 『동비토록』, 『총서』 6, 사운연구소, 1996, p.176

의 해산을 설득하는 국왕의 글을 가지고 온 중앙 관리인 이효응과 배은환을 살해하였다.⁴⁵⁾ 그러나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농민군도 즉시 이에 대해 사과하였다. 또 1894년 10월 1일 봉기한 서산·태안 지역 농민군들이 서산 군수 박정기, 태안 지방관 신백희와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관원 김경제를 장터로 끌고 가서 목을 베어 죽였다.⁴⁶⁾ 또 다른 사례로는 10월 17일 농민군 최고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김개남이 남원 부사 이용헌을 전주에서 체포하여 처단한 사실이 있고,⁴⁷⁾ 1895년 1월 농민군이 장흥성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장흥 부사(지방관) 박현양을 처형한 일이 있다.⁴⁸⁾ 이외에는 전투 과정에서 아니라면, 관리들이나 양반지주들을 직접 처단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동학 농민군이 살상행위를 꺼린 것은 심지어 전투 중에 관군 수십 명을 전사하게 한 일에 대해 관군에게 유감을 표명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11월 대전 근처에서 동학 농민군과 충청 지역 지방군이 조우하여 전투를 벌였다. 이때 농민군은 크게 승리하여 관군 70여명이 전사하였다.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은 12월 공주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하여 논산으로 후퇴한 뒤, 관군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하여 일본군을 물리칠 것을 호소하는 글을 보냈다. 그 내용 가운데 우금티와 대전 전투에서 서로 살상한 행위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⁴⁹⁾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행동준칙, <대적시 4가지 약속>에서도 확인되듯이 전투 중이라 하더라도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가 농민군 스스로에 의해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명 살상에 대한 극단적 회피는 다른 나라의 대규모 민중운동에 비추어 볼 때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대규모의 농민운동이 1년 이상 기간 동안 평안, 함경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개되었지만, 전투할 때를 제외하면 농민군이 살상한 관군이나 지배층은 수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군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나 사

45) 『양호초토등록』, 『총서』 6, p.61. 국왕은 이들의 죽음을 위로하여 모두 더 높은 관직으로 추증해 주었다(『일성록』, 고종 31년 7월 18일)

46) 『창산후인조석현역사』, 『총서』 10, pp.132-133 ;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 상, 서울:탐구당, 1959, p.501 ; 『갑오군정실기』 1, 10월 11일, 10월 13일

47) 황현, 『오하기문』, 『총서』 1, p.257

48) 황현, 『오하기문』, 『총서』 1, p.283

49)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난기록』 하, 서울:탐구당, 1959, pp.379-380

상적 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⁰⁾

② 중국

한국 민중운동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민중운동과 크게 대비된다. 우선 명말 산시성(陝西省)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李自成은 河南省 襄城을 점령한 후 유생 190명의 코를 베고, 다리를 잘라 떨어뜨려 죽이는 폭거를 자행했다.⁵¹⁾ 같은 시기에 비적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張獻忠은 1645년 四川省 成都에서 과거를 시행하겠다고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모은 후 모조리 살해해 버렸다. 그때 죽임당한 사람들이 남긴 붓과 벼루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전해진다.⁵²⁾

중국에서도 건륭제 말년인 18세기 후반부터 민중운동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민중운동은 1796년에 발발한 백련교도의 난이다. 10년 정도 지속된 백련교도의 난에서 백련교도는 물론 관군이나 지방 토호 등 반대세력 가운데서도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 전체적인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전투 이외에도 백련교도들이 점령한 곳에서 일어난 지방 토호들의 피해는 많아서 사천성에서만 해도 500-600명 이상이였다.⁵³⁾

19세기 중반의 태평천국운동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민중운동이었다. 태평천국군이 봉기한 날은 1851년 1월 11일이다. 배상제회 교도들은 洪秀全의 38세 생일이기도 한 이날 금전촌에 모여 “太平天國 원년”을 선포하였다.⁵⁴⁾ 이에 앞서 1850년 12월초와 1월 초 두차례에 걸친 관군의 공격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 홍수전은 <軍紀五條>를 반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명령을 준수할 것 ②남녀를 구분할 것 ③군령을 추호라도 범하지 말 것 ④공정한 마음으로 화목하며 우두머리와 의 약속을 준수할 것 ⑤합심협력하여 싸움에서 퇴각하지 않을 것 등이다.⁵⁵⁾

50) 그러나 왕조 정부 측에서는 동학을 이단사설을 믿는 무리들의 반역 행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초기부터 조선 정부에서는 농민군 주도층에 대해서는 죽일 것을 지시하였지만, 농민군을 잡아서 죽이라는 왕조 정부의 지시는 1894년 9월부터 시작된 제2차 봉기에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많은 농민군들이 체포되는 즉시 총살되었으며, 심지어 농민군에 가담한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까지 태형을 가하거나 총살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51) 谷川道雄, 森正夫 編, 『中國民衆叛亂史 3: 明末 ~ 清 1』, 東京: 平凡社, 1982, p.57

52) 佐藤文俊, 『明末農民反亂の研究』, 東京: 研文出版, 1985, pp.131-133

53) 谷川道雄, 森正夫 編, 『中國民衆叛亂史 3』, p.184

54) Spence, Jonathan D., *God's Chinese son: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of Hong Xiuquan*, New York: W.W. Norton, 1996, pp.133-134; 조병한 편저, 『태평천국과 중국의 농민운동』, 인간, 1981, p.73, p.221; 김성찬, 『태평천국과 염군』, 『강좌중국사V』, 지식산업사, 1989, p.91

55) Spence, Jonathan D., *ibid.*, pp.129-133

그러나 <군기오조>에는 동학농민군의 계군호령이나 대적시 약속과 달리 인명 살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실제로 태평천국군 지도부에서도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상하게 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요괴로 규정된 청의 관군에 대해서는 남기지 말고 죽일 것을 지시하였다.⁵⁶⁾ 홍수전은 永安에서 내린 詔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칼을 들고 마음을 합하여 용감하게 妖魔들을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다.⁵⁷⁾ 또한 1851년 여름에 배신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추적하였고, 체포되면 공개 처형하였다. 또 그해 10월에는 요괴의 부대에 물자를 제공한 자, 태평군에 대항하는 단련에 가담한 자, 긴박한 전 시상황을 이용하여 여자를 강간하거나 도둑질한 자, 지역 주민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신속하게 처형할 것을 약속하였다.⁵⁸⁾

나아가 태평천국군 가운데서 굶주림 때문만이 아니라, 적개심에 휩싸여 청군 포로나 태평천국군 가운데 배반자[叛徒], 체포한 도망자를 식인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⁵⁹⁾ 또 1853년 南京을 점령한 이후에는 내분이 일어나면서 태평천국군 상호 간에도 많은 살상행위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1856년 9월 東王 楊秀清이 홍수전의 권력을 넘보다 살해당한 뒤 학살된 동왕의 친족과 부하가 궁녀와 시녀를 포함하여 수천 명에서 2만 여명에 이르렀다.⁶⁰⁾ 태평천국 발발에서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의 15년 동안 약 3,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¹⁾

또 태평천국운동이 시작될 무렵 운남성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중심이 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종족 갈등이 깊이 개재되어 있었다. 만주족 안찰사는 민족 청소를 명령하였고, 그 결과 雲南省 昆明에서 4,000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이 학살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두문수(杜

56) Spence, Jonathan D., *ibid.*, pp.224-227, pp.237-238; 趙矢元·馮興盛 주편, 중국사연구회 옮김, 『중국군대사』, 청년사, 1990, pp.54-57

57) 菊池秀明, 『太平天國における不寛容-もう一つの近代ヨーロッパ受容』, 『東アジア近現代通史 1: 東アジア世界の近代』, 岩波書店, 2010, p.306. 키구치는 태평천국의 폭력을 수반하는 종교적 정열의 원인을 중국 사회에 숨어있는 “난폭한 힘”과 “근대유럽의 특질(서구중심주의에서 오는 문명/야만의 이분법과, 그에 입각하여 정당화되는 비서구에 대한 문명화와 그를 위한 폭력-필자)” 두 갈래에서 찾고 있다(菊池秀明, *ibid.*, p.316)

58) Spence, Jonathan D., *ibid.*, p.137, p.141

59) 김성찬, 『종족공동체의 유산과 태평천국의 평균이념』, 『명청사연구』 37, 2012, pp.14-15

60) Spence, Jonathan D., *ibid.*, p.244; 김성찬, 『태평천국과 염군』, 『강좌중국사V』, 1989, p.117.

61) Rowe, William T., *China's Last Empire: The Great Q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eBook Collection (EBSCOhost). Web. 6 Dec. 2016, p.198. 최근 중국에서도 태평천국 시기에 2,000만에서 1억에 이르는 인구감소가 발생했다는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다(陈亚玲·肖自力, 『최근 10년 간의 태평천국사 연구』, 배향섭·손병규 편,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 2013).

文秀, 1823~1872)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도들은 티베트와 미얀마로 가는 주요 교역로에 위치한 大理에 본거지를 둔 이슬람 국가가 분리 독립하였다. 이것이 소위 판타이(Panthay)난이다. 이후 청은 일련의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 운남성에서 500만명 가량 죽이고 난 1873년에야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⁶²⁾

③ 서구

중세 혹은 중세 말기 서구의 민중운동에서도 반란군에 의한 폭력의 강도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강력하였다. 1381년 영국의 에섹스(Essex)주 브렌트우드(Brentwood)에서는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이 미친 여파로 과도하게 부과된 인두세에 항의하는 와트 타일러(Wat Tyler)의 난이 일어났다. 반란은 켄트(Kent)주로 확산되었고, 와트 타일러가 이끄는 반란군은 런던까지 진격하였다. 반란 초기부터 농민군의 살상행위는 거침없이 일어났다. 브렌트우드에서는 주민들이 세금을 거두러 온 민소재판소의 서기 3명을 그 자리에서 참수하였다. 또 범인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뒤따라 파견된 지방배심원 3명의 수급을 베어 장대에 매달고 시위를 하였다. “아담이 밭 갈고 이브가 베짖 때 누가 젠틀맨이었나?”이라는 존 볼(John Ball)의 설교에 고무된 10만명 정도의 반란군은, 런던을 점령한 후 국왕 측과 농노제 폐지와 봉건 부과조의 금납화 등을 협상하였으나, 일부의 반란군은 불만을 품고 대주교와 재무상을 비롯한 관리와 외국인들을 살해하였으며, 이들의 수급을 장대에 꽂아 들고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런던 브릿지 정문에 매달아 놓았다.⁶³⁾

노먼 콘(Norman Cohn)이 밝힌 바와 같이 중세 유럽 여러 곳에서 일어난 천년왕국 운동에서도 반란군은 인명 살상과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다. 15세기 초 보헤미아에서 일어난 타볼파는 부유한 도시주민, 상인 혹은 주재지주를 타도대상으로 삼았으며, 도시를 공격하여 완전히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1420년 봄에 모든 봉건적 구속과 부과금, 부역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거의 모든 신도들이 인근의 일반 서민들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괴롭히고 압제하였으며, 독실한 신자들에게까지 가혹하게 지대를 강요하였다.⁶⁴⁾

62) Rowe, William T., *op. cit.*, p.209

63) Harrison, J. F. C., *The Common People : A History from the Norman Conquest to the Present*, London: Collins, 1984, pp.90-92

64) Cohn, Norman, *ibid.*, p.215, p.218

독일농민전쟁에서 농민군들은 사회적 정의의 기준으로, 또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내세우며 일어났다. 대략 30만명의 평민들이 가담하였고, 이 가운데 1525년 5월 15일 프랑켄하우젠(Franckenhäusen)에서 50,000이 전사 내지 처형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만명 정도의 농민군이 전사하거나 처형되었다. 후작 카시미(Markgrave Casimi)는 복수심을 충족하기 위해 농민들을 고문하였으며, 그는 농민군의 머리를 참수하거나, 눈을 파냈고, 손가락을 잘랐다.⁶⁵⁾

농민군들도 체포된 귀족과 귀족의 병사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독일농민전쟁 당시인 1525년 4월 16일 바인스베르크(Weinsberg)를 점령한 농민군은 체포된 귀족들에게 잔인한 보복을 가하였다. 창으로 무장한 농민군들을 두 줄로 세운 후 귀족들에게 사이를 달리게 하고 창을 든 농민군들은 귀족들이 지나갈 때 창으로 찔렀다. 이날 처형된 귀족은 70명 정도였다.⁶⁶⁾

독일농민전쟁이 끝난 뒤 1534년 독일 북서쪽에 위치한 뮌스터(Münster)에서 다시 일어난 제세레파(Anabaptists) 교도들은 공포정치를 시행하여 자신들의 교리나 재산 공유제, 일부다처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수십 명을 처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도가 아닌 사람들을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노인이나 병자, 어린 아이와 임신한 여인, 이제 막 출산한 여인들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영주나 귀족 측의 처벌도 매우 잔인하고 가혹하였다. 타볼에서는 타볼파 반란군을 체포하여 수십명을 한꺼번에 화형시켰고, 뮌스터에서는 제세레파 반란군들의 근거지를 포위한 수개월 동안 수많은 남녀 반란군을 참수하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불에 태워서, 혹은 수레바퀴에 치어 죽였다.⁶⁷⁾

이상과 같이 중국의 대규모 민중운동, 그리고 유럽의 천년왕국운동이나 독일

65) Scott, Tom, Scribner, Robert W., *The German peasants' war : a history in documents*, Atlantic Highlands, N.J. :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91, pp. 299-301.

66) Menzel, Wolfgang ; translated from the fourth German edition by George Horrocks, *Germany : from the earliest period*, (v. 2) ; with a supplementary chapter of recent events by Edgar Saltus, New York : Co-operative Publication Society, 1899?, p.887 ; Scott, Tom, Scribner, Robert W., *The German peasants' war : a history in documents*, Atlantic Highlands, N.J. :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91, p.158

67) Cohn, Norma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 revolutionary millenarians and mystical anarchists of the Middle Ages*, Pimlico, 2004, pp.263-264, pp.267-270

농민전쟁에서 보이는 농민군의 인명 살상행위는 한국의 민중운동과 크게 대조적이다. 한국의 동학농민혁명에서는 살상행위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었으며, 그보다 약한 규율 위반에 대해서도 “지옥에 가둔다.”는 군율을 내거는 등 인명 살해를 엄격히 경계하였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다른 나라의 민중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상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2) <무장포고문> : 동학농민군의 목적을 명확히 천명함

1894년 3월 중순부터 전라도 무장으로 몰려든 농민군 4,000여명은 1894년 3월 20일 포고문을 발표하였다.⁶⁸⁾ 포고문을 작성한 인물 역시 확인되지 않지만, 여기에도 역시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생각이 깊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에게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의 관계는 가장 큰 인륜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성스러운 뒤에야 가정과 국가(家國)가 이루어지고 끝없는 복이 미칠 수 있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총명하며 슬기롭다. 현명하고 양심적이고[賢良] 정직한 신하가 밝은 임금을 보좌한다면 요순(堯舜)의 덕화(德化)와 한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치세를 날짜를 손꼽으며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하된 자들은 보국(報國)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벼슬자리만 탐내며 (국왕의) 총명을 가린 채 아침을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러운 말[妖言]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폭도(匪徒)라 일컫는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보국(輔國)하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득실대어 인민(人民)들의 마음은 날로 더욱 어그러져서 들어와서는 즐겁게 살아갈 생업이 없고 나가서는 제 한 몸 간수할 방책이 없다. 폭정(虐政)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이 이어지고,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드디어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사유(四維)－예의염치(禮義廉恥)－가 베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한다”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하다.

공경(公卿)으로부터 방백수령(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남몰래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 생각

68) 「판결선고서원본」, 『동학관련판결문집』, 정부기록보존소, 1994, p.29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p.57, p.113.

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일을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장소를 온통 사고파는 장터로 만들었다. 허다한 재화와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국가에는 쌓인 부채가 있는데도 갚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탕하게 노는 데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가 어육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참으로 지방관들의 탐학 때문이다. 어찌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약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그런데도 보국안민의 방책을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짓고 오직 저 혼자서 살 길만 도모하면서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올바른 도리이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草野)의 유민(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국가의 위망(危亡)을 앉아서 보고만[坐視] 있을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억조창생(億兆蒼生)이 서로 논의하여 지금 의(義)의 깃발을 치켜 들고 보국안민(保國安民)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금일 이러한 광경은 비록 놀랄 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축원하고 다 함께 임금의 교화를 누릴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다.

406자의 순한문으로 구성된 이 <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서이자, 동학농민군의 목적,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 등을 매우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의식이나 지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그 동안 한국학계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건’ 근대화나 ‘반외세’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고문>에는 근대지향성과 거리가 먼, 유교적 이념과 연어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반외세와 관련된 내용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 초기뿐만 아니라, 농민군이 승승장구하던 시기는 물론 동학농민혁명이 끝날 때까지도 농민군이 제시한 글의 대부분은 그러한 “분식된 유교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포고문>의 첫머리는 유교교육 초보과정의 입문자들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던 『童蒙先習』의 서문과 매우 유사하다.⁶⁹⁾ 이와 같이 유교적 교양에 초보적 인물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구절을 앞머리에 내세운 것은 자신들이 舉義

69)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은 가난하고 몰락한 양반의 후예이며, 과거시험에 응시한 경력은 없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살던 고부에서 학동들을 모아 「동몽선습」을 비롯한 유교의 초보적 교재를 가르치기도 했다(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 서울:여강출판사, 1991, p.171).

한 정당성을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명확히, 또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⁷⁰⁾ 그러나 『동몽선습』이 父子, 君臣, 夫婦, 兄弟, 朋友 간의 義理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 데 비해 <포고문>에서는 군신, 부자간의 의리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그 순서도 군신 간의 의리가 부자 간의 의리에 앞서 언급되어 있다. 이는 농민군들의 攀義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적 위기에 대한 농민군의 감각이 국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에 대한 관심의 제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농민군의 현실진단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어 있다. 중국고대의 堯舜시대와 모순에 찬, 고통만 주는 현실의 虐政을 대비시키는 데서 그들의 목표가 仁政이 베풀어지는 유교적 이상사회의 회복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포고문>에서는 공경대부 이하 방백 수령들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인정을 방기고 가혹한 政事를 펴기 때문에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국왕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다. 국왕은 선량한 신하들의 보좌만 있으면 仁政을 펼치고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것은 농민군의 ‘반란’을 일으킨 궁극목적도 인정을 회복하여 “태평성대를 축원하며 다 함께 임금의 교화를 누”리는 데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자신들이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사는” 까닭에 국가의 위급함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깃발을 들게 되었다는 표현과 더불어 농민군이 여전히 국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농민군들은 비록 자신들이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草野遺民]에 불과하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국가의 위급함을 구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義旗를 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곧 민본이념이 붕괴되고 인정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함으로써 보국안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농민군이 스스로를 “보국안민”의 주체로 자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0) <포고문>은 <교조신원운동>시기에 관찰사나 국왕 앞으로 보낸 글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포고문> 가운데 “금일 이러한 광경은 비록 놀랄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라”는 구절은 이 글이 지배층이 아닌 민중을 대상으로 발표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봉준 등 지도자들은 이 글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리나 국왕 앞으로 보낸 이전 시기의 글에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유교의 敎理를 많이 언급하고 있었던 점과 달리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포고문>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유교적 언어로 점철되어 있다. 동학농민군들은 유교적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발견해내지는 못했다. 농민군들은 지배이념과 지배층의 언어로 그들의 행태와 실정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또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스스로를 민본과 인정을 회복할 “보국안민”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었다.⁷¹⁾

<포고문>이 가진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보수적”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자도 있다. 유영익은 <포고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봉준이 유교적 윤리덕목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했던 유교적 합리주의자였다고 하였다.⁷²⁾ 이어 그것을 핵심 논거로 하여 동학농민군은 어떠한 새로운 ‘근대적’ 비전 내지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민군이 ‘봉건적’ 차등적 사회신분질서를 이상화하고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⁷³⁾

그러나 <포고문>의 내용만으로 농민군의 지향이나 의식세계를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더구나 ‘봉건적’ 신분질서를 이상화하였다는 주장은 <포고문>의 내용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신분적 차별을 부정한 동학사상이나⁷⁴⁾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신분적 질서에 반대한 농민군의 행동에 비추어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유영익의 주장대로라면 동학농민군의 의식은 유교 엘리트들이 주도한 의병의 의식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동학농민혁명의 근대지향적 성격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포고문>을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학농민군의 행동이나 전봉준의 진술에만 주목하였다면, 유영익은 반대로 동학농민군의 행동이나 체포된 뒤 전봉준의 진술은 외면하고 <포고문>의 字句만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사의 경험에 따르면 중세 말에 일어난 급진적 민중운동에서도 민중들은 대체로 지배이념을 전유(appropriation)하는 방식으로, 혹은 지배층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신들의 불만을 요구하거나 행동을 정당화하

71) 무장포고문의 내용분석에 대해서는 Bae, Hang seob, “Foundations for the Legitimation of the Tonghak Peasant Army and Awareness of a New Political Order”, *Acta Koreana* vol.16, no.2(December 15), 2013: 399-430 참조

72) 유영익, 「전봉준 義舉論」,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p.10

73) 유영익, 위와 같음, p.21, p.27

74) 동학의 평등사상은 사람은 신분과 남녀의 구별 없이 누구나 마음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侍天主” 사상에서 잘 드러난다. (敎訓歌, 『용담유사』). “시천주” 사상은 東學의 後身으로 1905년 창립되는 天道敎의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人乃天”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시천주”가 가진 평등주의적 성격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종우, 「동학에 있어서 천주의 초월성과 內在性에 근거한 인간관의 변화」, 『한국철학논집』 23, 한국철학사연구회, 2008, pp.245-73

는 것이 일반적이다.⁷⁵⁾ 이는 근대에도 마찬가지였다.⁷⁶⁾ 톰슨(Thompson)이 말했듯이 민중은 지배이념이나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⁷⁷⁾ 다른 한편 지배엘리트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이나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조지 루데(George Rudé)에 따르면, 민중운동 기간 중의 민중들의 이념은 대부분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민중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득적' 혹은 전통적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연설을 듣거나 책을 읽어서 배운 것 등 외부로부터 전달되었거나 빌려서 쓴 것이다. 두 요소는 끊임없이 서로 교섭하며, 그 결과 형성된 민중 이념은 퇴영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진취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⁷⁸⁾ 이는 민중 이데올로기가 민중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속에서, 또 새로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해나갈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동학농민군도 이미 교조신원운동시기부터 자신들의 집회를 “조정의 政令 가운데 民國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모여서 토의하여 정하는”하는 외국의 ‘민회(民會)’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⁹⁾ 의회제도라는 서구 정치제도에 대한 수용과 그로부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포고문>의 내용이 지배이념인 유교사상과 유교적 언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농민군의 “보수성” 혹은 “복고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농민군의 생각과 요구는 이처럼 보기에 따라 매우 ‘보수적’이었고, 국왕이나 체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이 보여준 생각은 최근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촛불집회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민주공화정에 걸맞은 정치를 요구하며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물

75) Paul Freedman, *Images of the Medieval Peasant*,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295; James W. White, *Ikki : Social Conflict and Political Protest in Early Modern Japan*, Cornell Univ. Press, 1995, p.112

76) James C.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ersity Press, 1987, p.339.

77) Thompson에 따르면 평민문화는 자기 정의적이거나 외부적 영향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귀족 통치자의 통제와 강제에 대항하여 수동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Penguin Books, 1993, pp. 6~7).

78) George Rudé, *Ideology and popular protest*, New York : Pantheon Books, 1980, pp.28-9, p.30

79) 「취어(聚語)」, 『동학란기록(상)』, 국사편찬위원회, 1959, pp.122-123.

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자 스스로의 힘으로 탄핵을 하고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공화정을 회복하기 위해 연인원 1천 5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학농민군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중은 조선이라는 ‘민본’ 왕국의 신민으로 국왕에게 민본에 걸맞은 정사, 곧 인정을 요구하면서 학정을 일삼는 탐관오리들의 정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왕을 둘러싼 간신들이 민중의 요구가 국왕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자,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민본에 입각한 인정을 회복하고, 탐관오리와 간신들을 징치하기 위해 농민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촛불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의지를 담아 스스로의 의지로 최고권력자까지 직접 추방한 반면, 주권재민의 인식이 없었던 농민군들은 ‘주권’을 담지한 최고권력자, 곧 국왕의 이름으로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개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느 쪽이든 지배이념을 내면화함으로써 지배이념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지만, 그에 입각한 집합행동의 결과는 매우 급진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농민군의 ‘보수적’ 사상이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곧 탐관오리는 징벌되어야 한다는 농민군의 의지가 실현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조선사회의 정치, 사회질서는 이미 농민군들조차도 예상치 않았던 전혀 새로운 질서와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포고문>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세계사적 독자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⁸⁰⁾ 중세 혹은 중세말기에 발발한 대규모 민중운동에서 자신들의 거의 동기나 목표를 이처럼 명확하게 천명하고 시작한 사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19세기 중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민중운동인 태평천국운동에서도 홍수전은 1851년 1월 11일 진톈(金田)에서 배상제회 교도들을 모아 놓고 태평천국의 성립을 선언하고 자신은 천왕임을 선포하였다. 태평천국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이날을 태평천국운동의 시작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의(起義)가 시작된 이날 태평천국군에서는 특별한 다른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이나 청조에 대한 호소력 있는 비판론이 마련되거나 발포되지도 않았다.⁸¹⁾

80) 이에 대해서는 배향섭,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011, 전북사학회·정읍시에서 언급한바 있다.

독일농민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농민전쟁 발발 당시에 농민군 측이 내건 선언문 같은 것은 없었다.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토마스 뮌처는 평소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였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을 때는 역시 그들의 봉기 목적이나 현 사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을 발표한 사례가 없다.⁸²⁾ 다만 지역에 따라 농민전쟁이 일단락된 다음 재판소에 자신들의 요구조항을 제시하거나, 혹은 농민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었다.⁸³⁾ 뮐하우젠 지역에서는 토마스 뮌처가 11개조의 강령 내지 요구조건을 마련하여 선포하였으나, 도시민들의 이해만 대변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농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했다.⁸⁴⁾ 서구 중세의 수많은 천년왕국운동 등 대규모 민중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⁸⁵⁾

1381년 영국의 와트타일러 난은 10만여 명의 농민군이 봉기한 중세 영국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다. 그러나 운동은 곳곳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왔으며, 그것이 모여 대규모 반란으로 비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봉기가 시작되었을 때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문이나 포고문은 없었다. 전개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조건이 수차례 제시되었을 따름이다.⁸⁶⁾

동학농민혁명에서도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농민군 측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전주화약 단계에서 <폐정개혁안 27개조>로 정리되어 관군 측에 제출되었다. <포고문>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보이는 이러한 <폐정개혁안>류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민중운동과 비교할 때 동학농민군의 <포고문>은 자신들의 봉기 목적을 명확한 논리로 표명한 선언문이며, 봉기에 앞서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3) 반외세 투쟁과 ‘민족적 대연합’ 선도 : 반외세를 위해 적과도 손을 잡다

81) 조병한 편저, 『태평천국과 중국의 농민운동』, 인간, 1981, p.73, p.221; 김성찬, 『태평천국과 영군』, 『강좌중국사V』, 1989, p.91; 조너선 D. 스펜스, 양휘웅 옮김, 『신의 아들 : 홍수전과 태평천국』, 이산, 2006, p.227

82) 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혁명사 2부작』, 소나무, 1988.

83) 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허교진 옮김, 『독일농민전쟁 2부작』, 소나무, 1988, pp.96-98

84) 김영한, 「독일 농민전쟁과 千年王國 신앙- 토마스 뮌처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53, 1997, p.168

85) Mollat, Michel, Wolff, Philippe, 瀬原義生 譯, 1996, 『ヨーロッパ中世末期の民衆運動 : 青い爪, ジャック, そしてチオンビ』, ミネルヴァ書房; Paul Freedman, 1999, Images of the Medieval Peasant, Stanford University Press; 노만 콘 지음, 김승환 옮김, 『천년왕국운동사』, 한국신학연구소, 1993.

86) J. F. C. 해리슨, 『영국민중사』, 소나무, 1984.

동학농민혁명이 다른 나라의 대규모 민중운동과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는 조선사회 내부의 개혁을 위해 일어났지만, 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외세가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외세의 개입과 침략행위가 시작되면서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기 위해 자신들과 맞서고 있던 관군과 지배층인 유생들에게까지 함께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이다. 반외세 연합전선 추구의 핵심에 농민군 최고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는 이후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민족적 대연합’의 선구적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족적 대연합’은 이전부터도 전봉준 장군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그 조짐을 보이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2차 봉기에 임하면서 시작되었다. 1894년 9월에 들어 재봉기를 한 것은 일본의 침략행위에 반대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전봉준 장군은 제2차 봉기의 배경에 대해 “貴國이 開化라 稱하고 自初로 一言半辭도 民間에 傳布함이 無하고 또 檄書도 無し 率兵하고 우리 都城에 入하여 夜半에 王宮을 破擊하여 主上을 驚動하”였으므로 “我國境土를 侵掠하는가 疑訝”하여 “草野의 士民더리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함을 不勝하야 義旅를 糾合하야 日人과 接戰하야 此事實을 一次請問코저” 기포하였다고 하였다.⁸⁷⁾

전봉준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일본 군대가 대궐로 들어갔단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我國을 병합코저 하는 것인 줄 알고 일본병을 쳐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구축할 마음으로 다시 기병”하였다고 하여 2차 기포의 목적이 반일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⁸⁸⁾

전봉준은 6월 21일에 있었던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을 ‘我國境土’에 대한 일본의 침략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거기에 대해 “옛날 壬申(壬辰의 오기인 듯함-필자)의 화란을 생각하여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하고 인민들이 의구심을 갖고서 나를 추대해서 수령으로 삼고 국가와 멸망을 함께 할 결심을 가지고 이 거사를 도모하였다”라고 하여⁸⁹⁾ 임

87) 『全捧準供草』, 初招問目, pp. 318-319; 再招問目, p. 340

88) 『동학관련판결문집』,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p.30. 또 전봉준은 井上馨의 취조에도 “원래 우리들이 병을 일으킨 것은 閔族을 타도하고 폐정을 개혁할 목적이었지만, 閔族은 우리들의 입경에 앞서 타도되었기 때문에 일단 병을 해산했다. 그런데 그후 7월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궁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 없애려고 다시 병을 일으켰다”라고 대답했다(『동학당 대두목과 그 자백』, 『동경조일신문』, 1895. 3. 5).

진왜란의 참화를 상기하며 국가의 존망, 생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7월 6일 이미 청일군대의 철수가 당면과제라는 판단 하에 전라감사 김학진과 상호교감을 하고 있던 전봉준 장군은 일단 ‘共守全州 同赴國難’ 하자는 김학진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官民相和’를 맺었다.⁹⁰⁾ 이러한 입장은 평양전투가 일본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예견되고 있던 8월말까지도 이어졌다.

재기포는 9월 10일경 시작되었다. 9월 9일에는 금구 지역의 농민들이 고산으로 들어와 관아의 무기를 탈취하였고, 10일에는 전주 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날 밤에는 삼례에 모여 있던 농민군이 여산을 공격하는 등 삼례, 전주 지역에서 농민군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4일에는 전봉준 장군이 직접 삼례에 모여 있던 8백여 명의 농민군들을 이끌고 전주성으로 쳐들어와 무기를 탈취해갔다. 재기포를 결심하면서 전봉준은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민족적 대연합’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지도부는 농민혁명에 임하기 이전부터 ‘반봉건’ 뿐만 아니라 ‘반외세’의 과제를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오지영에 따르면 전봉준은 “일찍부터 마음에 항상 만족치 못하여 不遇之志를 품고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戊子年(1888)間에 손화중 선생을 만나 道에 참여하여 세상일을 한번 하여 보고자 하여 북으로 京城을 향하여 정국의 趨向을 엿보았고 또 외세를 살펴본 바가 있었다”고 한다.⁹¹⁾ 반봉건의 과제 뿐만 아니라 반외세의 과제를 동시에 포착하고 있었던 전봉준은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고 있었다.⁹²⁾

전봉준은 2차 기포 직전인 8월 말 농민군에 대해 ‘烏合之衆’이어서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훈련도 없고 무기는 玩具와 같았던 농민

군의 역량으로는 일본군에 비길 수 있다고는 본디 믿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또 제2차 농민전쟁에 참여한 “동학당 60만 중에 진심으로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맹세한 자는 겨우 4천명일 뿐이다”고 밝힌 바 있으며,⁹³⁾ 10월 16일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내는 <上書>에서도 자신들의 “하고자 하는 바가 극히 어려움을 실로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⁹⁴⁾ 농민군의 역량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전봉준으로 일찍부터 구상해오던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민족적 대연합’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또 제2차기포는 斥倭斥化의 ‘反倭蜂起’의 성격이 강하였던 만큼 斥邪의 유생 등 보수층과의 연합 가능성도 크게 넓혀 놓았던 것이다.

전봉준은 삼례에서 재기포에 따른 통문을 각지의 官民에게 보냈다. 9월 10일 태인현감의 첩보내용에 따르면 농민군들은 “지금 이런 거사는 몹시 커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公穀과 公錢을 이용해야 겠으니, 군수미 300석과 동전 2천냥을 밤 사이 금구, 원평의 대도소로 수송하기 바란다”, “군기고에 있는 화약, 탄환, 창포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도소로 수송하기 바란다”는 통문을 보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문을 원근 각 지역의 농민들에게 보내고 혹은 사람을 보내 遊說하여 9월 말까지 전라우도로부터 모병한 수가 4천여 명이었다. 전봉준이 논산에 도착한 10월 12일 무렵이면 부분적으로 농민군과 보수유생층 내지 관측 사이에 연합도 이루어졌다. 李裕尙은 원래 농민군 진압을 위해 일어난 儒會大將이었으나,⁹⁵⁾ 의기투합하여 전봉준과 연합하였다.⁹⁶⁾ 논산에 도착한 전봉준은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全琫準上書>

“兩湖倡義軍의 領袖 全琫準이 삼가 湖西巡相 閣下에게 글을 올립니다. 천지 간에서 사람은 인간은 綱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食言을 하고 欺心을 가진 자는 者 人類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와같은 나라의 어려움과 근심을 당하여 어찌 감히 外飭內誘로서 한

89) 『동경조일신문』, 1895년 3월 5일자. 전봉준은 이미 경복궁 침입이 일어나기 전인 6월 18일 일본인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의 출병사실에 대해 일본이 임진왜란 때와 같이 ‘征清假道’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海浦篤彌, 『東學黨視察日記』, 『日本人』 18호, 1895년 2월, p.130).

90) 『梧下記聞』 2필, pp.179-180

91) 『東學史』, 『東學思想資料集』 2, 517-519쪽. 또 “대원군과 관계가 있다함도 또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원군의 마음 속에는 개혁의 사상이 있고 또는 抑強扶弱한 氣岸이 있으며 외국의 침략을 배척코자 하는 주의를 가졌으므로하여 그리하는 것이다 (중략) 그의 창외의 文中에 斥外의 문구가 있고”라고 하여 전봉준의 ‘반외세’적 지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92) 이하 민족적 대연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항섭, 「1894年 東學農民軍의 反日 抗爭과 ‘民族的大聯合’ 推進」, 『軍史』 35, 1997 참조

93) 『동경조일신문』, 1895년 3월 5일 및 6일

94) 『東學亂記錄』 下, p.382

95) 李復榮에 따르면 李裕尙(李都事)는 8월 1일 논산 乾坪에서 閔俊鎬가 유회를 모으고 진법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討倭報國하자고 권했으나, 민준호는 본디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자 願從者 백여명을 거느리고 떠났다고 하였다(李復榮, 『南遊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3, p.226)

96) 『東學史』, 『東學思想資料集』 貳, pp.497-498 ; 『宣諭榜文 東徒上書所志 謄書』, 『東學亂記錄』 下, pp.381-382

순간의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오랑캐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국왕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임진왜란 때 오랑캐가 왕릉을 능멸하고 궁궐을 불태웠으며, 국왕과 우리 부모들을 능욕하고 백성들을 살륙하여 臣民들의 公憤을 샀으니 千古에 있지 못할 원한입니다. 草野의 匹夫와 昧童들도 오히려 역을 하고 원통하기 이를 데 없으니 하물며 閣下와 같은 世祿忠勳한 인물들은 平民·小夫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지금 朝廷의 大臣들은 망령되어 자신의 몸만 보전하고자 위로는 국왕을 협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東夷와 내통하여 남쪽 백성들의 원망을 사자 親兵을 妄動하여 先王의 赤子들을 해치고자 하니 실로 무슨 뜻이며, 마침내 무습일을 저지르려는 것입니다. 금일 우리가하고자 하는 바는 실로 그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一片丹心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으며, 人臣으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掃除하여 先王朝가 五百年 동안 遺育해준 은혜에 보답코자 하니, 엎드려 원컨대 閣下도 깊이 반성하여 죽음으로써 義를 함께 한다면 千萬 다행일 것입니다.

甲午十月 十六日 在論山謹呈⁹⁷⁾

‘일본 오랑캐’의 침략행위로 말미암아 국왕이 욕을 당하는 일, 조정대신(개화파) 등이 東夷(일본)와 내통하여 군부를 협박하고 백성들의 원한을 산 일 등을 임진왜란 당시 국왕이 욕을 당한 치욕·통분과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 일본을 물리치는 일이 어려운 줄 아나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개화파)들을 공격하여 선왕조 오백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일어섰음을 강조하며 박제순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전봉준이 밝힌 생각은 이 시기 보수유생층의 일반적인 인식과 상통하는 바가 컸다. 대부분의 유생들은 농민군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일부 유림에서는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赤子觀’에 의거하여 집권층의 부패를 비판하기도 하였고, 특히 斥倭와 관련하여서는 동정 내지 공감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관리들과 유학자들은 농민군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

화순의 진사 曹秉善, 임실 진사 韓興教, 흥양 진사 申瑞求, 순천 진사 劉在述, 구례 현감을 역임한 南宮杓, 고부 군의를 지낸 邕宅圭, 고부 유생 宋鎭庠 등이 농민군에 동참하였으며,⁹⁸⁾ 안동에서는 7월 2일에 안동 명륜당에 모

97) 『東學亂記錄』 下, pp.383-384

98) 『梧下記聞』 2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이라는 안동 鄉廳 명의의 반왜창의문이 나돌았고,⁹⁹⁾ 공주 유생 徐相轍은 8월 중순부터 안동에 와서 반왜창의를 촉구하는 격문을 발호하고 의병을 모아 반왜항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¹⁰⁰⁾

한편 관리들 가운데서도 농민군에 동조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미 청일의 출병 직후부터 조정에서도 농민군과 기맥이 통하는 관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¹⁰¹⁾ 민씨 척족세력도 농민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부활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¹⁰²⁾ 농민군 측에서도 민씨 척족의 힘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농민군은 이들과 일본군을 몰아낼 계책을 모의하기 위해 3, 4명을 경성으로 파견한다는 소문이 일기도 했다.¹⁰³⁾ 심지어 개화파 가운데도 이노우에(井上馨)공사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음으로 농민군을 후원하고는 소문이 돌았다.¹⁰⁴⁾

진주병사 민준호와¹⁰⁵⁾ 임실현감 민충식은 농민군 진영에 협조적이거나 협력하였으며,¹⁰⁶⁾ 황현은 익산 군수 鄭源成, 구례 현감 趙圭夏, 오수 찰방 梁柱燦 등이 농민군을 추종하였다고 기록하였다.¹⁰⁷⁾ 또 평양감사 민병석이 전봉준에게 청병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물리치자는 서신을 보냈다는 기사도 있다.¹⁰⁸⁾

충청감사 趙秉鎬는 동학과 잠통하여 조정에서 농민군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99) 박종근 저, 박영재 역, 『淸日戰爭과 朝鮮』, 일조각, 1992, p.203.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9, p.432

100) 박종근 저, 박영재 역, 앞의 책, pp.201-208

101) “조정의 관료 가운데도 농민군과 뜻이 통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한편으로 민씨척족이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함으로써 일본병까지 끌어들이게 되었음을 비난하는 한편 농민군에게는 지금 함부로 행동하여 세력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청일병의 간섭과 진압을 초래하니 그러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하였고, 농민군이 지금 해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체로 그 뜻에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大阪朝日新聞』, 1894년 6월 20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56; 『大阪毎日新聞』, 1894년 6월 20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227)

102) 그 중심인물은 閔炯植, 閔應植, 閔泳韶, 閔泳煥, 閔泳達, 沈相薰, 李載純, 李畊植 등이며, 특히 민영소는 玄興澤, 金主事, 李寅榮, 金學均, 金鴻陸 등을 사주하여 각국 공사관을 왕래케 하였으며, 민형식 민응식 심상훈 등은 농민군을 교사한다고 지적하였다(『日淸戰爭實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5, p.249; 『大阪朝日新聞』, 1894년 12월 16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129; 『大阪毎日新聞』, 1895년 1월 10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307). 일본측에서는 제2차 봉기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민씨척적 세력의 선동을 들기도 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p.26; 『大阪朝日新聞』, 1895년 3월 14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177).

103) 『大阪朝日新聞』, 1894년 12월 16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p.129-130; 12월 19일,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132

104) 『大阪朝日新聞』, 1894년 12월 16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130

105) 이이화, 『동학농민전쟁인물열전』, pp.114-121

106) 『梧下記聞』,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107) 『梧下記聞』 2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108) 『時事新報』, 1895년 3월 7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2, p.373; 『大阪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174

있으면 먼저 농민군들에게 그 사실을 통고해 주었으며, 겉으로는 귀화시키다고 하면서도 귀화에 대해서는 일언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¹⁰⁹⁾ 농민군과 관리의 연계 가능성도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¹¹⁰⁾ 제2차 기포 당시 충청감사로 재직하던 박제순도 종제인 박준양이 다녀간 후 대원군의 심복이 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어 농민군과의 관계를 의심받기도 했다.¹¹¹⁾ 또 박제순은 10월 12일 공주지역의 농민군 접주 任基準을 종3품으로 올려 錦營 中軍에 임명할 것을 국왕에 요청하여 승낙 받은 바 있다.¹¹²⁾

이러한 사실들은 반왜항쟁에서 농민군 측과 보수유림측 간의 연합가능성이 존재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격문이나 구호에도 보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는 물론 '민족적 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술적 고려가 전제된 것이다. 또 앞에서 언급한바 전봉준이 박제순에게 보낸 글에서도 '왜'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당하여 전봉준의 의식 속에 온존되어 있던 근왕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일본의 침략행위를 민족적 위기로 인식한 농민군 지도부가 '민족적 대연합'의 원칙을 제1차 농민전쟁 시기의 지배층에 수탈·억압받던 '계급우선'의 원칙에서 '斥倭斥化'의 원칙으로 변전시켰음을 의미한다.

10월 23일까지 논산에 머무르며 농민군을 널리 모으는 한편 각층과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던 전봉준은 공주를 향해 북상하였다. 이 무렵 농민군의 수는 1만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¹¹³⁾ 10월 23일 경천에 도착한 농민군은 10월 24일부터 공주성 공략을 시작하였으며, 11월에 들어 두 차례의 대공방전을 펼쳤으나, 패배하였다.¹¹⁴⁾ 공주전투 직후 농민군측은 또 다시 광범위한 계층

109) 「若史」,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pp.235-236

110) 조병호는 경상감사로 재직할 때도 일본군이 감영으로 들어와 선화당을 빼앗아 점거하려 하자 "귀국의 군대가 이처럼 대거 몰려 온 것은 임진년처럼 전쟁을 하고자 함인가 아니면 강화를 맺어 친선을 도모하고자 함인가"라고 하여 일본군을 선화당으로부터 몰아낸 적이 있다(「梧下記聞」, 2필, pp.178-179).

11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p.67 ; 「時事新報」 1894년 11월 21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2, p.363 ; 「大阪朝日新聞」 1894년 11월 21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3, p.111

112) 『日省錄』 고종 31년 10월 12일조 ; 『舊韓國官報』 1, 開國 503년 10월 12일조, p.603. 임기준은 중군직을 수행하다가 일본군이 공주에 들어온 후인 11월 6일 사임하였다. 사임 이유는 신병 때문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啓草存案」, 『啓草存案 外 :各司謄錄』 63, p.38 ; 「關草存案」, 『啓草存案 外 :各司謄錄』 63, p.256), 日本軍이 그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전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東學亂記錄』 下, p.282, p.292 ; 「錦營來札(道園)」, 『東學亂記錄』 上, p.82 ; 「錦營來札(雲養)」, 『東學亂記錄』 上, p.97). 훗날 서울로 압송되어 答 1백, 流 2천5백리에 처해졌다(『동학관련판결문집』, p.101).

11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p.51

의 동참을 촉구하는 격문을 각지에 띄웠다.

고시경군여영병이교시민

"무타(無他)라 일본과 요선이 기국(開國) 이후로 비록 인방(隣邦)이느 누디(累代) 적국(敵國)이더니 성상(聖上)의 인후(仁厚)함심을 힘입어 삼항을 허기하여 통상 이후 갑신십월의 스흠이 협적(奸黨) 군부의 위티(威)하미 요석(朝夕)의 잇더니 종사(宗社)의 흥복(洪福)으로 간당(奸黨)을 쇼멸(消滅)하고 금년십월의 기화간당(開化奸黨)이 왜국(倭國)을 처결(締結)하여 승야입경(乘夜入京)하여 군부(君父)를 핍박(逼迫)하고 국권(國權)을 천조(擅恣)하며 우황 방백수령(方伯守令)이다 기화중 쇼속으로 인민을 무휼(撫恤)하지 안이코 살륙(殺戮)을 쇼하 하며 시녕(生靈)을 도탄(塗炭)하미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드러 왜적을 쇼멸하고 기화를 제어하며 요정(朝廷)을 청평(淸平)하고 소직(社稷)을 안보홀시 미양 의병 이르는 곳의 병정과 군교(軍校)가 의리를 심각지 아니하고 나와 접전(接戰)하미 비록 승패(勝敗)는 업스느 인명이 피츠의 상하니 엇지 불상치 아니 하리요 기실은 요선기리 상전(相戰)하자 하는 비 아니여늘 여시(如是) 골육상전(骨肉相戰)하니 엇지 이답지 아니리요 쏘흔 공주한밭(公州大田) 일로¹¹⁵⁾ 논지 하여도 비록 춘간의 보원(報怨)한 것시라하느 일이 참혹하며 후회 막급이며 방금 디군이 압경(壓京)의 팔방이 흥흥하디 편벽도이 상전만 하면 가위 골육상전이라 일변 심각컨디 요선스람 기리야(라)도 도은(는) 다르느 척왜(斥倭)와 척화(斥化)는 기의(其義)가 일반이라 두어조 글로 의혹을 푸러 알게 하노니 각기 돌려 보고 충군(忠君)·우국지심(憂國之心)이 잇거든 곳 의리로 도라오면 상의(上)하야 갖치 척왜척화하야 요선으로 왜국이 되지 안이게 하고 동심합력하야 디스를 이루게 하올시라

갑오실일월십이일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¹¹⁶⁾

민족적 대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봉준은 농민군의 격문이나 구호에서도 보수유생과의 연합 내지 연합의 가능성을 크게 넓혀 놓으며 보수로 경사되는

114) 공주 전투에 대한 최근의 성과로는 한우근, 『동학과 농민봉기』(전정판), 1992 ;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1989 겨울호-1990년 가을호 ; 정창렬, 앞의 글, 1991 ;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 농민전쟁」,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1993 ; 구양근, 『동학농민전쟁 원인론』, 1993 ; 양진석,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연구』(4), 1995 등이 있다.

115) 10월 9일 무렵 농민군과의 전투에서 忠淸兵營領官 廉道希가 전사한 사건을 말한다(「甲午實記」, 10월 9일조, p.39 ; 『日省錄』, 고종 31년 10월 9일조 참조)

116) 『東學亂記錄』 下, 379-380쪽. 같은 날 농민군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한문으로 된 격문을 동시에 내놓았다(「示京軍營兵」, 『東學亂記錄』 下, pp.185-186쪽)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는 보수유생층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척사적 보수유생들은 반일항쟁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반농민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농민군의 활동기반이 취약하던 지역에서부터 반농민군활동을 전개하였다. 독자적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이웃 고을의 농민군이 침범해오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농민군들이 반일항쟁에 주력하게 되자 守城軍으로 그 태도를 일변하여 반농민군활동을 벌여 나갔던 것이다. 항일투쟁을 위한 ‘민족적 대연합’은 실패하였고 일본군과 관군의 합공에 의해 농민군의 뜻은 좌절되고 만다.

그러나 전봉준 장군의 뜻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전봉준 장군은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을 ‘我國境土’에 대한 침략 행위로 인식하고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국가와 멸망을 함께 할 결심”으로 제2차 봉기인 반일투쟁에 나섰다. 전봉준 장군이 자신들의 삶을 그토록 피폐하게 만들고 수많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린 관이나 유생들과도 과감히 손을 잡고 ‘민족적 대연합’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생민의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우국충정’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봉준 장군의 정국 구상과 ‘서울’의 장소성

왕현종(연세대)

< 目 次 >

1. 머리말
2. 전봉준의 등장과 초기 정국 구상
3. 1차 농민전쟁시기 정치 전략과 개혁 활동
4. 2차 봉기 이후 전봉준의 구상과 ‘서울’의 전략적 위치
 - 1) 2차 봉기의 정치적 목표와 서울 공략
 - 2) 전봉준의 체포와 재판 투쟁, 그리고 순국의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말 조선사회는 조선왕조국가의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근대사회,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개혁의 과제를 담당한 세력으로 개화파 정치세력과 농민전쟁을 주도한 정치세력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위로부터 개혁을 주도한 개화파 정치세력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스스로 권력을 창출할 정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기존의 왕권을 이용하거나 외세에 의탁하여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반면에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 및 참여세력은 조선후기 이래 농민항쟁의 흐름을 계승하여 변혁적인 정치·사회개혁을 추구하고 있었다. 두 주체의 운동은 상호 대립되거나 교착되고 심지어는 충돌하기도 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에서 싸웠으며, 1894년에는 대규모의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아래로부터 민중적인 정치개혁 운동은 일찍부터 체제적인 개혁구상과 실천방법을 정립하고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당대 유교지식인들조차 동학농민군을 오합지졸로 표현하거나 때론 과격하기만 몹쓸 존재들이라고 폄하하였지만, 실제 농민군은 1862년 농민항쟁 이후 정국구상과 변혁방법론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었으며, 1890년대에 동학과 접합함으로써 하나의 대안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농민군 지도자들의 정국구상이나 지도이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¹⁾ 그런데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조선왕조국가의 중앙인 ‘서울(한성)’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여기에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구상에서 이른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로 쳐들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서울 공략 구상을 검토하고 전봉준이 잡힌 이후 서울에서의 재판 투쟁과 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개혁 구상에서 정치 제도적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은 조선국가 적폐의 정점에 있는 청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왕의 위민정치에 기대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²⁾ 전봉준 등은 명분상으로도 서울로 복상하여 권귀(權貴)를 물리치고 성상(聖上)의 주위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벌인 심문과 재판 과정의 기사 등을 검토함으로써 전봉준 등 동학지도자들의 못다한 꿈과 한을 풀어야 하는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다.

2. 전봉준의 등장과 초기 정국 구상(교조신원운동시기)

- 1)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정치 구상 및 혁명 활동에 대해서는 김용섭, 2001, 『한국근대농업사연구[Ⅲ]』지식산업사 ; 배항섭, 2002,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 배항섭, 2015, 『19세기 민중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이화, 2014, 『전봉준, 혁명의 기록』생각정원 ; 정창렬, 2014, 『갑오농민전쟁』(정창렬저작집 간행위원회편) 선인 ; 조경달, 1998 『이단의 민중반란-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이와나미쇼텐, 등 다수가 있다.
- 2) 당시 민중들이 품고있던 왕조와 국왕에 대한 이해를 일각에서는 ‘충군애국(忠君愛國)’으로 보거나 아니면 ‘일군만민(一君萬民)’의 시각에서 민중의식의 저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재고하면서 민중들의 의사와 지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명될 필요성이 있다.

전봉준이 동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대개 1880년대 말, 혹은 189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³⁾ 그가 정치적 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892년 말 이후로 추정된다.

우선 1880년대 동학의 교세가 각 지방에 확산되면서 도리어 지방관의 침탈이 더욱 심해졌다. 동학도라는 이름으로 가렴주구 현상이 가중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동학교도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동학의 합법화를 위해 교조 최제우의 신원(伸冤)과 포교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1892년에는 서인주 등이 여러 차례 교조신원을 주장하였으며, 최시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운동으로 나섰다.⁴⁾

먼저 1892년 10월 17일경 서인주, 서병학 등은 공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각도동학유생들이 의논하여 보내온 단자(單子)’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동학이 유교와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일본 상인들의 미국 유출에 따른 농민의 피해도 언급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최시형은 10월 27일 통유문을 보내 11월 1일을 기해 각지의 두령은 각포의 도도(道徒)를 거느리고 삼례역에 집합하라고 하였다.⁵⁾

이에 11월 1일에는 삼례에서도 집회가 있었다. 역시 전라감영에 2차례 건의문을 올렸다. 전라감사도 이전 충청감사와 마찬가지로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교도들을 해산시켰다.⁶⁾ 그렇지만 동학에 대한 탄압은 수그러지지 않았고 도리어 이전보다 심해지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도들은 동학에 대한 탄압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궁궐 앞에 나가 복합상소를 주장하였다. 최시형은 이를 받아들여, 1892년 12월 6일 복합상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은에 도소(都所)를 차렸다.⁷⁾

이들이 주최한 복합상소는 광화문 앞에서 1893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선인, 2014, 102쪽, 참조.

4)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64쪽 ; 오지영, 『동학사』 70~71쪽 ; 『천도교창건사』제2편, 45~46쪽.

5) 『천도교 창건사』 제2편, 145~46쪽. 「해월선생칠십이년사」(『신인간』 해월신사탄생백주년기념호, 제2권 제3호), 참조.

6) 『한국민중운동사 자료대계』1, 여강출판사, 1985, 68~75쪽, 77~78쪽.

7) 『천도교서』『동학총서』 28, 211~212쪽.

밤낮에 걸쳐 시도되었고, 이후 귀가하여 안엽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국왕의 교지에 따라 해산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외세배척운동자들은 외국 공사관이나 학당, 교회당 등지와 여러 주요 지점에 척왜양을 기치로 조선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하는 방문을 붙여 외국인들을 위협하였다.⁸⁾ 2월 20일 전후에 프랑스 공관에서 다음과 같은 방문(榜文)이 붙었다.

“우리나라의 국법을 범하여 교당을 세우고 포교하는데, 만일 짐을 꾸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3월 7일에 우리 당은 당연히 너희 공관에 쳐들어가 소멸하겠다.”⁹⁾

이 때 서울로 올라간 복합상소를 올린 사람들의 주장이 척왜양을 내세워 외국 공사관이나 교회당에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할 것을 주장한 사람들과 일치하는 지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다. 다만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도의 수탈을 시정하기 위한 종교적 요구와 당시 국정 피폐에 대한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적어도 도단위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로 상경하여 소청을 들어줄 것을 호소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종교적 입장에서 왜양 배척의 주장이나 3월 7일의 무장 공격을 예고하는 점에서는 과격한 측면이 있었다.¹⁰⁾

이와 관련하여 전봉준이 서울로 상경하여 흥선대원군과 조우한 일화가 전한다.

“선생(先生)이 일찍 경성(京城)에 올라가 대원군을 찾아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생이 대원군을 만나 보았으나 한 말도 일찍 개구(開口)한 일이 없었다. 어찌 말이 없는가 시골사람이 서울 와서 세도(勢道)집을 찾아다니는 법(法)이다 각기 소회(所懷)가 있어 오는 바이어늘 그대는 어찌 호올로 말이 없는가. 그대의 소회가 과관(科官)인가 혹은 소송(訴訟)인가 아무거나 말을 하라 하였다. 선생 왈(曰) 사람이 누가 소회가 없으리오마는 나의 소회는 말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과관청이나 소송청 같은 것은 나의 소회가 아니요. 무슨 소회는

8) 김익환, 「1892·3년의 동학농민운동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5, 1970, 164~167쪽.

9) 김윤식, 『속음청사』 상, 권 7, 「면양행견일기」 기사 2월 24일, 257쪽. 이에 대해 프랑스 공사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 본국에 병선 3척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병선이 인천항에 대기 중이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의 인심이 자못 소요스럽다고 하였다.

10) 1893년 3월 7일 서울에서 척왜양의 공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무장집단의 실행계획이 세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정창렬, 위의 책, 118쪽, 참조)

있으나 대감의 생각이 어떠하실지를 몰라 말을 못하고 있었나이다. 대원군 왈 무슨 소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말하라. 선생 왈 나의 소회는 “나라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한번 죽고저 하는 바이라고 말하였다.”¹¹⁾

이로 인하여 전봉준과 흥선대원군과의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었는 듯하다 세평(世評)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일화는 대개 1891년이거나 이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때 전봉준은 아직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있지만, ‘위국위민(爲國爲民)’의 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윽고 1893년 2월 10일 전라도 삼례에서는 수천명의 교도들이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라감사에게 “장차 수십만이 창의하여 서울로 가서 왜양을 제거하고 병자년의 치욕을 씻겠다”는 글을 보내고 각읍의 관아에 척왜양 창의를 게시하였다. 이들은 “우리 수만명은 힘을 합쳐 죽기를 맹세하고 왜적과 양적을 물리쳐 대보지의(大報之義)를 본받고자” 하며, “각하도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충의(忠義)로운 선비들을 선발하여 함께 보국(輔國)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위협하는 글을 보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단측도 종래와는 달리 큰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보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2만여명에 이르렀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 쌀을 파는 상인들이 복세통을 이루었다. 이들은 커다란 척왜양기와 각 방위를 나타내는 오색기를 세우고 각 지역별 접을 대표하는 작은 깃발을 세웠다”고 한다.¹²⁾

이 집회는 1893년 3월 10일 교조 조난일을 맞아 최시형이 충청도 청산의 김연국 집에서 김연국, 손병희, 박용호 등 여러 지도자들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교도를 모으려고 발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최시형은 “모든 교도들로 하여금 보은으로 집결하도록 통문을 보내게” 함으로써 성립되었다.¹³⁾

그런데 3월 11일 최시형이 보은 장내리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교도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¹⁴⁾ 보은 관아에는 ‘척왜양’을 전면 주장하는 <통고(通

11) 오지영, 『동학사』 간행본, 162~163쪽. 『천도교창건사』에서도 전봉준은 갑오 기병하기 3년전부터 대원군 문하에 출입하였다고 하였다(『동학사상자료집』2, 147~148쪽, 정창렬, 위의 책(2014), 126쪽 재인용).

12) 「위어(聚語)」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권, 사운연구소, 1996), 33~34쪽

13) 「본교역사(本敎歷史)」 『천도교회월보』 31, 1913.2, 22쪽.

14) 「취어」, 『사료총서(2)』, 29~75쪽 ; 『천도교회사초고』, 453쪽 ; 『본교역사』, 330쪽.

告>가 이미 게시되어 있었다. 3월 22일 <동학인방문(東學人榜文)>에도 ‘척왜양’을 기치로 하였다. 그런데 교단 지도부나 다른 주도층들은 당시 보은 집회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조신원이나 동학의 합법화를 위한 요구도 관철하지 못하고 일부 과격파들에 의한 척왜양 주장에 끌려가고 있었다.

1893년 4월 1일 서병학은 양호선무사인 어윤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행하게도 여기(동학)에 들어와 사람들의 지목을 받게 된 지 오래되었다. 마땅히 취당한 내력을 상세하게 말하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호남취당은 간단히 보면 비록 동종의 종류인 것 같으나 발문게방(跋文揭榜)은 모두 그들이 한 것이다. 정형이 극히 수상하니 원컨대, 공은 상세히 살펴보고, 판단하여 우리 당과 혼동하지 말고 옥석을 구분해달라.”¹⁵⁾

여기서 발문게방의 내용은 1893년 3월 11일 ‘보은관아통고’라는 문건으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왜양(倭洋) 오랑개가 나라의 심복에 들어와 있어 대란(大亂)이 극에 달하였다. 진실로 오늘날 나라의 수도를 볼 때 드디어 오랑개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 (중략) 지금 우리나라 3천리 강토가 짐승의 자국으로 짓밟혀져 5백년 종사가 망하고 그 터전이 기장 밭이 되어 버리는 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인의예지와 효제충신은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가. (중략) 우리들 수백만은 힘을 합쳐 죽기를 기약하고 왜양을 쓸어내어 대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앞드려 원하옵건대, 각하께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하여 충의심(忠義心)이 있는 사(士)와 리(吏)를 뽑아 모집하여 같이 보국(輔國)하기를 천만 번 기원합니다.¹⁶⁾

한편 1893년 3월 21일 이전 전라도 금구 원평에서는 서장옥, 전봉준, 손화중 등이 1만 여명을 모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교단 지도부보다 좀더 정치개혁적이었다. 이들은 ‘척왜양’과 ‘보국·안민’을 내세웠다. 동학교도들의 기세에 놀란 정부는 설득과 회유를 병행하는 한편 강경 진압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러자 보은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일단 해산하였고, 이어 금구

15)「취어」, 『사료총서(2)』, 69~70쪽 ; 『동학란기록』(상), 국사편찬위원회, 1958, 123쪽 ; “中有徐丙鶴者, 自言誤入此黨, 追悔莫及, 且將聚會來歷書呈一通, 蓋歸咎於前錦伯 趙秉式之貪虐激變也, 又曰, 湖南聚會之黨, 與我種類不同, 乞勿混示, 以別玉石”(『속음청사(續陰晴史)』, 국사편찬위원회, 1960, 266쪽).

16)『동학란기록』 상, 「취어」 ‘보은관아통고’, 108~109쪽, 참조.

집회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¹⁷⁾

그런데 보은집회 및 금구집회에서는 ‘척왜양’ 기치가 전면에서 나르고 있었던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종래 서울에서의 방문게시운동을 주도하였던 남접 세력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보은집회를 전후로 하여 새로이 척왜양을 주장하고 보국·안민의 구호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¹⁸⁾

척왜양은 기존의 교조신원의 구호보다는 폭넓은 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래 유교적 교리와 수양을 주장하며 동학의 이단성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외적인 명분으로 외부의 적을 대상으로 배척함으로써 연대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척왜양’과 ‘보국안민’의 이념은 그렇게 쉽게 결합될 수 있는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보국안민’의 내적 목표는 봉건 정부의 수탈과 지방적 수탈의 대상이 되어 급속히 몰락하고 있는 민중을 구제하려는 이념이었다. 반면에 척왜양을 내세워 민중의 외적 유대를 강화하기 보다는 자체로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갖는 구호라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척왜양을 통하여 동학운동의 외연은 확대하고 투쟁 의지를 표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급적 대립이 이미 심화된 농촌사회 내부에서 내적인 결속력을 다지고 개혁 이념을 구체화하는 편이 ‘척왜양’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장보다는 더 확실한 구심점과 농민적 지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은집회 참여자들은 일종의 민회(民會)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은 집회의 참여자들은 “위로 조정에 아뢰어 탐관오리를 쫓아내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습니. 신은 “이는 조정이 해야 할 처분인데, 너희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고, 또 “저희들의 이 집회는 조그마한 무기도 가지지 않았으니, 이는 바로 민회(民會)입니다. 일찍이 여러 나라에도 민회가 있다고 들었고, 조정의 정령(政令)이 백성과 나라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근래의 일입니다. 어찌 저희들을 도적의 무리[匪類]라고

17) 정창렬, 2014, 위의 책, 95~98쪽, 참조.

18) 이영호는 1892년 이후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전개된 동학 교단과 농민들의 운동 이념을 ‘척왜양’과는 다른 이념으로서 ‘보국안민(保國安民)’을 주목하였다. 또한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釋史)』(『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9, 100쪽)에서도 시천교의 교단사에만 나와 있고 천도교의 다른 교단사에는 없기 때문에 당시에 최시형이 보국안민의 개념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였다(이영호, 2004,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478~479쪽).

지적합니까?”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듯이,¹⁹⁾ 민중들이 자신의 경제적 보장과 권리 신장을 위해 도회소(都會所)를 꾸리고 정치적 논의와 주장을 제창하기 위해 창익(倡義)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처럼 1893년 2월 서울에서의 복합상소와 방문 게시운동의 시도에 이어 3월 보은집회와 금구집회의 개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 의미는 고립 분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 연대의 장소로 민회(民會)의 장소성(場所性)의 변화를 주목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부패청산과 개혁 요구의 기치를 들 수 있는 집단적인 거점이었다.

또한 보은과 금구의 집회 주도세력들은 이전의 교조신원운동의 한계를 넘어 ‘척왜양’과 ‘보국안민’의 방향으로 운동의 목표를 갖게 되었던 단계적 이념의 전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은집회는 민중들의 자발적인 집회를 주도하지 못한 교단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을 넘어, 보다 정치경제적 개혁 구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도부로 전봉준 등 남접 중심의 정치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지도부와 이념의 상호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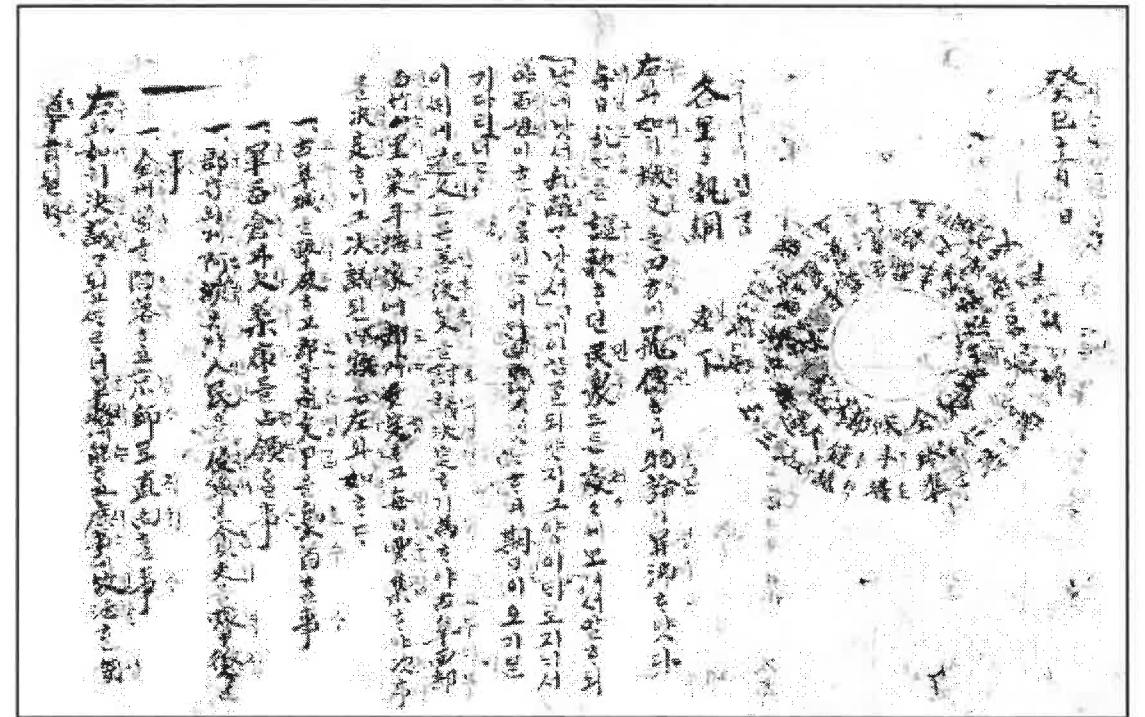
3. 1차 농민전쟁시기 정치 전략과 개혁 활동(고부민란~집강소시기)

1894년 1월 고부민란에 이어 3월 중순 무장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순식간에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면서 봉건적 폐정을 개혁하고 부패 관리를 징치하는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농민군의 1차 봉기는 고부민란을 기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란의 준비단계부터 농민군의 전략적인 목표가 천명되고 있었다. 1968년 12월 4일에 발견된 ‘사발통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²¹⁾

19) 「宣諭使 再次狀啓」『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2)』, 64~75쪽.

20) 왕현종, 2013, 「1893년 보은집회 연구의 쟁점과 과제-주도층과 이념의 이중 교차」『동학학보』28, 80~85쪽, 참조.

21) 『나라사랑』 특집호, 「녹두장군 전봉준」기사 참조.



<그림 1> 소위 「사발통문」의 수록 내용(통문과 진행 상황 및 4개 결의, 42×30cm)

위의 자료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1)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통문 내용이 빠져있고 서명한 날자와 20명의 서명자, 그리고 각리의 집강에게 보낸다고 한 부분이다. 다음 (2)는 통문이 사방에 돌려진 후 지역사회의 여론 동향을 전문한 내용이다. (3)은 사람들이 선후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부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宋斗浩)가에 모여 4개의 결의를 한다는 것이다. (4)는 이 모임에서 실제 결의한 4개의 봉기 목표와 영도할 장군으로 누구를 뽑는다”는 내용이다.²²⁾

그 중에서도 봉기의 주모자들이 고부 송두호가에 모여 결의한 4개의 목표는, ①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사, ②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사, ③ 군수에게 아유(아침)해야 인민을 침어(수탈)한 탐리(貪吏)를 엄징할 사, ④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直向)할 사 등이었다. 여기서 고부민

22) 『나라사랑』 15집, 1974, 134~135쪽.

란의 발발이 일개 지역의 민란에 그치는 지역적 공간적 한계에 머물러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발통문 자료에서 나오는 4개의 목표에서는 주변 지역의 봉기와 연계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쳐들어갈 것을 결의할 정도로 전면적인 봉기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계획은 바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초기부터 민란의 전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월 15일에서야 전라감사 김문현과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각각 월봉(越俸)과 나문정죄(拿問定罪)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면서 읍폐의 교구방략을 소상하게 조사할 것과 민란의 수창자(首倡者)이외에 협종지류(脅從之類)는 효유하여 해산시킨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²³⁾ 이어 2월 22일에는 국왕의 윤음(綸音)을 반포하여, 민란의 원인이 “탐학한 관리가 백성을 침탈한 데 있다”고 규정하고 여러 지방 관리의 장부(藏否)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²⁴⁾ 이러한 대책은 이전의 민란을 다루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1894년 2월 3월간 정부지배층은 민란의 원인을 봉건국가 체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부패와 민중 수탈에 있다고 보고 이들의 침탈만 제거한다면 지방에서의 민란은 곧 수습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 고부에서는 민란이 진정국면에 있었다. 이에 전봉준은 민란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에 옮겼다.

고부 민란에서 중민이 (전봉준을) 장두(狀頭)로 앉혔다. 그가 그 간계를 미처 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민이 모두 해산하였다. 고로 전봉준도 창졸간에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감영과 안핵사가 심히 급하게 찾으니 전봉준은 벗어나기 어렵다고 두려워져서 이에 그의 당 김개남·손화중·최경선 등과 함께 민을 유인하여 전화위복하려는 계획을 하고 함께 짜고서 반(反)하였다. “동학은 대천리물(代天理物)하고 보국안민(保國安民)하며 죽이거나 약탈하지 않으며 오직 탐관오리만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창언(倡言)함에 우민(愚民)이 향응하고 우연(右沿) 일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니 열흘 남짓 사이에 수만명에 이르렀다. 동학이 난민(亂民)과 합(合)함이 이에서 시작되었다.²⁵⁾

23) 『일성록(日省錄)』 고종 31, 갑오 2월 15일 48쪽.

24) 『일성록』 고종 31, 갑오 2월 22일 <下綸音于各道郡邑民人> 56-7쪽.

25) 황현, 『오하기문』 1, 24쪽; 정창렬, 1985, 『고부민란의 연구(하)』 『한국사연구』 49, 133쪽, 재인용.

이와같이 전봉준은 전라도 고창에 있던 손화중에게 가서 재봉기를 모의하고 또 김개남과 함께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다시 봉기하였다. 이들은 고부 위쪽 백산에 창의를 차리고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고부, 고창, 무안을 비롯하여 전라도의 주요 지역을 돌아다니며 각지의 농민들에게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²⁶⁾ 1894년 4월에도 농민군의 목표로는 “군대를 거느리고 서울로 쳐들어가 권귀(權貴)들을 모두 없앤다(驅兵入京 盡滅權貴)”라고 할 정도로 서울 진격의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다.²⁷⁾ 이들 농민군은 순회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 많은 농민들이 대열에 참여하였고 지휘부에도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이어 폐정과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폐정개혁안을 올려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다. 마침내 4월 27일 전라도의 감영이 있는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조선 정부는 흥계훈의 지휘아래 수도를 방위하던 장위영병을 현지에 보내 농민군을 진압토록 하였으나 초기 진압하는 데 실패하였다. 조정의 부패 관료인 민영준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보다는 청나라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여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청나라 군대가 출병하여 충청도 아산만으로 향할 무렵, 일본은 일본 거류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곧바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청과 일의 국제적 간섭을 받게 된 상황에서 농민군은 더 이상 정부군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농민군 지도부는 정부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해산의 조건으로 폐정을 개혁하기 위한 27개조의 요구를 제출하였다.²⁸⁾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전쟁 명분을 확보하고 전쟁수행에 협조

26) 격문(檄文) “우리가 의(義)를 거(擧)하여 이에 이른 것은 그 본 뜻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蒼生)을 도탄(塗炭)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磐石[磐泰山])위에 두기 위해서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強賊[盜賊])의 무리를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양반과 부호(富豪)들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方伯)과 수령에게 굴욕을 당하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늦을 것이다. 갑오 정월 일 호남창의대장소 (고부)백산”(오지영, 『동학사』 참조).

27) 4대명의(四大名義) 1) 사람과 생물을 죽이지 말 것 2) 충효를 함께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할 것 3) 왜놈과 양놈을 모두 쫓아내고 성도(聖道)를 깨끗이 할 것 4) 군대를 거느리고 서울로 쳐들어가 권귀(權貴)들을 모두 없앤다 등 농민군이 창의를 선포하면서 행동지침을 내세웠다(정교, 『대한계년사』 권2, 1894년 4월조(조광 편, 『대한계년사』2, 소명출판, 2004, 24쪽).

28) 이후 「전봉준 판결 선고서」에는 27개 조항 중 14개만 제시되어 있고, 13개 조항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무력 개입을 철저히 반대하는 내용, 또는 토지분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측하였다(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2, 201~203쪽). 아직까지 사라진 13개 조항의 실체를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분히 정치적 요구를 담고 있지 않으나 추정할 수는 있다.

해 주는 친일전부(親日政府)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군사 개입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조기(早期)’에 달성하려고 했다.²⁹⁾ 6월 21일 새벽 일본군은 경복궁에 쳐들어가 조선정부를 교체하였다. 이후 고종의 친재(親裁)를 중지시키고 대원군으로 넘겨 섭정으로 삼게 되고, 25일에는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개혁관료세력의 갑오정권(甲午政權)을 수립시켰다.³⁰⁾

1894년 5월 이후 동학농민군은 각 지방의 집강소 개혁에 몰두해 있었고, 새로 수립된 갑오개혁 정부의 여러 근대화 조치를 환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청일 전쟁의 승패를 모르고 있던 농민군은 바로 반일운동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다. 8월 하순에는 일본의 조선 국권 침탈이 명백해지고 농민군을 토벌하리라는 상황이 예상되었으므로 농민군은 더 이상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아산 전투의 소식을 들은 것은 7월초였던 것으로 보인다.³¹⁾ 7월 17일 무주집강소에 보내는 통문에서 전봉준은 “바야흐로 외구(外寇)가 궁궐을 범하여 국왕을 육보였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목숨을 걸고 의로써 싸워야 하나.....그 화가 종사에 미칠지 몰려나 은둔하여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세력을 모아 다음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만전지책(萬全之策)”이라고 하였다.³²⁾ 청국과 일본의 개전에 유의하면서 일단 농민군의 무장을 갖추지 않고 폐정개혁에 치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반하여 김개남은 “대중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장력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손화중은 조기 해산을 주장하였다.³³⁾ 이렇게 1894년 8월말까지 전봉준과 손화중은 무장력을 계속하기 보다는 ‘관민상화’의 집강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김개남은 이에 무장력을 유지한 채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등 3인의 농민군지도부는 청일전쟁 직후의 정세인식과 농민군이 앞으로 취해야할 방략에 대해서 상호 불일치하는 정세인식을 보였다.

29) 朴宗根, 1982, 『日清戰爭と朝鮮』(東京: 青木書店; 번역판, 일조각, 1984), 8~27쪽; 나가츠카 아키라(中塚明), 1997, 『歴史の偽造をたずね: 戦史から消された日本軍の「朝鮮王宮占領」』(東京: 高文研), 번역판,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71~82쪽, 참조.

30) 왕현종, 2003, 『한국 근대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제4장, 개혁주체의 형성과 갑오정권 수립, 역사비평사, 130~147쪽.

31) 정창렬, 2014, 앞 책, 266~272쪽.

32) 『茂朱執綱所』 『隨錄』 갑오 7월 17일[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1996, 『동학농민전쟁자료총서(5)』, 사운연구소, 278~279쪽(이하 『자료총서』)].

33) 『오하기문(梧下記聞)』 2필(『자료총서(1)』, 210~211쪽)

4. 2차 봉기 이후 전봉준의 구상과 ‘서울’의 전략적 위치

1) 2차 봉기의 정치적 목표와 서울 공략

전봉준은 9월 14일 삼례역에서 800여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전주성으로 들어와 2차례에 걸쳐 군기고의 화포와 탄환 환도 등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또 삼례에 대도소를 차리고 군산과 인근 읍에 통문을 돌려 봉기를 위한 무장과 군자금을 모으는 데 진력하였다. 이처럼 전봉준의 지휘하에 9월 중순 삼례의 대도소를 거점으로 하여 2차 농민전쟁을 추진하였다.

전봉준은 북접 교단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교단 측은 통유문을 통해 “창의(倡義)를 빙자하여 평민을 침학하고 도인을 죽이는 것이 끝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북접 교단은 재봉기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9월 18일에 최시형은 비로서 기포령을 내려져 북접 휘하의 호서지역 농민군들은 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나 식량을 조달하는 등 전쟁 준비에 나섰다.³⁴⁾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당시 2차 봉기 목적을 제시하는 창의문을 봉기 초기에 정식으로 공포하지는 않았다. 전봉준은 이번 봉기의 목표를 서울로 쳐들어가는 것으로 하였지만, 봉기의 주도 세력과 관련하여 종전 남접 자신들을 고집하지 않고 동학의 북접 교단이나 충청도 일대 농민군 세력의 규합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봉준이 대외적으로 재봉기의 목적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1894년 10월 16일 논산에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올린 ‘양호창의영수(兩湖倡義領袖) 전봉준 상서(上書)’에서였다.

양호 창의영수 전봉준은 호서(湖西) 순상(巡相: 충청감사 박제순) 합하(閣下)께 삼가 백번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만이 강기(綱紀)를 가지고 있어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일컫는데, 식언(食言)을 일사목 양심을 속이는 자들을 인류(人類)라고 말

34) 『천도교회사초고』 『동학사상자료집』 1, 625쪽.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에 근심거리가 있는 이때에 겉으로는 꾸미고 안으로는 미혹시키는 자들을 어찌 감히 하늘의 태양 아래에서 한 순간이라도 목숨이 붙어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 왜구들이 트집을 잡아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임금을 협박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을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임진년[1592년, 임진왜란]의 병화 때, 능침을 파괴하고 대궐과 종묘를 불태우고 임금을 옥보이고 백성들을 죽인 것은 신민들이 함께 분노하며 천고에 잊을 수 없는 한입니다. 초야에 사는 필부와 어리석은 동자들도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대로 벼슬을 살며 나라에 공을 세운 합하께서는 평민이나 필부보다 그 감정이 배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조정 대신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하려는 생각에 위로는 임금을 위협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동쪽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남쪽의 백성들에게 원한을 샀으며 친병(親兵)을 함부로 움직여서 선왕(先王)의 적자(赤子)를 해치고자 하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의도이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시쟁이 하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편단심은 죽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다] 천하에서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소탕하여 선왕조에서 500년 동안 길러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합하께서는 잘 살피시어 함께 의를 위하여 죽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갑오년 10월 16일 (印) 논산에서 삼가 올림³⁵⁾

위의 「전봉준 상서」에서 전봉준은 먼저 일본군의 경북궁 침공과 정권 교체를 [가]와 같이 “왜구들이 트집을 잡아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임금을 협박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이 글에서 그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와 같이, “지금 조정 대신들은……위로는 임금을 위협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고 동쪽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친병(親兵)을 함부로 움직여서 선왕(先王)의 적자(赤子)를 해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다]와 같이 “천하에서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소탕하여” 선왕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이 상소에서 전봉준은 조정에 있는 친일대신들이 일본과 결탁하여 왕조를 배반하는

35) 「전봉준상서(全琫準上書)」兩湖倡義領袖全琫準謹百拜上書于湖西巡相閣下覆載之間人有綱紀稱以萬物之靈其食言欺心者不可以人類論之況茲國有艱憂豈敢以外飭內誘容息於天日下一瞬之命哉日寇之構釁動兵逼我君父擾我民黎甯忍說乎在昔壬辰之禍夷凌寢焚闕廟辱君親戮黎庶臣民之共憤而千古未忘之恨也在於草野匹夫昧童尚鬱悃不暇而況閣下世祿忠勳尤倍於平民小夫哉目今朝廷大臣妄生苟全之心上脅君父下罔黎民連陽於東東致怨於南民妄動親兵欲害先王之赤子誠何意哉竟欲何爲今生之所爲固知其極難然一片丹心營死不易掃除天下之爲人臣而懷二心者以謝先王朝五百年遺育之恩伏願閣下猛省同死以義千萬幸甚 甲午十月十六日印在論山謹呈.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소탕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상소에서 전봉준이 조정 대신들이 있는 ‘서울’로 쳐 올라가려고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전봉준 부대는 10월 23일 논산을 출발하여 경천(敬天)으로 올라갔다. 10월 24일부터 공주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틀에 걸친 1차 공방전에서 전봉준 부대는 패배하였다.³⁶⁾ 이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다시 공주를 공격하였으나 결국 2차 전투에서도 패배를 맛보았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과 조선정부군에 대항한 농민군들은 전봉준 부대 1만여 명과 각지에서 참전한 농민군 약 1만명 등을 합하여 2만여 명이었다. 그렇지만 일본군에 비해 전투능력에서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 일본군은 비도 수천인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였듯이 전력상의 차이가 컸다.³⁷⁾ 실제 농민군 진압에 동원된 병사는 일본은 후비보병 제19대대 3중대를 주축으로 약 2천여 명이었으며, 양호도 순무영에 소속된 조선군대는 2,975명 정도였다.³⁸⁾

그렇지만 이렇게 2차례 패배라는 악조건에서도 전봉준은 11월 12일 「고시문」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정국 구상 및 봉기 목적을 다시 밝히고 있다.³⁹⁾

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

무타라 일본과 요선이 지국 이후로 비록 인방이느 누디 적국이더니 성상의 인후히심을 힘입어 삼함을 허기히여 통상이후 갑신십월의 스흠이 협적히야 군부의 위티히미 요석의 잇더니 종스의 흥복으로 간당을 쇼멸히고 [라] 금년

36) 『오하기문(梧下記聞)』3, 갑오 10월, 25~30쪽.

37) 당시 외무대신 김윤식은 “일본군은 일간 500명을 파견하여 3갈래로 나누어 내려갈 것입니다……대개 비도는 무리를 모아 기세를 이루지만 그 실상을 맹랑하여 빈손의 적에 불과하고, 오합지졸처럼 비록 많더라도 어찌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양창을 얻더라도 사용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탄알이 없으면 도리어 토총만 못합니다. 토총은 불품없는 기계인데, 어찌 서양 총을 대적할 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군 1명이 비도 수천명을 상대할 수 있고, 경병 10명이 비도 수백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병기의 우수함을 긍정하였고, “일본군이 10명이면 비도 수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일본군의 화력과 작전 수행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錦營來札』<갑오 10월 12일, 김윤식의 편지>『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1, 496~497쪽, 참조).

38) 왕현종, 「조선정부의 농민군 진압 지휘 체계와 진압과정」2016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학술대회,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발표문, 4~6쪽 ; 강효숙, 2005,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열린정신 인문학연구』6, 43~54쪽 ; 강효숙, 2008, 「황해 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한국근현대사연구』47, 123~143쪽, 참조.

39) 이 고시문의 원문은 순 한글본인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동학난기록』에서는 한문을 첨가하고 있다(『동학창의소의 고시문』 갑오 11월 12일(국사편찬위원회, 1969, 『고종시대사(3)』, 660~661쪽 사이 도판 제4)) ; 정창렬, 2014, 위 책, 298~299쪽. 여기서는 본문 중 ‘금년 유월’은 그동안 ‘금년시월’로 잘못 알려졌는데, 정창렬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있는 원본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본래 ‘늑월’(6월)의 오키임을 밝혔다.

늑월의 기화간당이 왜국을 처결하여 승야입경하여 군부를 펍박하고 국권을 천조하며 [마] 우항 방빅슈령이 다기화중 소속으로 인민을 무홀히지 안이코 살육을 조하하며 심령을 도탄하민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드러 왜적을 쇼멸하고 기화를 제어하며 도당을 청평하고 소직을 안보홀 시 [중략] 방금 다군이 압경의 팔방이 흥흥하디 펍벽도이 상전만 하면 가위 골육상전이라 일변 심각컨디 [바] 도션스람 기리아도 도은 다르느 척왜와 척화는 기의가 일반이라 두어즈 글로 의혹을 푸러 알게하노니 각기 돌려 보고 중군 우국지심이 잇거든 곳 의리로 도라오면 상의하야 갖치 [사] 척왜척화하야 도션으로 왜국이 되지 안이케하고 동심합력하야 디신을 이루게 하올신라

갑오 십일월 십이일
동도창의쇼

위의 고시문에서 전봉준은 ‘금년 늑월’ 개화간당이 왜국과 체결하여 군부를 펍박하여 국권을 마음대로 하였다는 정세([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당시 지방 수령이 모두 개화 간당의 소속으로 인민을 무홀치 않고 살육을 좋아할 정도로 펍박하여 생령이 도탄에 빠졌다고 비판하였다([마]). 그래서 조선 사람끼리라도 도는 다르지만 척왜와 척화의 기치를 드는 것([바])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게 동심합력하여 대사를 이루게 할 것([사])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고시문의 내용에서는 1차 봉기시에 정치개혁의 구호로 내세운 ‘보국안민’의 기치를 이어 일제의 정치·군사적 침략에 맞서 싸우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척왜척화’의 기치를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봉준과 그의 부대가 목표로 하는 ‘척왜척화’의 기치를 위해서는 바로 서울로 쳐들어가 집권세력의 교체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이론(異論)이 있다.

하나 전봉준과 그의 부대가 농민군 스스로 정국구상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회유와 사주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있다. 당시에 전봉준 심문과정에서 대원군의 효유문과 봉기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였으며, 또 법무대신 김학우의 암살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현 갑오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쿠데타 음모가 포착되었다.⁴⁰⁾ 이 때문에 불거진 흥선대원군의 봉기사주설에 기초한 것이었다.

40) 『大阪朝日新聞』 1895년 4월 9일자 「金鶴羽刺客の白狀 大陰謀の發露」(『자료총서(23)』, 183~186쪽)

그렇지만 전봉준은 심문과정에서 이러한 대원군과의 연계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전봉준은 “대원군의 효유문이 개화파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않았는지는 내가 생각한 바가 없고, 재기는 나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또 비록 대원군의 효유문이 있다고 해도 깊이 믿기 어려웠으므로 재차 거병을 도모하였다.”고 하였다.⁴¹⁾ 이는 전봉준이 사후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르나 굳이 기존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혁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 입장이었다고 본다면, 대원군의 효유문과는 별개로 봉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흥선대원군측에서는 1894년 8월말 한편으로 농민군에게 효유문을 내어 설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군의 재차 봉기를 부추기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점차 대원군의 의도가 탄로가 나자 흥선대원군은 농민군과의 연락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 공작을 시도하였다.⁴²⁾ 여기서 주목할 점은 흥선대원군의 밀사들은 이미 8월 중순에 호서와 호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8월 25, 26일간에 농민군 기만명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올 것을 부추기고”있었다는 것이다.⁴³⁾ 이는 당시 8월말 전봉준 등의 정세인식이나 봉기 준비에 비추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또한 전봉준은 흥선대원군과의 결탁을 심문과정에서 초지일관하게 부인한 바 있다.⁴⁴⁾

다른 하나는 최근 2차 봉기의 전략적인 선택은 서울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청감영인 공주를 점거하고 호서도회(湖西都會)와 회맹(會盟)을 시도했다고 보고자하는 시론이 제기되었다.⁴⁵⁾ 그런데 「전봉준 판결선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日本軍隊가 大關로 드러갓단말 듯고 必是 日本人이 我國을 併呑코져하느 뜻신줄 알고 日本兵을 쳐물니고 其居留民을 國外

41) 「乙未 2월 19일 全瑋準 五次問目(領事問)」, 『전봉준공초』(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위 책, 14쪽)

42) 양상현, 1997, 「대원군파의 농민전쟁 인식과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5)』, 역사비평사, 226~230쪽 ; 김영수, 1997, 「갑오농민군과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 19-3, 159~164쪽, 이이화, 1990,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여름호, 참조. 양상현 등은 2차 봉기 사주설은 아니지만 대원군과 전봉준 및 농민군의 연락관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배항섭은 2차 봉기 당시 양자의 관련성을 차단시켜 전봉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다(배항섭, 1997,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참조).

43) 8월 25일에 정인덕이 임진수를 통해 박동진에게 부친 편지에는 “이달 말일을 기하여.....십 수만 명이상의 大兵을 서울 근교로 이동하도록 해야 하며”라고 하여 농민군의 구체적인 이동방향을 시달하고 있다(『李秉輝供草』 再次, 1894년 10월 7일, 참조).

44) 왕현종, 2015,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한국사연구』 168, 234~240쪽.

45) 지수결, 「1894년 ‘공주대회전(公州大會戰)’ 시기의 ‘공주 학거·고수’ 전술과 ‘호서도회(湖西都會)’ 개최 계획」, 『역사문제연구』 33, 2015, 281~333쪽, 참조.

로 驅逐할 마음으로 다시 起兵을 圖謀하여”봉기했다고 기술하였듯이,⁴⁶⁾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로 가서 일본병을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공주대회전 이후 거듭된 패배후에 “京城으로 드러가 情探코져 하여 被告는 商人 민도리 하고 單身으로 上京次” 상경투쟁을 도모하였다고 하였듯이 서울로 진격하여, 혹은 서울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차 봉기의 시작과 끝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당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일본군의 보고서에도 2차 봉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동학도의 수령 및 기타 접주(接主)라고 칭하는 각처의 우두머리들은 곧 일본인들이 개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에 있어서는 조선을 빼앗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끝까지 일본인을 격퇴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무지한 인민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으며 김개남(金介男) 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개남국왕(開南國王)이라고 칭하는 등, 즉 그 내부에 혁명(革命)·척왜(斥倭)·축관(逐官) 등 각양각색의 목적을 갖고 있는 집합체로서 그들의 당교(黨敎)는 능히 인심을 단결시켜 죽을힘을 다하게 하는 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 군대를 만나면 모습을 감추고 종적을 숨겼으나 만약 일본군을 만나더라도 그 병력이 소수임을 알게 되면 갑자기 무리를 모아 이에 대항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죽음을 무릅쓰고 용진(勇進)하는바, 이 같은 일은 보통 조선인의 겁유(怯懦) 또는 무모한 성품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바입니다.⁴⁷⁾

전봉준 등 동학도의 수령과 접주 등 우두머리는 일본인들이 취하는 개화정책의 본래 의도가 조선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보고 일본인을 격퇴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혁명, 척왜, 축관 등 각양각색의 목적을 갖고 있는 집합체이며, 일본에 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정치세력이기는 했으나 최종적인 목표는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의 격퇴에 두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46) 「제37호 判決宣告書 原本」(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앞 책, 29~31쪽).

4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 기밀발제5호, 「(4) 東學黨 鎮定 후 再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분간 日本軍隊를 각 요지에 分屯시키는 일에 대한 上申」(1895.1.16., 특명전권공사 井上馨=> 외무대신 陸奥宗光), 참조.

2) 전봉준의 체포와 재판 투쟁, 그리고 순국의 의미

1894년 10월 중순 농민군은 본격적으로 북상하여 공주전투와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농민군 지도자가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체포되었다.

1894년 11월 중 당국 법무아문(法務衙門)이 동학당사건의 심문을 개시하자, 일본영사 우치다 사다즈치(內田定槌)는 주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井上馨)의 훈령에 따라 조약의 규정에 의거한다며 매회 법정에서 출석하여 당해 관리와 심리를 행하였다. 첫 번째 심문에 참여한 11월 2일 시작하여 그 후 날을 보내기를 175일, 법정에서 출석하기를 전후 31회, 피고인을 취조한 것이 61명, 압수한 증빙서류를 검열한 것이 실로 1,496통에 이르렀다고 한다.⁴⁸⁾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은 1894년 12월 2일 순창에서 체포되었다.⁴⁹⁾ 전봉준은 순창에서 수감되었다가 12월 7일 일본군에게 인도되어 나주로 이송되었다.⁵⁰⁾ 이어 12월 9일 전봉준은 서울로 압송되었다.⁵¹⁾ 이후 전봉준 일행은 서울에 도착하여 일본공사관 등지에서 집중적인 심문을 받게 되었다. 이를 일지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²⁾

<표 4> 전봉준 심문 관련 기사 일지(1894.12.10.~1895.3.29.)

실제 날짜	기록 날짜	제목	내용	출전
1895.1.4 (음 12.9)	12.10	전라감사 이도재 보고	全羅監司 李道宰 以電報 本月初九日 匪魁 全瑋準 生擒 押上 啓	高宗實錄
	3.3(2.7)	全祿斗의 申供	동학당정토군 독립 19대개 某官, 포획당시 전봉준 취조와 공술	大阪朝日新聞
	3.5(2.9)	朝鮮時事(2월)	“全綠豆(瑋準)가 전라도의 수령으로 전라	東京朝日

4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권, 「東學黨事件에 대한 會審顛末 具報」(1895년 8월 2일, 在京城 一等領事 內田定槌=>特命全權公使 井上馨), 참조.

49) “全羅監司 李道宰 以電報 本月初九日 匪魁 全瑋準 生擒 押上 啓”(『高宗實錄』 31년 12월 10일 일지)

50)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사료총서(14)』, 107~108쪽·120~121쪽·197~198쪽) ;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사료총서(16)』, 104~105쪽) ;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사료총서(16)』, 216~217쪽) ; 「선봉진각읍요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사료총서(16)』, 116쪽).

51) 전라감사 이도재는 전주 인근에 아직 농민군들이 다수 둔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이송도중에 탈취당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12월 3일 오후 4시경 김개남을 서교장에서 전격 참수하고, 수감만 서울로 보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97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2-4쪽·8쪽).

52) 발표자의 종전 논문(「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한국사연구』 168, <표1> 「전봉준공초」 편집 순서와 내용정리(232쪽)에서 재판 날짜를 양력으로 비정했는데, 이는 신문기사와 대조할 때 음력이 맞음으로 여기서 새로 수정하였다.

		18일 京城 靑山 好惠)	도 순창에서 民兵에게 포획되어 일본병에 인도되었다”	新聞
2.21 (음 1.21)	3.7	雲邊과 東學黨-朝鮮時事(2월 21일 경성 靑山 好惠)	동학당정토군 제19대대 사령관 미나미 소좌의 최초 취조기록, 일본의 역할 조선 독립국, 속국 질문	東京朝日新聞
2.27 (음 1.27)	3.12(2.16)	東學黨大巨魁-朝鮮時事(2월 27일 경성 靑山 好惠)	일본 공사에게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조언에 대해 憤然히 듣고 “이 시기에 미쳐 여하히 비열한 마음을 갖겠는가하며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다”라고 하였다	東京朝日新聞
	3.2(2.6)	東學黨大巨魁生擒	동학당 2대 거괴 전녹두(봉준) 사로 잡음	大阪朝日新聞
	3.5(2.9)	東學黨大巨魁生擒	전봉준 등 지도자의 일본공사관 이송	東京朝日新聞, 大阪朝日新聞
	3.5(2.9)	東學黨大巨魁와 其口供	동학당정토군 독립 19대대 사령관 미나미(南) 소좌 포획 당시, 질문에 대한 대답 - 종국의 목적은, 첫째 閔族을 무너뜨리고 한 패인 간신을 물리쳐서 폐정을 개혁하는데 있고, 또한 轉運使를 폐지하고 田制山林制를 개정하고 私利를 취하는 小吏를 엄중히 처단할 것을 원할 뿐	東京朝日新聞
3.5(2.9)	2.9(음)	初招問目	전봉준의 신상과 농민군 봉기 경과 심문	전봉준공초
	3.6(2.10)	東學首領과合議政治	합의법에 의한 정치 담당 주장	東京朝日新聞
	3.6(2.10)	東學首領과合議政治	일본 警部の 질문, 전봉준이 임금의 곁을 깨끗이 한 후에, 여러 명의 명사에 의한 합의법 주장	大阪朝日新聞
3.7(2.11)	3.7(음 2.11)	再招問目	봉기 과정 및 주도층, 조직에 대한 심층 심문(問 再次起包 因日兵犯關之故再舉云 再舉之後 於日兵欲行何舉措耶 ; 供 欲詰問犯關緣由)	전봉준공초
	3.9(2.13)		동학당 거괴 전녹두, 일본영사관에 구치병 요양, 금일 법무아문으로 인도된다는 설, 우치다(內田) 경성영사도 배심.	大阪朝日新聞, 東京朝日新聞
	3.12(2.16)		一昨日寫眞師村上文眞氏, 天祐俠의 巨魁 田中次郎, 전봉준이 법무아문에 인도되어 영사관을 나오는 장면	大阪毎日新聞
3.15(2.19)	3.15(음 2.19)	三招問目	대원군과의 관련성 집중 심문	전봉준공초
3.15(2.19)	3.15(음 2.19)	五次問目-日領事問	2차 봉기의 발발 배경과 동기 질문	전봉준공초
	3.16(2.20)	전녹두의 심문	동도대괴 전녹두의 심문, 금일 오후 법무아문에서 개시, 우치다 경성영사 회심	大阪毎日新聞
	3.17(음 2.21)	전녹두의 강개	어제 법무아문 심문에서 동도 수령의 大言	大阪朝日新聞
4.1(3.7)	4.1(음 3.7)	四次問目-日領事問	전봉준 추가 질문, 2차 봉기 과정 심문	
4.4(3.10)	4.4(음 3.10)	乙未 3월 10일	흥선대원군 효유문, 밀지 관련	전봉준공초

	3.10)	全捧準 五次問目(領事問)		
	3.29(음 3.4)	전녹두의 처분	전녹두 및 기타 동도 거괴 등의 심문은 대반 종결, 판결 23일 중에 있음(이상 15일 발)	大阪朝日新聞
4.23(양)	3.29	판결 선고	전봉준 등 21명의 농민군 지도자 최종 판결, “軍服騎馬作變官門者 不待施斬” 사형 선고	판결선고서
4.23(양)	5.7(4.13)	東學黨巨魁의裁判	朝鮮時事(四月二十三日) 京城 靑山好惠, 동학당 대거괴 전녹두, 성두한 이하 21명 심문 완결, 금일 오후 3시부터 권설재판소 법정에서 선고함.	東京朝日新聞
4.24(양)	5.8(4.14)	東學黨巨魁宣告餘聞	작일 법무참의 장박과 전녹두의 선고 이후 논쟁	東京朝日新聞
4.24(양)	4.27(4.3)	去二十四日京城發の電報(3.30)	전봉준 등 지도자 5명 처형	大阪毎日新聞

위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심문은 처음부터 일본군의 지휘아래 이루어져 있었으며, 조선주재 일본공사관 및 영사관에서 주도하였고, 이후 법무아문의 심문과정에서도 이들이 회심(會審) 등을 이용하여 간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들의 압송과 심문에 대한 방침으로는 “一. 이름 있는 거괴(巨魁)는 모두 경성(京城)에 호송할 것”을 주장하였으며,⁵³⁾ 일본 영사는 매번 심문과 재판 과정에 간여하였다. 또한 위의 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봉준 등 동학지도자의 재판이 당시 일본 신문에 날짜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뒤늦게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군의 보도통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⁵⁴⁾

한편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당하고 나서 수감된 곳은 서울 남산 아래 있었던 일본 영사관이었다.⁵⁵⁾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메자마시 신문』(391호 제5면에 게재된 ‘특파 사진사 무라카미 덴신(村上天眞)’의 경성단신(京城短信, 3월 2일발 기사) 중 「전봉준(全捧準-全捧準)을 촬영함」이라는 기사에 실려있다.

한때 전라도 지방에서 창궐했던 동학당 중의 수괴 전봉준, 최경선, 손화중을 비롯한 기타 6명을 일본군이 호송해 왔다. 우리 영사관에서 일단 취조를 마치고 지난 27일 법무대신에게 인도하였다. 수괴 전봉준 및 최경선 두 명은 다

5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권, <東學徒 幹部의 체포 보고 및 처분 件(2)>(1895.4.13.), 참조.

54) 井上祐子, 2012. 『日清・日露戦争と寫眞報道』吉川弘文館, 28~83쪽, 참조.

55) 전봉준은 일본영사관 순사청에 수감된 사실은 이이화, 위의 책(2014), 223~224쪽, 참조.

<그림 2> 전봉준 관련 사진 및 삽화 그림



원본크기 11×15cm, 촬영자 무라카미 덴신(村上天真) 1895년 2월 27일(『写真画報』 제 14권, 春陽堂, 1895년 5월, 金文子の 책, 311쪽, 재인용)



「압송당하는 전봉준」(『오사카매일신문』 1895년 3월 12일 제3면, 金文子, 2011, 『한국사연구』 154, 238쪽 재인용)

리에 중상을 입어 신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영사는 의사를 불러 세심하게 치료를 시켰고, 법무아문에 회송하는데 가마에 태우고 호송했다. (중략) 봉준은 전라도 태인의 평범한 농민, 올해 40세, 평생 동안 학문을 좋아하고 공맹의 가르침을 믿었으며, 동학도의 무리에 들어온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항상 말하기를, 현재 조선인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통일됨이 없고 관리의 횡포도 바로잡지 못했다. 그런데 동학당의 교리는 자기를 바르게 하여 타인에게 미치게 하고 인민의 협동일치를 주로 하며, 인심을 바르게 하고 서리들의 폐단을 제거하여 왕성하게 우리 당의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가 동학당에 가입한 초지(初志)였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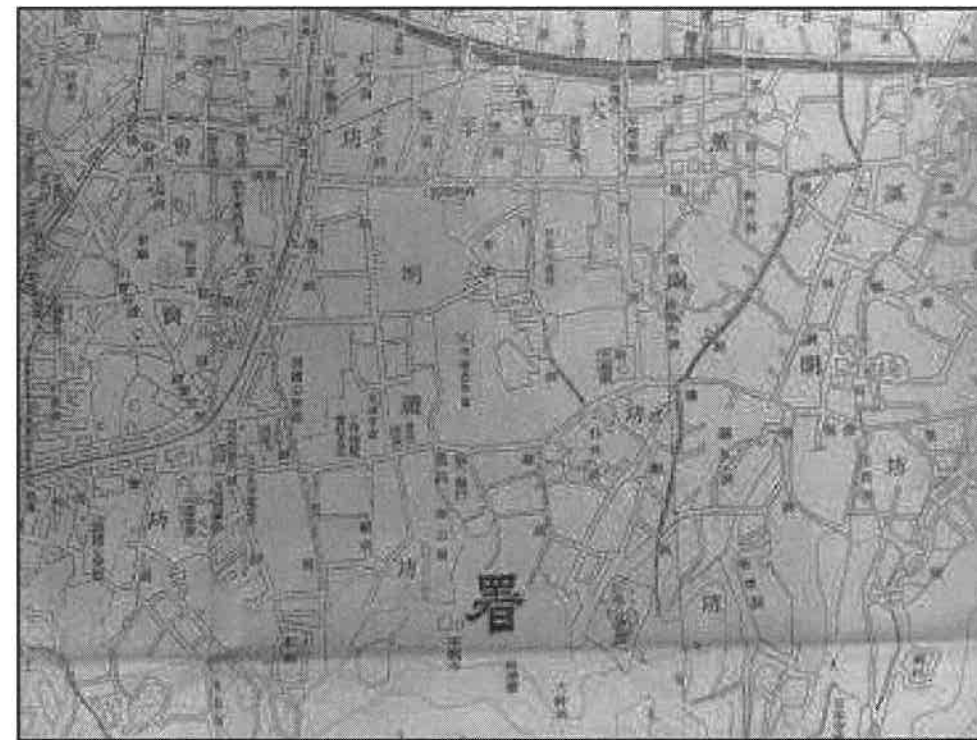
전봉준은 일본영사관 구내의 감옥에 갇혀 우치다 사다즈치 영사의 조사를 받은 후, 1895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 조선정부가 보낸 순사대에 호송되어 일본영사관에서 조선의 법무아문으로 인도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전봉준을 심문하였던 장소인 일본영사관과 법무아문은 서울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림 3>은 1903년 경부철도주식회사에서 만든 지도인데, 하단에 남산 아래 일본공사관과 함께 일본영사관과 함께 일본경찰서가 표시되어 있다.⁵⁷⁾

56) 김문자,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 태학사, 2010, 번역본, 381~382쪽, 참조.

57) 전봉준이 수감된 일본 영사관에는 내부에 감옥 시설이 새로 마련되어 있었다. 1894년 9월 21일 일본은 재조선국 경성영사관 부속 감옥서 감방을 신축하는 경비를 마련하고 있었다(『在朝鮮国京城領事館附屬監獄署監房新築費ヲ国库剩余金ヨリ支出ス』(1894.9.21., 大藏大臣 渡邊国武=>内閣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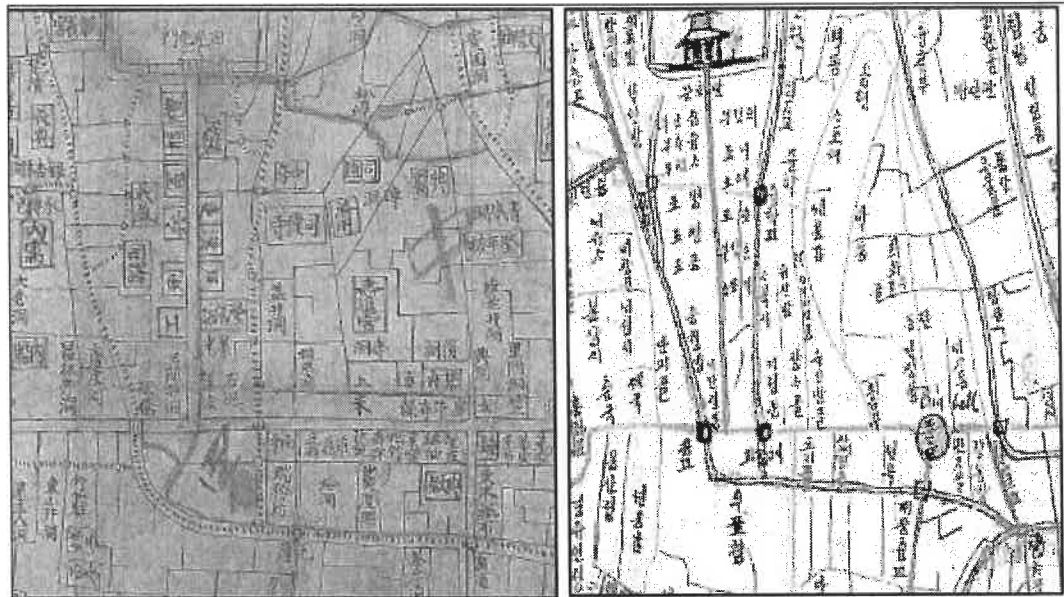
<그림 3> 한국경성전도(1903년 5월, 경부철도주식회사)

그렇지만 이 지도상에 나타난 일본영사관의 위치는 1896년 영사관 이전 이후의 것이다. 1894년 당시 경성영사관과 부속 건물을 부록의 [참고자료 2]와 같이 일본공사관의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법무아문의 권설재판소는 기록상으로 갑오개혁 이후 법률의 처결을 담당하는 법무아문이 세워지고, 법무아문의 재판권을 종래 의금부에서 행하는 것으로 준용하여 해 관사를 개명하여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라고 하였다.⁵⁸⁾ 이를 근거로 한다면 아래의 「수선전도」 중에서 종로의 종각을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지역으로 금부(禁府)로 표시되어 시전(市典)의 위쪽에 있으며, 반대편으로 시전 아래에 위치한 전옥(典獄)이 저전(苧典)의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理大臣 伊藤博文)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자료, 참조.

58) “法務衙門 啓言에 따라 地方裁判外의 法務衙門의 一切 裁判權은 義禁司(義禁府, 1894년 7월 12일 의금사로 개칭)에서 行하며 該司를 改名하여 法務衙門權設裁判所라 하고 諸般 裁判은 모두 該所에서 行하게 하다. 또한 刑具中 酷刑具는 死罪를 犯한 外에는 許하지 못하게 하며 刑에는 笞, 囚人에는 枷鎖, 盜賊 및 傷人 衝火等 罪에는 枷, 輕重罪를 無論하고 咀吐를 承款치 않는 자에는 笞를 사용한다. 輕罪 및 老弱者는 枷鎖를 사용치 못하며 만일 逃逸의 염려가 있는 자는 此限에 不在한 다. 京外 各營·各邑·各鎭의 用刑도 一律적으로 이 例를 준수하여 조금도 異同해서는 안된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高宗 31年 12月 16日, 『일성록(日省錄)』 高宗 31年 12月 16日, 『고종실록(高宗實錄)』 高宗 31年 12月 16日, 『관보(官報)』 開國 503年 12月 16日, 참조).



<지도 1> 조선경성도(19세기 중기, 서울시종합자료실 소장)

<지도 2> 수선전도(1892년경,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1894년 전후 서울의 지도에 입각할 때,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남산 아래 일본 영사관 및 영사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후 1895년 2월 27일에 법무아문의 권설재판소가 있는 옛 의금부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전봉준의 정치 구상과 관련해서는 2개의 기사가 주목된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大阪朝日新聞)』 3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일본 영사관에서 이루어진 심문 중간에 일본 경부(警部)가 “네가 경성(京城)에 공격하여 들어온 후에 누구를 추대하려고 하였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전봉준은 “일본군을 배격하고, 악간(惡奸)의 관리를 축출하고 임금 주변을 깨끗이 한 후에 주석(柱石)의 사를 세워 정치를 담당케 하고 우리들은 바로 전사(田畠)로 돌아가 농부가 되는 것이고, 더욱 국사(國事)를 거론하면 일인의 세력가에게 위임하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고로 여러 명의 명사(名士)의 합의법(合議法)에 의하여 정치를 맡게 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⁵⁹⁾

또한 5월 8일자 『도쿄 아사히 신문(東京朝日新聞)』 「동학당서괴선고여문(東學黨巨魁宣告餘聞)」이라는 기사에서는 법무아문 참의 장박이 전봉준에게 “너

59) 『오사카 아사히 신문(大阪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참조.

희의 금일 죽음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네가 전라도에서 한 번 일어나자 일변하여 일청의 전쟁이 되고 이것으로 연하여 우리나라 대개혁이 되었다. 너희가 소위 탐관오리 민영준 등도 혹은 체포하여 국법에 처하거나 혹은 도망하여 그 족적을 숨기고 있다. 금일에는 공명한 정사를 촉진한 것이므로 너희의 죽음으로써 금일의 공명한 정사를 촉구하였다.”고 하였다.⁶⁰⁾ 친일 관료인 장박은 전봉준의 의도에 따라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하면서 갑오정권의 일본 의존 행태와 개혁정책을 합리화하였다.

그런데 위의 기사는 1895년 4월 24일(음력 3월 30일) 경성에서 청산호혜(靑山好惠)의 기사로서 전날인 5월 7일 <동학당 거괴의 재판>에 이은 연재기사이다. 실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행한 전봉준 등에 대한 선고일은 3월 29일이므로 선고일 다음날에 송고한 기사이다. 이 기사는 매우 이래적으로 빠르게 전달된 것이지만, 물론 신문에서는 전봉준 사형에 관한 기사는 없다. 전봉준 등의 사형일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 신문에서만 특보로 전하고 있다.⁶¹⁾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1895년 4월 신식 재판소 제도의 실시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오정권과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3월 30일 동학농민군 지도자 5명을 전격적으로 처형해 버렸다는 사실이다.⁶²⁾ 이러한 농민군 지도자의 처형조처는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반민중적, 친일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일본이 농민군의 처형과 법률적 처단의 공동 법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 『東京朝日新聞』 <東學黨巨魁宣告餘聞>(1895년 5월 8일(4.14)), 참조.

61) “全瑋準等の死刑 지난 二十四日 京城發의 電報에 의하면, 東學黨의 巨魁 全瑋準 외 5명은 어제 밤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大阪毎日新聞』 1895년 4월 27일(4월 3일) 기사, 참조).

62) 왕현종, 2003, 앞의 책, 398~399쪽; 이이화, 2014, 앞의 책, 235~242쪽.

5. 맺음말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19세기말 국가적 위기와 민중 생활의 도탄을 구제하고자 거대한 혁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1893년 교조신원운동시기부터 정치 개혁의 최종 목표를 조선정부의 개혁에 두고 있었으므로 수도인 서울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1893년 2월 북합상소나 외국공관 계시운동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방법에 이르지 못하고 일부 무장세력의 무력 진출의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곧이어 보국안민의 이념으로의 결집이나 지역간 연계나 동학도들과의 결합을 통해 민중들의 세몰이에 나서게 되었다.

서울로 쳐올라가는 구상은 이미 1894년 1월 고부민란 직전에 천명되었으며, 1차 농민전쟁 시기에도 시종일관하였지만, 5월 전주화약의 체결에서 보이듯이 실현하지 못했다. 1894년 6월 이후 일본에 의한 왕궁 점령과 개화정책 및 청일전쟁의 수행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되자 전봉준 등 지도자들은 9월에서야 직접적인 서울 진공을 목표로 재봉기하게 되었다.

2차 봉기의 최종 목표인 서울에 진격하여 국와의 주위를 깨끗이하고 주석의 선비들로 정치를 담당케 한다는 구상은 1894년 11월 중순 공주전투의 패배로 물거품이 되었다. 그렇지만 1895년 1월이후 심문과 재판과정에서 전봉준 등은 끝까지 자신들의 창익과 정치 구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이 수감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장소, 즉 일본 공사관 영사관 등과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와 포도청, 전옥 등은 피어린 최후의 항거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그곳에 전봉준 장군과 지도자들을 추모하는 조형물을 세워 기념한다는 것은 그들의 투쟁을 되새겨 1894년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못다한 한과 꿈을 풀어내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 주요 참고 자료

- 『承政院日記』
- 『日省錄』
- 『駐韓日本公使館記錄(6~8)』 국사편찬위원회
- 黃玪, 『梧下記問』(원본), (김종익 번역,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역사비평사, 2016)
- 吳知泳 『東學史』, 초고본(1926), 영창서관(1940)
- 「全琫準供招」 『동학란기록(하)』, 국사편찬위원회, 1971
- 『東學關聯判決文集』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1994
- 동학농민전쟁백주년추진위원회,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1~30)』사운연구소, 1996
- 「東學黨大巨魁と其口供」 『東京朝日新聞』1895.3.5.
- 「東學首領と合議政治」 『東京朝日新聞』1895.3.6.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20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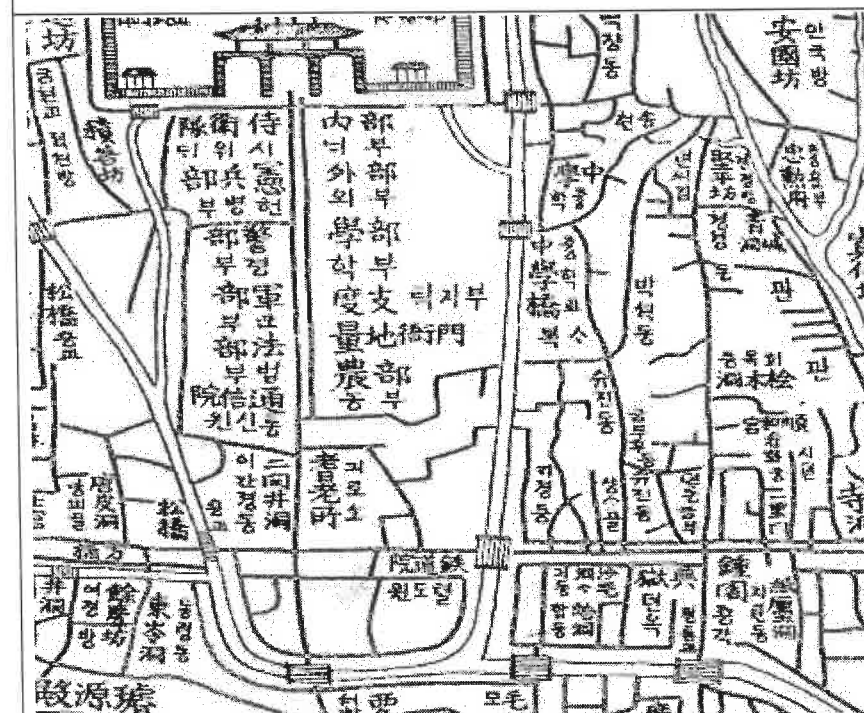
<지도 자료>

- 「朝鮮京城圖」(19세기 중기, 서울시종합자료실 소장)
- 「首善全圖」(1892년경,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 「首善全圖」(1864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漢城府地圖」(1900년경, 量地衙門 작성지도)
- 「最新京城全圖」(1907년 3월, 日韓書房)
- 「韓國京城全圖」(1903년 5월, 경부철도주식회사)

[참고자료 1 - 한성부 지도 자료에 나타난 재판 관련 장소]



<지도 3> 수선전도(186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지도 4> 한성부지도(1900년경, 양지아문 작성지도)



<지도 5> 최신경성전도(1907)

[참고자료 2- 한성부 지도에 표시된 일본 공사관·영사관 장소]



<지도 6> 1894년 일본 거류지 주요 시설(배경 지도는 1907년 최신경성전도)



- 초기 영사관(1885)



- 신축된 경성영사관(1896)

출전 :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 시공문화사, 2015, 69쪽, 265~266쪽.

[참고 자료 3 - 동학농민군 재판 판결 상황]

<표 2> 동학농민군의 재판 판결 상황(1)(1894.3.2.~1895.11.6.)

번호	인명	지역	직위	나이	판결일(음력)	조문	처분	비고
1	全琇準	전라도 태인	농업, 평민	41	1894.3.29.	大典會通 刑典	死 刑	37호
2	孫化仲	전라도 정읍	농업, 평민	35	1894.3.29.	大典會通 刑典	死 刑	36호
3	金德明	전라도 금구	농업, 평민	51	1894.3.	大典會通 推斷條	死 刑	20호
4	崔慶宣(永昌)	전라도 태인	농업, 평민	37	1894.3.29.	大典會通 刑典	死 刑	35호
5	成斗漢	충청도 청풍	농업, 평민	48	1895.3.	大典會通 推斷條	死 刑	19호
6	金昌奎	경상도 순흥	농업, 평민	71	1895.3.	大明律 賊盜篇	杖一百, 流三千里	23호
7	金榮鎭	충청도 청풍	농업, 평민	33	1895.3.	大明律 賊盜篇	杖一百, 流三千里	21호
8	孫海昌	충청도 영동	농업, 평민	26	1895.3.	大典會通 推斷條	杖一百, 流三千里	13호
9	張景賢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45	1895.3.	大明律 雜犯編	杖八十	14호
10	洪樂寬	전라도 고창	농업, 평민	46	1895.3.	大典會通 推斷條	杖一百, 流三千里	15호
11	林載洙	충청도 단양	농업, 평민	74	1895.3.	大明律 賊盜篇	杖一百, 流三千里	22호
12	金順永	충청도 청산	농업, 평민	72	1895.3.	大明律 賊盜篇	杖一百, 徒三年	24호
13	柳濟寬	경성 정동	여산부사	49	1895.3.	大明律 受贓篇	杖六十	25호
14	權豐植	경기도 여주	함평현감	36	1895.3.	大明律 公式編	杖一百	26호
15	閔選鎬	충청도 청주	전참봉	35	1895.3.	大明律 賊盜篇	杖一百, 徒三年	27호
16	安昶恒	충청도 영춘	농업, 평민	57	1895.3.	大明律 妖書妖言條	杖一百, 徒三年	28호
17	朴鳳陽	전라도 운봉	전참모관	59	1895.3.	大明律 軍政編	杖六十	29호
18	白樂仲	전라도 운봉	전참모관	42	1895.3.	大明律 軍政編	杖六十	30호
19	申禎燁	경성 장동	내관	49	1895.3.	大典會通 推斷條 亂言	杖一百, 流三千里	32호
20	趙明云	충청도 천안	농업, 평민	42	1895.3.	大明律 人命編	杖一百, 流三千里	33호
21	金致先	충청도 천안	농업, 평민	49	1895.3.	大明律 人命編	杖一百, 流三千里	33호
22	金桂甫	경기도 광주	농업, 평민	60	1894.4.	大明律 雜犯編	杖八十	41호
23	金桂元	강원도 인제	농업, 평민	63	1895.4.10.	大明律 祭祀編	杖一百, 流三千里	44호
24	成雲漢	충청도 청풍	농업, 평민	34	1895.4.10.	大典會通 推斷條	杖一百, 流三千里	45호
25	成鍾禹	충청도 영춘	농업, 평민	49	1895.4.10.	大典會通 推斷條	杖一百, 流三千里	46호
26	許運	충청도 진천	유업, 평민	53	1895.4.10.	大典會通 禁制條	杖一百, 流三千里	48호
27	鄭玉成	경기도 여주		27	1895.4.10.	大明律 雜犯編	杖八十	60호
28	李埈鎔 외 21	한성부 교동		26	1895.4.19.	賊徒律 謀反罪	絞, 1등 減 流終身	
29	任基準	충청도 공주	농민	44	1895.윤5.2 4	大明律 禁止師巫邪術條	笞一百, 流二千五百里	제4호
30	沈宜平	한성부 장동	재령군수	60	1895.윤5.2 4	大明律 制書有違條	笞一百, 私罪收贖	제5호
31	黃河一	충청도 보은	농민	50	1895.윤5.2 4	大明律 妖書妖言條	杖一百, 徒三年	제9호
32	白樂亨	한성부 남부	한산군수		1895.11.6.	大明律 出入人罪條	杖一百, 徒一年	제26호

<표 3> 동학농민군의 재판 판결 상황(2)(1894.3.2.~1895.11.6.)

번호	인명	지역	직위	나이	판결일(음력)	조문	처분	비고
33	韓達仲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33	1895.3.2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1호
34	韓永化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38	1895.3.2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1호
35	李鳳俊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45	1895.3.2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1호
36	金永燁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30	1895.3.2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2호
37	李東植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60	1895.3.2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호
38	乃錫謙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20	1895.3.2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호
39	李東番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24	1895.3.2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호
40	金成五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40	1895.3.2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호
41	李善道	황해도 봉산	농업, 평민	30	1895.3.3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4호
42	高順宅	전라도 무장	농업, 평민	38	1895.3.3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5호
43	柳遠奎	경기도 안성	보성군수	46	1895.3.10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6호
44	金明中	전라도 부안	농업, 평민	35	1895.3.2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7호
45	朴泰吉	전라도 보성	농업, 평민	45	1895.3.2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8호
46	金汝中	전라도 부안	농업, 평민	38	1895.3.2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9호
47	李邦彦	전라도 장흥	농업, 평민	58	1895.3.2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10호
48	金邦瑞	전라도 금구	농업, 평민	28	1895.3.2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11호
49	徐相祐 외 55명	황해도 장연	농업, 평민		1895.3.28	동도가 아닌 양민	特示	12호
50	韓延洙	충청도 목천	농업, 평민	39	1895.3.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1호
51	延淳達	경기도 광주	농업, 평민	32	1895.4.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8호
52	延申辰	경기도 광주	농업, 평민	32	1895.4.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8호
53	金文達	경기도 광주	농업, 평민	24	1895.4.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8호
54	朴仁學	경기도 광주	농업, 평민	29	1895.4.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9호
55	李永五	경기도 광주	농업, 평민	59	1895.4.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9호
56	金基淵	경기도 광주	농업, 평민	46	1895.4.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9호
57	金富萬	경기도 광주	농업, 평민	53	1895.4.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39호
58	文在三	경기도 용인	농업, 평민	44	1895.4.1.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40호
59	金用濂	충청도 청풍	下吏	39	1895.4.10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42호
60	黃巨卜	충청도 청풍	농업, 평민	38	1895.4.10	증거불충분	無罪放送	42호
61	洪在吉	충청도 공주	농민	40	1895.윤5.2 4	증거불충분	無罪放免	제8호

역사인물의 동상 제작과 전봉준 장군 동상

신영우(홍북대)

1. 머리말
2. 근대 역사인물의 등상
 - 1) 구미
 - 2) 중국
 - 3) 일본
3. 한국의 주요 동상 설치 사례
4.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
 - 1) 황토현 전주 내장군의 등상
 - 2) 제작 절차
 - 3) 주요 검토 항목
5. 맺는 말

1. 머리말

- 1) 호조장 제작의 역사 - 사람과 자연 표현, 그림 조각, 한필대본
 - 2) 호조장대본의 연립에서 세계 각 지역대본으로 작은 소묘상 제작
 - 3) 미공상, 동물상, 연수화인상 등
 - 4) 조선왕조실록(1395-1453)과 조선시대(1453-1910)의 사가인상
 - 5) 오스트리아 빈 자연사박물관의 '비밀로코요트 하우스'와 그리스 코히아 조각실
- 3) 역사·전통의 통합
- 1) 기념조형물을 일상생활과 공공공간 또는 사적 공간 설치
- 4) 전통을 통한 공공 통합의 의미
- 1) 지도와 전통과 그다 존재를 통해 고려
 - 2) 도시의 역사 - 모든 문화유산과 전통의 전통, 고전과 현대의 전통
- 5) 전통을 통한 도시 질서와 역사성과 재지
- 1) 역사성과 전통을 통해 도시의 질서, 구상
- 6) 전통을 통한 공공 통합의 역사적 가치
- 1) 작가의 전통 - 무형유산 작가와 수작자, 그림 및 조각, 조각
 - 2) 전통을 통한 전통의 전통을 통해 역사적 가치, 주요 사료 속
 - 3) 도시 및 문화유산 - 그림으로 보는 전통조형물(가예) 그림을 제작
 - 4) 전통을 통한 전통의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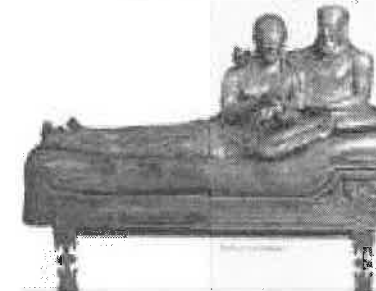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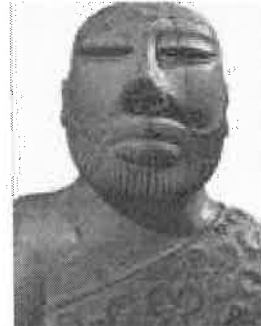
사자인간(Löwenmensch)

말사실탄소연대측정법으로 확인
- 35,000에서 40,000 년 사이

독일 울름 박물관 (Ulm Museum)



청동기 시대 인물상



그리스 조각

로마 황제
마우구스투스
(1세기)
베르사유박물관
석판조각



2. 근대 역사인물의 동상

1) 구미

-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서구의 기념조형물
- 국가주의 발흥과 국가 정체성의 형성 필요
- 기념탑·비석·인물상 등
- 인물 동상 - 도시 내부와 유적지, 상징장소에 건립
 - 민족과 국민 동질성과 긍지
 - 최고의 의미 전달력
- 대상 - 군주·충신·영웅·혁명가·장군

2) 중국

3) 일본

- 구미사절단 - 국민 통합의 필요성 결부
- 신화·전쟁 고취 영웅
- 메이지유신 공로자
- 청일전쟁·러일전쟁 영웅

1) 구미

컬럼버스



1775년 4월 19일, 미국 독립전쟁 최초의 전투
Lexington - American Revolution





패튼장군(1886-1945)



만데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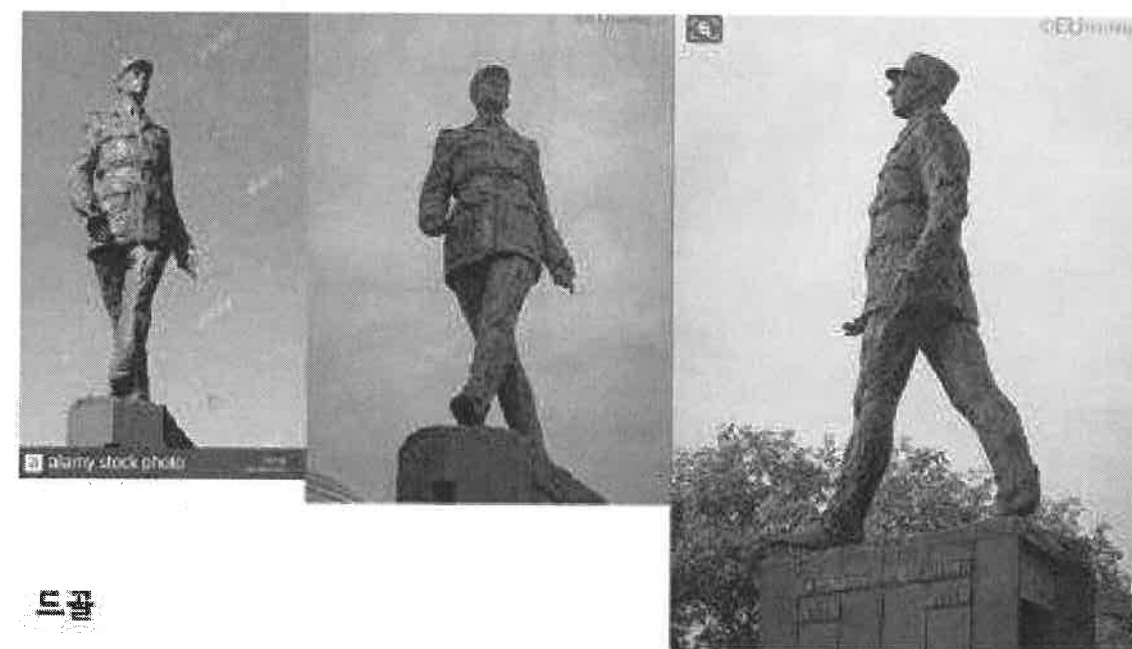




쇼핑
(볼란드 바르샤바
라지엔키 공원)



Statue of Lafayette
Metz,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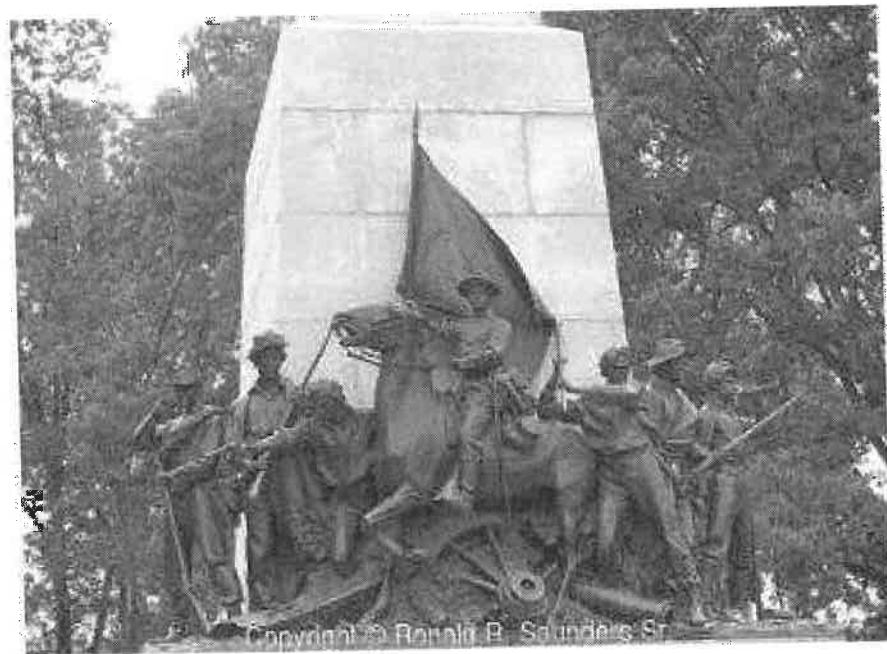


드럼





Auguste Rodin
The Burghers of Calais 1889,
Calais, France
칼레의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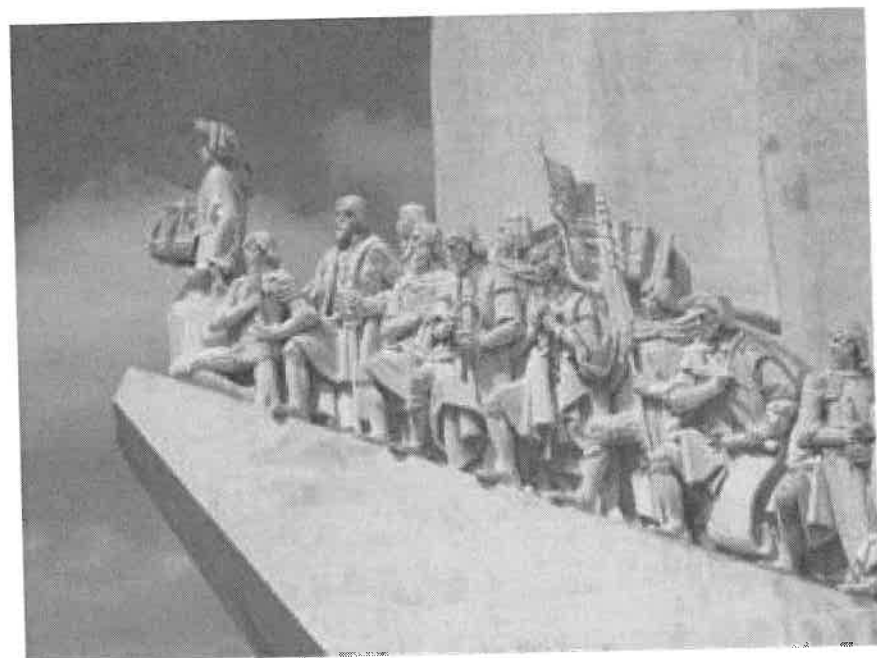
Copyright © Ronald B. Saunders Sr.



Photo by Frank Montagna



해리엇 티브먼(Harriet Tubman, 1820-1913) 노예해방운동가



발견의 시대와 포르
투갈 탐험대(리츠현)



2) 중국
관우 조형물



손문



노먼 베순
의사

(캐나다 스페인
중국)



간다



3) 일본

일본 주요 인물의 동상

- 니노미야 긴지로(二宮金次郎) 전국 1,000개 이상
-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39
-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
- 메이지 천황(明治) 14
- 성덕태자(聖德太子) 14
-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1
-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9
-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9
-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9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7
-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5
- 후쿠자와 유키치(福澤有吉) 5
-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5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학술발표회



야마가타 아리토모(좌)
기도 타카요시(중)
이토 히로부미(우)
(야마가타현 하가시)





3. 한국의 주요
동상 설치 사례
안중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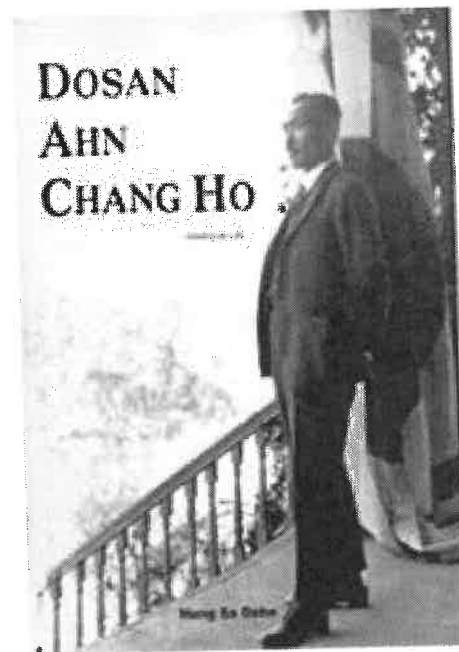


이상재
충묘공원



강무규 의사
(서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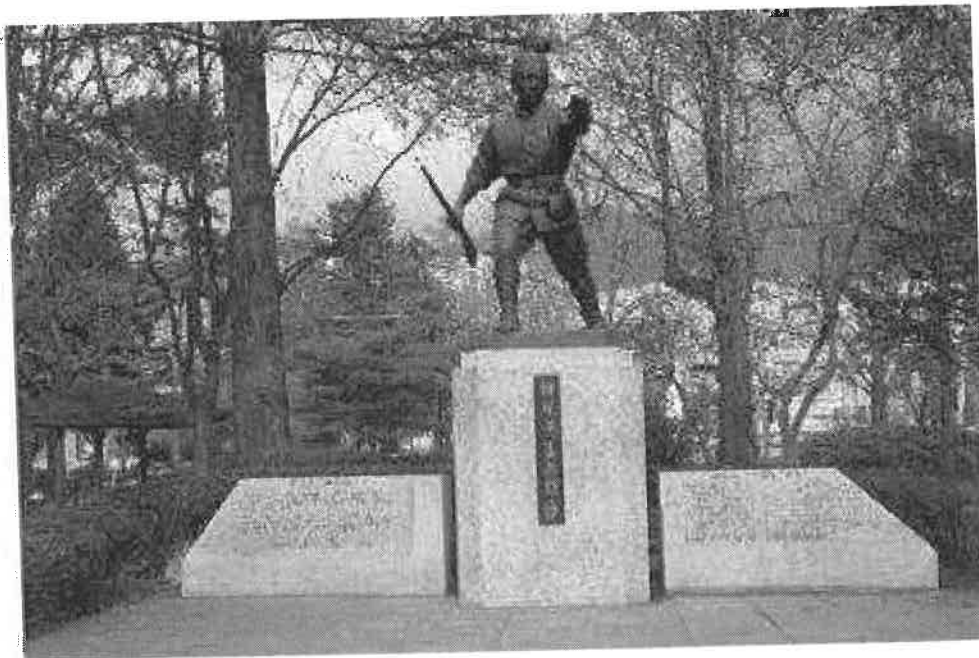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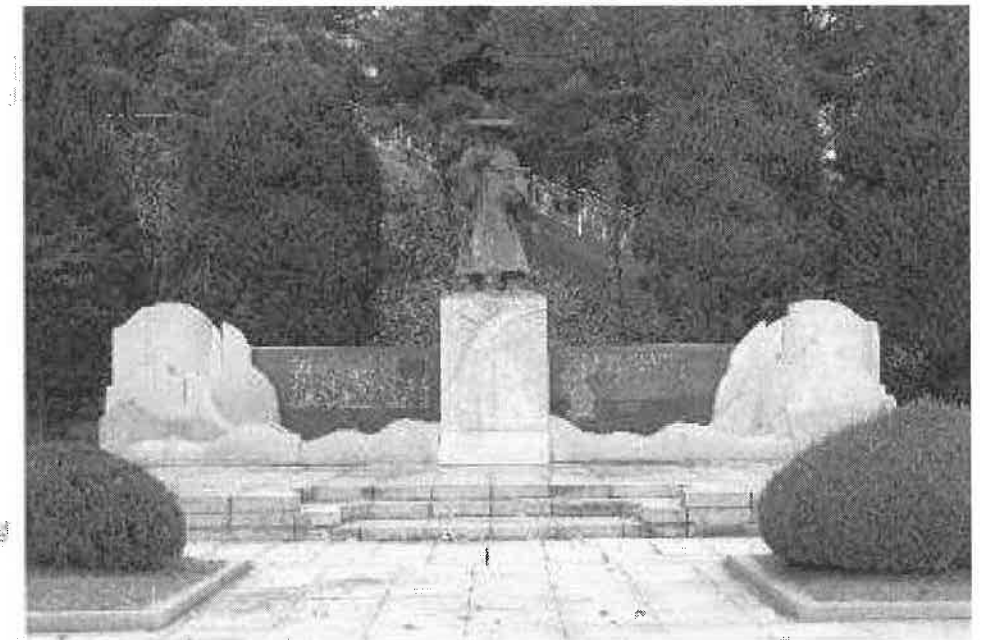
(강남 도산공원)



의병장 안봉준
(제주 삼남공원)



고산자
김정호
(수원 국동지리정
공원)



동학농민군상
(장준익 조각)



역대 대통령
동상
(장남대)





후사경마당(충무공 당주동)



박경리





• 4.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

1) 황토현·전주 덕진공원·내장산의 동상들

- 황토현전적지 : '전봉준 선생상'(1987), 화강암 기단, 높이 2.7m
오른손을 들어올린 모습, 작가 김정승
- 전주 덕진공원 : '전봉준 선생상'(1981)
- 정읍 내장산 : '동학 민중을 이끄는 전봉준 장군'

2) 제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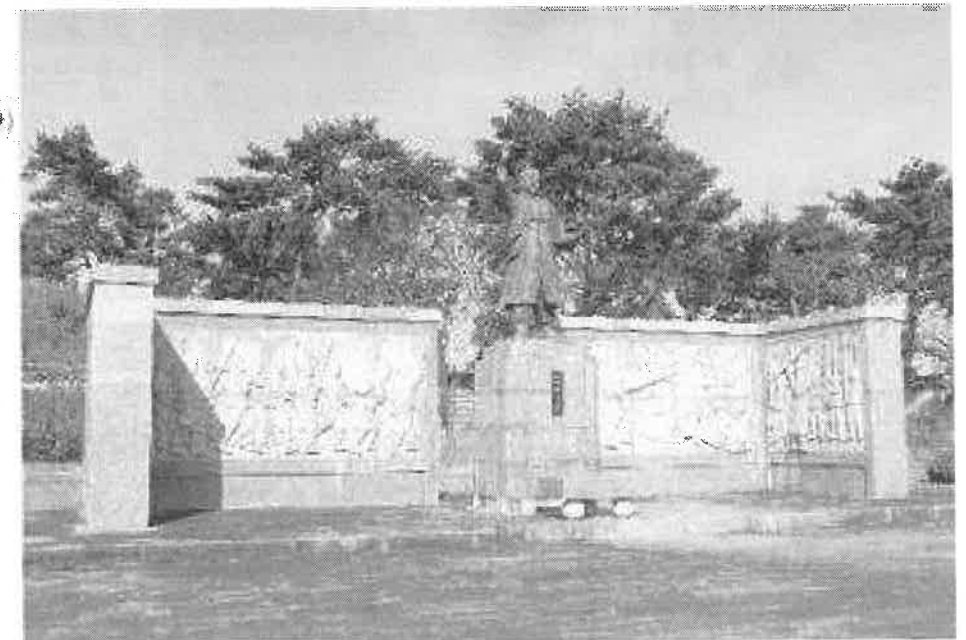
- 작가 선정 - 우선협의 대상자 : 유적지 답사
전봉준 전기와 동학농민혁명 과정 학습 및 주요 사료 숙지
- 만화 제작, 『그림으로 보는 전봉준 장군』(기제), 홍보 및 교육자료
- 동상 모형 제작 및 크기 자세 표현 등 검토
- 설치장소 주변과 조화 검토

3) 주요 검토 항목들

- 기단 재질과 높이 : 화강암, 기단의 크기와 높이 결정
- 동상 크기 : 실물 1.3배 또는 1.5배, 또는 2배
- 동상 표현 : ① 두 손의 위치(올린 모습, 또는 내린 모습)
② 무기 또는 선언서를 든 모습
③ 삼투 차림 또는 갓을 쓴 모습
④ 두루마기
⑤ 선 모습 또는 앉은 모습
⑥ 전봉준 1인 동상, 또는 전봉준과 동지상
⑦ 동시 힘을 받은 5인 지도자 동상
(전봉준과 성두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 부조 표현 : ① 미래의 사회 전망
② 우금치전투 전경
③ 수많은 무명농민군
- 동상 제작 소개 자료

전봉준 장군
동상

(경남 황토현기념관)



전주 덕진공원



경음 내장산



5. 맺는 말

- 전봉준 장군 동상은 역사성 사실성을 토대로 예술성 구현
- 설치장소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돋보이는 형태의 조형물
- 보는 이의 눈높이에 맞는 크기와 높이
- 동학농민군 전체를 상징하고 동시에 명예회복을 상징하는 표현
- 무선탁의 작가 선정 후 '전봉준의 생애'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추적하는 현지 답사와 학습
- 『그림으로 보는 전봉준 장군』(가제)을 작금화할 만화작가와 함께 학습과 답사
- 동상 설치와 의미를 『그림으로 보는 전봉준 장군』으로 홍보
- 『그림으로 보는 전봉준 장군』은 주저별로 제작해서 신문 연재
- 동상 제막식과 함께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주제의 특별강의와 우적답사 진행

부록 1. 전봉준 공초

개국¹⁾ 504년 2월 9일 동도죄인 전봉준 초초 문목²⁾

【開國 五百四年 二月初九日 東徒罪人 全琫準 初招 問目】

문問: 너의 성명^{姓名}이 무엇이나?

공供: 전봉준^{全琫準}이오.

문問: 나이는 몇 살이나?

공供: 마흔 한 살이오.

문問: 어느 고을에 사는가?

공供: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이오.

문問: 생업^{生業}은 무슨 일로 하느냐?

공供: 선비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문問: 오늘은 법무아문^{法務衙門}³⁾ 관원^{官員}하고 일본^{日本} 영사^{領事}⁴⁾가 회동^{會同}하고 심판^{審判}하여 공정^{公正}히 처결^{處決}할 터이니 일일^{一一}이 바른대로 고^告하라.

공供: 일일^{一一}이 바른대로 고^告하겠습니다.

문問: 아까 이미 밝게 타일렸거니와 동학^{東學}의 일은 한 몸에 상관^{相關}한 일이 아니라 곧 국가^{國家}에 크게 관계^{關係}되니 어떤 고등^{高等}⁵⁾에 관계가 있어도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고^告하라.

공供: 그리 하오리다. 가르친 바를 의거^{依據}하려니와 당초^{當初}의 본마음에서 나온 일이니 다른 사람과는 관계^{關係}가 없나이다.

문問: 네가 전라도^{全羅道}의 동학^{東學} 괴수^{魁首}라 하니 과연 그러한가?

공供: 처음 창^倡의^義로써 기포^{起包}⁶⁾하고 동학^{東學} 괴수^{魁首}라 할 것은 없나이다.

문問: 너는 어느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

공供: 전주^{全州} 지역과 논산^{論山} 지역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문問: 작년^{昨年} 3월 동안 고부^{古阜} 등지^{等地}⁷⁾에서 민중^{民衆}을 모두 모았다 하니 어떤 사

1) 개국(開國):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에 따라 중국의 연호(年號) 대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하게 되었다. 곧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조선(朝鮮)을 건국한 해인 1392년을 개국 원년으로 삼아 1894년을 개국 503년으로 표시했다. 전봉준(全琫準)이 재판을 받은 1895년은 개국 504년에 해당된다. 1896년부터는 개국기년 대신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1897년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고 고종(高宗)이 황제(皇帝)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光武)로 바꾸었다.

2) 문목(問目):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이라는 뜻을 지닌 법률용어이다.

3) 법무아문(法務衙門)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사법행정, 경찰업무, 사유(敎育) 따위 법에 관한 업무를 맡은 부서이다. 고등재판소 등 재판소를 감독하기도 했다. 다음해에 법부(法部)로 개편했다.

4) 당시 주한일본영사관(駐韓日本領事館)의 영사(領事)는 우치다 사다츠치 * [内田定修]였다.

5) 고등(高等): 고위 인사를 뜻함. 전봉준과 연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6) 기포(起包): 동학(東學) 조직을 동원한 봉기. 동학(東學)의 포(包)를 일으킴.

7) 전봉준이 주도한 농민봉기(農民蜂起)는 두 차례 이어졌다. 1차는 1894년 음력 1월 10일(양력 2월 15일)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학정에 반대하여 고부민들을 이끌고 봉기한 것이다. 고부민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하여 7일간 머문 뒤 말목장터로 이동하였다가 2월 25일 백산으로 이동하여 주둔하

연事緣으로 그리 하였노?

공供: 그때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정액正額 外外에 가혹苛酷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몇 만 냥인 고로 민심民心이 원통冤痛하고 한恨스러워 이 거사舉事가 있었나이다.

문問: 비록 탐관오리貪官汚吏라 일컫더라도 명색名色⁸⁾이 반드시 있는 연후의 일이니 상세詳細히 말하라.

공供: 지금 그 세세細細한 조목條目을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대개大概를 대략大略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湊⁹⁾ 아래에 보湊를 쌓고 녹정勒政¹⁰⁾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답上畝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답下畝은 한 두락斗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요, 진황지陳荒地¹¹⁾를 백성百姓에게 갈아먹기를 허가하여 관가官家로 문권文券하여 징세徵稅를 안한다더니 추수秋收할 때에 미치어 강제로 징수한 일이고, 하나는 부민富民에게 녹탈勒奪한 엽전葉錢이 2만 여 냥兩이요, 하나는 그 아비가 일찍이 태인泰仁 수령守令을 지낸 연고로 그 아비를 위하여 비각碑閣을 세운다고 알리고 녹렴勒斂한 돈이 천여 냥兩이요, 하나는 대동米大同米¹²⁾를 민간民間에서 징수徵收하기는 정백米精白米¹³⁾로 16두斗씩 준가準價로 수렴收斂하고 상납上納¹⁴⁾은 추미麴米¹⁵⁾를 사서 이익利益을 모조리 먹은 일이고, 이 밖에 허다許多한 조건條件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지금 고한 바 중에 2만여 냥兩의 녹탈勒奪한 돈은 어떤 명목名目으로 행하였느냐?

공供: 불효不孝, 불목不睦, 음행淫行 및 잡기雜技 등의 일로써 죄목罪目을 구성構成하여 행함인 오이다.

문問: 이러한 일은 한 곳에서 행하였느냐, 또한 각처各處에서 행하였느냐?

공供: 이러한 일은 한 곳에 그침이 아니요 수십數十 곳이 되옵니다.

문問: 수십 곳이 된다면 그 중에 혹 이름을 아는 자가 있느냐?

공供: 지금 성명姓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이 밖에는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지금 진술陳述한 사건事件이 다 민간民間에 탐학貪虐한 일일뿐더러 보湊를 쌓을 때 남의 산山에서 수백數百 년 된 구목邱木¹⁶⁾를 강제로 도끼로 찍어내고 보湊를 쌓는

다가 3월 초에 해산하였다. 2차는 1894년 3월 20일(양력 4월 25일) 전라도 무장(茂長)에 집결한 농민군과 함께 『포고문(布告文)』을 발포한 뒤 고부, 부안 등지로 진출하여 황토현 전투를 벌이는 등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8) 명색(名色): 명목.

9) 민보(民湊): 민간 인력을 동원해 쌓은 보. 당시 배들평 *〔梨坪〕* 아래에는 만석보(萬石湫)가 있었는데 이를 가리킨다. 현재 만석보가 있던 자리 옆의 강둑에 “만석보유지비(萬石湫遺址碑)”가 세워져 있다.

10) 녹정(勒政): 녹정(勒定). 강제로 액수를 정함

11) 진황지(陳荒地): 황무지와 같은 말로 곡식을 심지 않은 묵은 밭. 진황지로 지정되면 곡식을 심더라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12) 대동미(大同米): 지방에서 특산물로 바치는 여러 공물(貢物)을 쌀이나 면포, 돈으로 통일해 대신 바치게 한 부세법으로 1608년에 시작되어 1708년에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13) 정백미(精白米): 도정을 잘한 쌀.

14) 상납(上納): 나라에 바침.

15) 추미(麴米): 조잡한 쌀.

16) 구목(邱木): 무덤가의 나무.

일에 민정民丁을 1전錢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나이다.

문問: 고부古阜 수령守令의 성명姓名은 누구오?

공供: 조병갑趙秉甲입니다.

문問: 이러한 탐학貪虐한 일은 고부古阜 수령守令에만 그쳤느냐, 혹은 이속배吏屬輩의 작간作奸¹⁷⁾은 없느냐?

공供: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홀로 행하였나이다.

문問: 네가 태인泰仁 땅에 거주居住하였다는데 무슨 연고로 고부古阜에서 기노起鬧¹⁸⁾하였느냐?

공供: 태인泰仁에 거주居住하다가 고부古阜에 이주移住한지 수년數年 되나이다.

문問: 그렇다면 고부古阜에 맡길 집이 있느냐?

공供: 불에 타 잣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¹⁹⁾

문問: 너는 그때에 녹징勒徵한 피해被害가 없느냐?

공供: 없습니다.

문問: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강제로 빼앗긴 해害를 다 입었는데 너 홀로 없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학구學究로 업業을 삼아 전답田畝이라 하는 것이 3두락斗落 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문問: 너의 가족家屬은 몇 명이고?

공供: 가족家屬이 합하여 6명입니다.

문問: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다 강제로 빼앗긴 해害를 입었는데 너 홀로 없다는 것은 진실로 아혹誣惑²⁰⁾하다.

공供: 이 몸[矢身]²¹⁾은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粥을 먹을 뿐이니 강제로 빼앗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문問: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도임到任한 것은 몇 년 몇 월이고?

공供: 재작年再昨年 동지달^{11월}과 설달^{12월} 두 달 사이입니다.

문問: 도임到任이 정확하게 몇 월이고?

공供: 상세詳細하지 않으나 기거起居한 해가 1주년周年은 되나이다.

문問: 도임到任한 처음부터 학정虐政을 즉시即時 행하였느냐?

공供: 처음부터 행하였나이다.

문問: 학정虐政을 처음부터 행하였다면 무슨 연고로 즉시即時 기노起鬧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한 지경地境의 인민人民이 참고 또 참다가 종말終末에는 부득이不得已하여 행함입니다.

문問: 너는 해害를 입음이 없는데 기노起鬧는 무슨 까닭이오?

공供: 일신一身의 해害를 위하여 기포起包²²⁾함이 어찌 남자男子의 일이 되리요. 중민衆民이

17) 작간(作奸): 나쁜 짓을 행함.

18) 기노(起鬧): 소요를 일으킴.

19) 조정에서는 고부농민봉기의 수습책으로 고부군수에는 박원명(朴源明), 그 조사를 맡을 안핵사(按覈使)로는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를 임명했는데 이용태는 죄인을 잡아들인다는 명분을 내걸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다. 전봉준의 주택도 이때 불에 탔음을 말한다.

20) 아혹(誣惑): 괴이하고 의심스럽다.

21) 이 몸: 의신(矢身). ‘나 자신’을 가리킨다.

원통(冤痛)하고 한탄(恨歎)하는 까닭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害)를 제거하고자 함입니다.

문問: 기포(起包)할 때에 네가 어찌 주모(主謀)가 되었느냐?

공供: 중민(衆民)이 다 이 몸을 추대(推戴)하여 주모(主謀)하라 하기에 백성의 말을 의거(依據)함입니다.

문問: 중민(衆民)이 너로 주모(主謀)하라 할 때에 너의 집에 이르렀느냐?

공供: 중민(衆民) 수천(數千) 명이 이 몸의 집 근처(近處)에 모두 모인 고로 자연(自然)이 된 일이올시다.

문問: 수천(數千)명 중민(衆民)이 무슨 까닭으로 너를 추대(推戴)하여 주모(主謀)하게 하였느냐?

공供: 중민(衆民)이 비록 수천(數千) 명이라고 일컬으나 모두 우준(愚蠢²³)한 농민(農民)이요 이 몸은 문자(文字)를 거칠게나마 해득(解得)하는 연고(緣故)입니다.

문問: 네가 고부(古阜)에 와서 접했(接)을 때 동학(東學)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이 몸이 여간(如干)의 동몽(童蒙)을 훈도(訓導)하고 동학(東學)은 가르친 일이 없나이다.²⁴⁾

문問: 고부(古阜) 땅에는 동학(東學)이 없느냐?

공供: 동학(東學)도 있나이다.

문問: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할 때 동학(東學)이 많았느냐, 원민(冤民²⁵)이 많았느냐?

공供: 기포(起包)할 때에 원민(冤民)이며 동학(東學)이 합하였사오나 동학(東學)은 적고 원민(冤民)은 많았나이다.

문問: 기포(起包)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기포(起包)한 뒤에 진황능징세(陳荒勒徵稅²⁶)를 환추(還推²⁷)하고 관가(官家)에서 보(俸)를 쌓은 것을 훼파(毀破)하였나이다.

문問: 그 때는 어느 때오?

공供: 작년(昨年) 3월 초순입니다.

문問: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그 뒤에는 산락(散落)하였나이다.

문問: 산락(散落)한 뒤에는 무슨 일로 인하여 다시 기포(起包)하였느냐?

공供: 그 뒤에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가 안핵사(按覈使)로 본 고을에 와서 기포(起包)한 인민(人民)을 동학(東學)이라 통칭(通稱)하고 이름을 열거하여 포착(捕捉)하며 그 가사(家舍)를 태워 버리며 당사자(當事者)가 하면 처자(妻子)를 체포(逮捕)하여 살육(殺戮)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起包)하였나이다.

문問: 그렇다면 너희가 처음부터 관정(官庭)에 일차(一次)로 소장(訴狀)을 내지도 아니하여 보았느냐?

22) 기포(起包): 동학(東學)의 포(包)를 일으킴.

23) 우준(愚蠢): 어리석다

24) 전봉준은 고부 조소마을에서 서당을 열고 글을 가르쳤으나 동학의 포교에는 나서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25) 원민(冤民): 원민은 원통한 백성의 뜻인데 허균은 『호민론(豪民論)』에서 원망에 찬 백성의 뜻으로 원민(怨民)이라 표현했다.

26) 진황능징세(陳荒勒徵稅): 원래는 면세지인 묵밭에서 불법과 강제로 징수한 전세(田稅). 법정의 조세 용어는 아니나 사실상 전세(田稅)와 마찬가지로 여겨 능징세라 일컬어졌다.

27) 환추(還推): 남에게 빌려준 논밭이나 물건을 도로 되찾거나 받아냄

공供: 처음에는 40여 명이 등소(等訴²⁸)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재차(再次) 등소(等訴)하다가 60여 명이 쫓겨났습니다.

문問: 등소(等訴)는 어느 때이고?

공供: 처음 번은 재작년(再昨年) 11월이요, 두 번째는 같은 해 12월이요.

문問: 재차(再次) 기포(起包)는 안핵사(按覈使)로 말미암았으며 네가 주모(主謀)하였느냐?

공供: 그러합니다.

문問: 재차(再次) 기포(起包)한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감영군(監營軍) 만여 명이 고부(古阜) 인민(人民)을 도륙(屠戮)하려는 고로 부득이하여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어느 곳에서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고부(古阜) 땅에서 접전(接戰)하였습니다.²⁹⁾

문問: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어느 곳에서 구획(區劃)하였느냐?

공供: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은 다 민간(民間)에서 조판(措辦³⁰)하였습니다.

문問: 고부(古阜) 군기고(軍器庫)의 군물(軍物)은 네가 탈취(奪取)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그 때에는 탈취(奪取)함이 없나이다.

문問: 그 때에도 네가 주모(主謀)가 되었느냐?

공供: 그러합니다.

문問: 그 뒤에는 길이 고부(古阜)에 있었느냐?

공供: 장성(長城)으로 갔습니다.

문問: 장성에서 접전(接戰)하였느냐?³¹⁾

공供: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여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였노?

공供: 아군(我軍)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경군(京軍)이 대포(大砲)로 사격(射擊)하였기 때문에 아군(我軍) 전사자(戰死者)가 4~50명이었기에 아군(我軍)이 일제히 추격(追擊)하니 경군(京軍)이 패주(敗走)하거늘 대포(大砲) 2좌(座)와 여간(如干)의 탄환(彈丸)을 취해 왔습니다.

문問: 그때에 양쪽 군사의 수효는 각각 얼마였노?

공供: 경군(京軍)은 700명이요 아군(我軍)은 4,000여 명입니다.

문問: 그때 장성(長城)에서 행한 일을 일일이 바른대로 고하라.

공供: 경군(京軍)이 패주(敗走)한 뒤에 아군(我軍)이 갑절의 길을 가서 전주(全州)로 경군(京軍)보다 먼

28) 등소(等訴): 무리를 지어 소장을 냄

29) 전라 감영에서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농민군이 집결한 부안 백산으로 감영병(監營兵)을 보냈으며, 농민군이 정읍 도교산 방향으로 이동하자 뒤따라 추격해 와서 1894년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농민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이 전투는 농민군이 최초로 감영군을 격파한 전투였다.

30) 조판(措辦): 조처하여 마무리 지음.

31)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뒤 고창, 무장, 영광 등지를 거쳐 1894년 4월 21일 장성으로 진격했다. 이 무렵 중앙에서 파견된 장위영병(壯衛營兵)은 전주에서 출발해 농민군의 공무리를 따라 다니다가 대관(隊官) 이학승(李學承)을 선발대로 보냈는데, 1894년 4월 23일 장성 황룡강가에 있는 황룡촌에서 만나 접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이학승이 전사했고 농민군이 승리했다. 이 전투는 농민군이 경군(京軍)과 벌여 승리를 올린 최초의 전투이기도 했다.

저 들어가서 성城을 지켰습니다.

문問: 그 때 감사監司가 없었느냐?

공供: 감사監司는 아군我軍이 오는 것을 보고 도주逃走하였습니다.³²⁾

문問: 성을 지킨 뒤에는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그 뒤에 경군京軍이 뒤를 따라 완산完山³³⁾에 이르러 용두현龍頭峴³⁴⁾에 진陣을 치고 성城 안을 향하여 대포大炮로 공격攻擊하다가 경기전慶基殿³⁵⁾이 손상損傷된 까닭으로 이 연유緣由를 경군京軍에게 알렸더니 경영京營 안에서 효유문曉諭文을 만들어, 너희 소원대로 하자 하옵기에 감격感激하여 해산解散하였습니다.³⁶⁾

문問: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행하고?

공供: 그 뒤에는 각기 귀家하여 농사에 힘썼고 그 나머지 불항不恒³⁷⁾한 무리가 민간民間에 노략질함도 있었나이다.

문問: 불항不恒한 무리로 노략질한 군사는 너와 관계關係가 없느냐?

공供: 관계關係함이 없습니다.

문問: 그 뒤에 행한 일이 다시 없느냐?

공供: 작년昨年 10월 무렵에 이 몸은 전주全州에서 기포起包하고 손화중孫化中은 광주光州에서 기포起包하였습니다.³⁸⁾

문問: 다시 기포起包한 것은 무슨 까닭이고?

공供: 그 뒤에 들은즉 귀국貴國³⁹⁾이 개화開化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一言半辭⁴⁰⁾도 민간民間에 전해 알림이 없고, 또 격서檄書⁴¹⁾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都城에 들어와 야반夜半에 왕궁王宮을 격파擊破하여 주상主上⁴²⁾을 놀라서 움직이게 하였기로 초야草野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國忠君愛國의 마음으로 강개慷慨⁴³⁾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려義旅⁴⁴⁾를 규합糾合하여 일본日本 사람과 접전接戰하여 이 사실을 한 차

32)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은 농민군이 전주로 진격한다는 통지를 받고 번복을 하고 전주성에서 탈출했다.

33) 완산(完山): 전주성 외곽 남쪽에 있는 산.

34) 용두현(龍頭峴): 용머리고개.

35) 경기전(慶基殿):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영정을 모신 곳.

36) 홍계훈(洪啓薰)은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을 받아 장위영 군사를 거느리고 전주로 내려와서 전주에 초토영을 설치했다.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1894년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뒤 양측에서 몇 차례를 벌이면서 전봉준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 전봉준과 홍계훈 사이에 27개 항의 협약을 맺었다. 홍계훈은 5월 8일 이를 의정부에 올려 재가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 주요 사항을 보면, 전운소(轉運所, 세곡을 나르는 부서)를 혁파할 것, 보부상의 작폐를 금단할 것, 지난 감사가 거둔 환전(還錢, 환곡 물의 돈)을 다시 걷지 말 것, 포구의 어염세를 걷지 말 것 등이었다. “전봉준판결선고서(全奉準判決宣告書)”에는 14개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전봉준은 불량 양반의 징치,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토지의 평균 분작 등 폐정개혁안 12조를 제시했다고 했으나(오지영, 『동학사』) 이 공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37) 불항(不恒): 일정한 생업이 없이 떠도는 사람.

38) 전봉준은 2차 봉기를 일으킬 때 전주에서 위봉산성의 무기를 거두어 삼례로 진출했고 손화중 최경선은 해안 방비와 나주성 점령을 위해 삼례 농민군에 참여치 않고 광주와 나주에서 활동했다.

39) 귀국(貴國): 일본(日本)을 지칭.

40) 일언반사(一言半辭): 일언반구(一言半句).

41) 격서(檄書): 알리는 글. 격문(檄文).

42) 주상(主上): 임금. 국왕(國王).

43) 강개(慷慨):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북받치어 원통하고 슬픔.

레 청해 묻고자 함입니다.

문問: 그 뒤 다시 무슨 일을 행하였는고?

공供: 그 뒤에 생각하여 헤아려 본 즉, 공주公州 감영監營이 산山이 가로막히고 하천河川을 두르고 있어 지리地理가 형승形勝⁴⁵⁾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웅거雄據하여 굳게 지키기를 도모하면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용이容易하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므로 공주公州에 들어가 일본日本 병사兵士에게 격문檄文을 전하여 서로 버티고자 하였더니,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먼저 공주公州를 웅거雄據하였으니 사세事勢⁴⁶⁾가 접전接戰을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차례 접전接戰 뒤 10,000여 명의 군병軍兵을 점고點考한 즉 남은 자가 불과不遇 3,000여 명이요, 그 뒤 또 두 차례 접전接戰한 뒤 점고點考한 즉 불과不遇 500여 명인 까닭에 패주敗走하여 금구金溝⁴⁷⁾에 이르러 다시 초모招募⁴⁸⁾하니 수효數效는 조금 증가하나 기율紀律이 없어 다시 개전開戰하기 아주 어려웠더니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뒤따랐기 때문에 두 차례 접전接戰하다가 패주敗走하여 각기各其 해산解散하였습니다.⁴⁹⁾

문問⁵⁰⁾: 금구金溝에서 해산한 뒤에는 이 몸이 서울의 속사정을 상세詳細히 알고자 하여 상경上京하려 하다가 순창淳昌 땅에서 민병民兵에게 잡혔나이다.

문問: 전주全州에 들어갈 때에 초모招募한 군사軍士는 전라全羅 한 도道의 인민人民이 모두 모인 것이냐?

공供: 각 도道의 인민이 조금 많았습니다.⁵¹⁾

문問: 공주公州에 향할 때에도 각 도道의 인민人民이 조금 많았느냐?

공供: 그 때에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문問: 재차再次 초모招募할 때에 무슨 방책方策으로 규합糾合하였느냐?

공供: 초모招募할 때 충의忠義의 선비는 같이 창의倡義하라 하고 방문榜文을 내걸었습니다.

문問: 초모招募할 때에 자원自願한 자만 모였느냐, 혹 강제로 몰아내었느냐?

공供: 이 몸이 본래本來 거느린 4,000명은 다 자원自願한 자요, 그 밖에 각 처에 통문通文한 글의 뜻은 만약 이 거사舉事를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라 하였습니

다.

문問: 작년昨年 3월에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하여 전주全州로 향하는 사이에 몇 고을을 경유

44) 의려(義旅): 의병(義兵).

45) 형승(形勝): 지세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

46) 사세(事勢): 일이 되어 가는 형편과 정세.

47) 전봉준은 패잔 농민군을 이끌고 전주를 거쳐 금구의 원평에 이르렀다. 이때 일본군이 뒤따라와서 1894년 11월 25일 원평에서 전투를 벌였다.

48) 초모(招募): 군사 등을 불러 모음.

49) 1894년 11월 25일의 원평전투와 11월 27일 태인전투를 종합해서 말한 것이다.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원평전투에서 패전하고 태인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전투를 벌여 패전했다. 실제로는 태인전투가 전봉준 농민군의 마지막 전투였다.

50) 문(問): 전봉준 자신을 지칭하는 ‘이 몸(矣身)’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공술(供述)이 이어진 내용이니 ‘공(供)’을 ‘문(問)’으로 잘못 표기한 듯함.

51) 전봉준은 무장(茂長) 포고 이후 여러 곳에 전령을 보내 동참을 호소해서 다른 지역 농민군이 많이 합류해 오기도 했다. 삼례에서 농민군이 진격할 때에도 여산, 은진, 논산 등 충청도 접경지역의 농민군들이 합류해 왔다.

經由하였으며 몇 차례 접전接戰하였느냐?

공供: 경유經由한 고을은 무장茂長에서 고부古阜를 경유經由하여 태인泰仁, 금구金溝를 거쳐, 전주全州를 도달到達하려다가 감영병監營兵 10,000여 명이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부안扶安을 가서 고부古阜에 돌아와 이르러 감영군監營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그 뒤에는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정읍井邑으로 고창高敞, 무장茂長, 함평咸平을 경유經由하여 장성長城에 이르러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습니다.

문問: 전주全州에 들어간 것은 어느 때이며 해산解散은 어느 때이고?

공供: 작년昨年 4월 26~7일 사이에 전주全州에 들어가고 5월 초5~6일 사이에 해산解散하였습니다.

문問: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 시작하였느냐?

공供: 전주全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문問: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 초모招募한 것은 몇 명이고?

공供: 4,000여 명입니다.

문問: 공주公州에 이를 때는 몇 명이고?

공供: 10,000여 명입니다.

문問: 공주公州에서 접전接戰은 어느 때이고?

공供: 지난 해 10월 23~4일 사이입니다.

문問: 당초當初 고부古阜에서 기포起包할 때에는 동모자同謀者가 모두 누구요?

공供: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景善과 모모인某某人입니다.⁵²⁾

문問: 이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없었느냐?

공供: 이 세 사람 외에 허다許多한 사람은 셀 수 없음이외다.

문問: 4,000명을 규합糾合할 때에 이 세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상세히 그 사람들을 말하라.

공供: 이 밖에 쇄설瑣屑⁵³⁾한 사람들은 어찌 족히 말할 수 있겠소이까?

문問: 작년昨年 10월 기포起包할 때에는 동모자同謀者가 또 없느냐?

공供: 이 밖에 손여옥孫汝玉, 조준구趙駿九 등 뿐이외다.

문問: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景善은 그 때에 상관相關이 없었느냐?

공供: 이 두 사람은 광주光州의 일이 긴급緊急하다 하고 미처 오지 못하였습니다.

문問: 손孫, 최崔 두 사람은 광주光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⁵⁴⁾

공供: 두 사람은 즉시卽時 공주公州로 향하다가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해로海路로 온다는 말을 듣고 해방海防하란 고로 광주光州만 고수固守하였습니다.

아림白

52) 무장에서 봉기한 뒤 고부로 진격할 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셋의 이름으로 창의문(倡義文)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여기의 아무개는 김개남으로 보인다.

53) 쇄설(瑣屑): 자질구레함.

54) 손화중과 최경선은 삼례로 전봉준을 찾아갔다가 광주로 내려가서 남도(南道) 방어의 일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나주의 접주 오권선과 함께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을미 2월 11일 전봉준 재초 문목[乙未 二月 十一日 全琫準 再招 問目]

문問: 네가 작년昨年 3월 기포起包한 뜻은 백성을 위하여 해독解毒을 제거除去함으로 뜻을 삼았다 하니 과연 그러하냐?

공供: 과연 그러합니다.

문問: 그렇다면 내직內職에 거居하며 외임外任을 맡은 관원官員이 다 탐학貪虐하냐?

공供: 내직內職에 거한이가 매관육작賣官鬻爵⁵⁵⁾으로 일을 삼으나 내외內外를 막론하고 다 탐학貪虐이외다.

문問: 그렇다면 전라全羅 한 도道의 탐학貪虐하는 관리官吏만 제거除去하자 기포起包하였더냐, 팔도八道를 일체一體로 하려는 의향意向이냐?

공供: 전라全羅 한 도道의 탐학貪虐을 제거除去하고 내직內職으로 매작賣爵하는 권신權臣을 모조리 쫓아내면 팔도八도가 자연自然 일체一體로 될 터이외다.

문問: 전라도全羅道 감사監司 이하以下로 각 고을의 수재守宰⁵⁶⁾가 다 탐관貪官이냐?

공供: 열에 여덟아홉이다.

문問: 무슨 일을 지목指目하여 탐학貪虐이라 하느냐?

공供: 각 고을의 수재守宰가 상납上納이라 칭하고 혹 결복結卜⁵⁷⁾에 가렴加斂⁵⁸⁾하며 호역戶役⁵⁹⁾도 함부로 징수하며 조금 살만한 백성이 있으면 공연公然히 죄를 얹어 돈과 재물을 늑탈勒奪하고 전장田庄⁶⁰⁾도 함부로 침범함이 비일비재非一非再외다.

문問: 내직內職으로 매관賣官하는 자는 누구이고?

공供: 혜당惠堂 민영준閔泳駿,⁶¹⁾ 민영환閔泳煥, 고영근高永根 등이외다.

문問: 이들 사람에만 그치었느냐?

공供: 이 밖에도 허다許多하옵니다.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문問: 이들 사람이 매관賣官함은 어찌 분명分明하게 아느냐?

공供: 온 세상에서 횡자喧藉⁶²⁾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음이외다.

문問: 네가 무슨 계책計策으로 탐관貪官을 제거除去하려 하였느냐?

공供: 특별한 계책計策이 있음이 아니라 본심本心이 안민安民하는데 간절하여 탐학貪虐을 보면 분하고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탐학貪虐을 제거하는 이런 일을 행함이외다.

문問: 그렇다면 정소呈訴⁶³⁾하여 원통함을 칭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감영과 고을에 몇 차례나 정소呈訴하였는지 알지 못함이외다.

55) 매관육작(賣官鬻爵):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 매관매직(賣官賣職).

56) 수재(守宰): 고을의 수령(守令).

57) 결복(結卜): 전세(田稅)를 지칭함.

58) 가렴(加斂): 조세(租稅) 따위를 정액 외에 더 걷어 들임.

59) 호역(戶役): 집집마다 부과되는 부역. 호구세(戶口稅).

60) 전장(田庄): 전답(田畓)과 장원(莊園).

61) 민영준(閔泳駿): 민씨 척족인 민영준 * [閔泳駿, 뒤에 영휘(泳徽)로 개명] * 은 조세를 받아 녹봉을 주는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의 직책을 맡아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 가장 지탄을 받은 척족이었다.

62) 횡자(喧藉): 뭇사람의 입으로 퍼져서 왁자하게 됨.

63) 정소(呈訴):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호소함.

문問: 감영에 정소呈訴하고 고을에 정소呈訴한 것은 내가 친히 행하였느냐?

공供: 매차每次 소지所志⁶⁴⁾는 이 몸이 제작製作하였사오나 정소呈訴하기는 원민冤民으로 하게 하였사옵나이다.

문問: 그렇다면 묘당廟堂⁶⁵⁾에도 소원訴冤⁶⁶⁾하였느냐?

공供: 정소呈訴할 길이 없어서 홍계훈洪啓勳 대장大將이 전주全州에 유진留陣할 때에 이러한 연유緣由로 올렸습니다.

문問: 그 때 수재守宰가 모두 탐학貪虐인데 정소呈訴하면 어찌 들어서 시행함이 있으랴?

공供: 그러하나 호소呼訴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여 거기라도 정소呈訴하였나이다.

문問: 감영에 정소呈訴하고 고을에 정소呈訴하기는 어느 때이고?

공供: 작년昨年 정월正月 2~3월 사이이외다.

문問: 정월 이전에는 정소呈訴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정월 이전에 고부古阜 한 고을은 민장民狀⁶⁷⁾일 뿐, 대단大端히 정소呈訴는 아니하였느냐.⁶⁸⁾

문問: 누차屢次 감영監營과 고을에 정소呈訴하되 끝내 들어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기포起包하였느냐?

공供: 그렇소이다.

문問: 네가 고부古阜 수령守令에게 해害를 입음이 많지 않은데 무슨 연유緣由의 의견意見으로 이러한 거사擧事를 행하였느냐?

공供: 세상 일이 날로 그릇되기로 분개하와 한 번 세상을 구제救濟하자는 의견意見이외다.

문問: 너와 동모同謀한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 등이 다 동학東學을 몹시 좋아하는 자냐?

공供: 그러합니다.

문問: 동학東學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主意, 무슨 도학道學이고?

공供: 수심守心⁶⁹⁾하여 충효忠孝로 근본根本을 삼아 보국안민輔國安民⁷⁰⁾하자는 일이외다.

문問: 너도 동학東學을 몹시 좋아하는 자이나?

공供: 동학東學은 수심경천守心敬天⁷¹⁾하는 도道이기 때문에 몹시 좋아하나이다.

문問: 동학東學은 어느 때에 시작하였느냐?

공供: 동학東學의 시작은 30년 전에 비롯되었음외다.

문問: 어느 사람이 시작하였노?

64) 소지(所志): 청원하기 위해 관청에 내던 글.

65) 묘당(廟堂):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66) 소원(訴冤): 백성(百姓)이 원통(冤痛)한 일을 관아(官衙)에 하소연하던 일.

67) 민장(民狀): 백성이 송사나 청원과 관련하여 관청에 올리는 글. 고부의 백성들이 조병갑의 부정을 들어 등소를 낼 적에 전봉준은 등소의 내용을 적은 글을 써주었으나 직접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 전창혁(全彰赫)이 소두(疏頭)로 이름을 올렸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

68) 원문에는 “아니하냐”라고 표기되어 있어 의문문으로 종결되나 문장의 흐름 상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9) 수심(守心): 마음을 지키.

70)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

71) 수심경천(守心敬天): 마음을 지키고 하늘을 공경하는 것.

공供: 경주慶州에 거居하는 최제우崔濟愚가 시작하였나이다.

문問: 지금도 전라도全羅道 안에 동학東學을 존崇하는 자가 많으냐?

공供: 난亂을 겪은 뒤에는 사망死亡이 서로 이어져 지금은 크게 감소減少하였나이다.

문問: 네가 기포起包할 때 거느린 바는 모두 동학東學이냐?

공供: 소위所謂 접주接主는 모두 동학東學이요 그 나머지 솔하率下는 충의忠義의 칭함이 많음 이외다.

문問: 접주接主, 접사接司는 무슨 명색名色이고?

공供: 영솔領率의 칭호이외다.

문問: 그렇다면 기포起包할 때에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을 조판措辦하는 자냐?

공供: 무릇 일에 다 지휘指揮하는 자입니다.

문問: 접주接主, 접사接司는 본래本來부터 있었느냐?

공供: 기왕既往에도 있었고 기포起包할 때에 창설創設함도 있었습니다.

문問: 동학東學 중에 영솔領率의 명색名色이 접주接主, 접사接司 뿐이냐?

공供: 접주接主, 접사接司 외에도 교장敎長, 교수敎授, 집강執綱, 도집都執, 대정大正, 중정中正 등 여섯 종류이외다.⁷²⁾

문問: 접주接主란 것은 평소에는 무슨 일을 행하느냐?

공供: 행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문問: 소위所謂 법헌法軒은 무슨 직책職責이고?

공供: 직책職責은 아니요, 장로長老의 별호別號입니다.

문問: 이상 여섯 종류의 명칭名稱은 무슨 일을 행하느냐?

공供: 교장敎長, 교수敎授는 어리석은 백성을 교도敎導하는 이요, 도집都執은 풍력風力⁷³⁾이 있고 기강紀綱을 밝히며 경계經界⁷⁴⁾를 아는 이요, 집강執綱은 시비是非를 밝히고 기강紀綱을 잡는 이요, 대정大正은 공평公平을 유지維持하고 근후謹厚⁷⁵⁾한 인원人員이요, 중정中正은 능히 직언直言하고 강직剛直한이라 합니다.

문問: 접주接主, 접사接司는 직책職責이 같으냐?

공供: 접사接司는 접주接主의 지휘指揮를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문問: 이상 허다許多한 명색名色은 누가 차출差出하느냐?

공供: 법헌法軒으로부터 교도敎徒의 다소多少를 보고 차례로 차출差出하나이다.

문問: 동학東學 중에 남접南接과 북접北接이 있다 하니 무엇을 의지하여 남북南北을 구별區別하느냐?

공供: 호湖 이남以南은 남접南接이라 칭하고 호중湖中은 북접北接이라 칭하나이다.⁷⁶⁾

72) 하부 동학조직을 6임(任)이라 했다. 한편 집강소(執綱所)의 임원으로는 서기(書記), 성찰(省察), 집사(執事), 동몽(童蒙) 등을 두었다고 한다.

73) 풍력(風力): 사람의 위력.

74) 경계(經界):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간.

75) 근후(謹厚): 부지런하고 온후함.

76) 본디 최제우 생존시에 최시형이 북쪽 지대에서 포교를 하면서 북접대도주(北接大道主)라 불렀는데, 농민봉기를 두고 서로 견해를 달리할 때 보은 중심의 최시형 계통을 북접(北接), 호남 중심의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계통을 남접(南接)이라 불렀다고 한다.

문問: 작년昨年 기포起包할 때에 이상 각 종류의 명색名色 등에게 무슨 사건事件을 지휘指揮하였느냐?

공供: 각기 직장職掌⁷⁷⁾대로 행하였나이다.

문問: 각기 직장職掌은 다 너의 지휘指揮를 듣고 행하였느냐?

공供: 이 몸이 다 지휘指揮하였나이다.

문問: 수심경천修心敬天⁷⁸⁾하는 도道를 어찌 동학東學이라 칭하느냐?

공供: 우리 도道는 동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학東學이라 칭하나 처음부터 본뜻은 시작始作한 사람이 분명分明히 알 것이요, 이 몸은 다른 사람이 칭함을 따라 칭할 뿐이외다.

문問: 동학東學에 들어가면 괴질怪疾을 면免한다 하니 그러하냐?

공供: 동학東學의 글 속에 이르기를, 3년 괴질怪疾이 앞에 있으니 경천수심敬天守心하여야 면한다 하였나이다.

문問: 동학東學이 8도道에 다 전포傳布⁷⁹⁾하였냐?

공供: 5도道는 다 교敎를 행하였으나 서북西北 3도道는 알 수 없나이다.⁸⁰⁾

문問: 동학東學을 배우면 병病을 면免하는 외에 다른 이익利益은 없느냐?

공供: 다른 이익은 없나이다.

문問: 작년昨年 3월 기포起包할 때는 탐관貪官을 제거한 뒤에 또 무슨 주의注意⁸¹⁾가 있느냐?

공供: 다른 주의注意는 없나이다.

문問: 작년昨年 홍대장洪大將⁸²⁾에게 절목節目을 올린 것이 있다 하니 과연 그러하냐?

공供: 그렇습니다.

문問: 절목節目을 올린 뒤에 탐관貪官을 제거한 징험徵驗이 있더냐?

공供: 별로 징험徵驗이 없습니다.

문問: 그렇다면 홍대장洪大將이 백성을 속임이 아니냐?

공供: 그렇습니다.

문問: 그렇다면 백성百姓이 다시 어찌 원통함을 호소함이 없었느냐?

공供: 홍대장洪大將은 그 뒤에 서울에 있었으니 어찌 다시 원통함을 호소하리요.

문問: 재차再次 기포起包는 일본日本 병사兵士들이 대궐大闕을 침범侵犯⁸³⁾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재차再次 거사擧事하였다 하니 재차 거사한 뒤에는 일본日本 병사兵士에게 무슨 거조擧措⁸⁴⁾를 행하려 하였느냐?

77) 직장(職掌): 담당하는 직무의 분담.

78) 수심경천(修心敬天): 마음을 닦고 하늘을 공경함.

79) 전포(傳布): 전파(傳播). 전하여 널리 퍼짐.

80) 5도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말하며 서북 3도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말한다. 최시형이 북쪽의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학을 포덕(布德)할 때 황해도 등 서북지방에는 발길이 닿지 않았다. 다만 황해도 인사는 자발적으로 1893년 보은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81) 주의(注意): 어떤 일에 관심을 집중함.

82) 홍대장(洪大將): 양호초토사 홍계훈(洪啓薰)을 지칭함.

83)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을 말한다.

84) 거조(擧措): 무엇을 처리하거나 꾸미기 위한 조치.

공供: 대궐을 침범한 연유緣由를 힐문詰問코자 함입니다.

문問: 그렇다면 일본日本 병사兵士며 각국各國의 사람들이 경성京城에 머무는 자를 구축驅逐⁸⁵⁾하려 하느냐?

공供: 그림이 아니라 각국各國 사람들은 다만 통상通商만 하는데 일본日本 사람들은 병사兵士를 거느려 경성京城에 진영陣營을 머무르는 연고로 우리나라의 경토境土⁸⁶⁾를 침략侵犯하는가 의아疑訝⁸⁷⁾함입니다.

문問: 이견영李健永이란 사람은 아느냐?

공供: 잠시暫時 봉착逢着⁸⁸⁾하였나이다.

문問: 봉착逢着할 때 무슨 말이 있었느냐?

공供: 소모사召募使⁸⁹⁾라 칭하기로 이 몸이 말하기를 소모사召募使면 어느 곳이든지 소모영召募營을 설치하면 될 것이요 우리와는 상관相關없다하니 그만 금산錦山으로 앞서 가더이다.

문問: 어느 곳에서 봉착逢着하고?

공供: 삼례역參禮驛에서 봉착逢着하였습니다.

문問: 그 때에 이견영李健永을 만났다 하니 어느 곳으로부터 왔다하더냐?

공供: 경성京城으로부터 왔다 하더이다.

문問: 누가 보냈다 하더냐?

공供: 정부政府에서 보냈다 하더니 추후追後 4~5일에 들으니 소모사召募使를 가칭假稱이라 하여 잡아들이라는 명命이 있었다 하더이다.

문問: 소모사召募使를 가히 증거證據할 문적文蹟이 있더냐?

공供: 가히 증거證據할 문적文蹟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問: 그 때 너의 도당徒黨이 몇 명이고?

공供: 수천數千 명이외다.

문問: 그 밖에는 소모사召募使라 칭하고 기포起包하러 권勸하는 사람이 없더냐?

공供: 그런 사람이 없더이다.

문問: 송정섭宋廷燮을 아느냐?

공供: 충청도忠淸道 소모사召募使란 소문所聞만 들었습니다.

문問: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 최법헌崔法軒에게 의논議論이 미치었느냐?

공供: 의논議論이 미침이 없습니다.

문問: 최법헌崔法軒은 동학東學 괴수魁首거늘 동학당東學黨을 규합糾合하는데 어찌하여 의논議論이 미치지 아니하였느냐?

공供: 충의忠義는 각기 본심本心이니 하필 법헌法軒에게 의논議論이 미친 뒤에 이 일을 행하리요.

85) 구축(驅逐): 몰아 쫓아냄.

86) 경토(境土): 한 나라의 영토.

87) 의아(疑訝): 의심스럽고 이상함.

88) 봉착(逢着): 만나서 부딪침.

89) 소모사(召募使): 군사(軍士)를 모집하는 임시직책.

문問: 작년昨年 8월에는 네가 어느 곳에 있었노?

공供: 태인泰仁 내 집에 있었습니다.

문問: 그 나머지 도당徒黨은 다 어느 곳에 있었노?

공供: 각기 본가本家에 있었습니다.

문問: 충청도忠淸道 천안天安 지방에 너의 도당徒黨이 있느냐?⁹⁰⁾

공供: 그 곳에는 도당徒黨이 없습니다.

아뢰白

을미 2월 19일 전봉준 3초 문목[乙未 二月 十九日 全琫準 三招 問目]

문問: 네가 일전日前 고한 바에 송희옥宋喜玉을 알지 못한다 하니 희옥喜玉 두 글자가 이름이나, 호號이나?

공供: 희옥喜玉은 이름이고 칠서柒瑞는 자字외다.

문問: 송희옥宋喜玉과 함께 삼례역參禮驛에서 이미 그와 함께 동모同謀하였다면 그의 이름과 자字를 어찌 상세詳細하게 알지 못하느냐?

공供: 송희옥宋喜玉은 본디 허망虛妄한 부류로 홀연히 갔다가 홀연히 오니 실로 상세하게 알지 못함이외다.

문問: 송희옥宋喜玉은 들으니 전라全羅 한 도道의 도집강都執綱이요 또 들으니 바야흐로 너와는 척족戚族의 정의情誼로 매여 있고, 지금 고한 바를 들으니 오로지 일을 장찬粧撰⁹¹⁾하고 바른대로 고하지 않은 것은 가히 의심스러울 만하다. 하물며 너의 죄罪의 경중輕重이 송희옥宋喜玉을 장찬粧撰하는데 있지 않고 희옥喜玉의 죄안罪案 또한 네가 몰래 비호庇護하는 데에 있지 않은데 하나같이 저뢰抵賴⁹²⁾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무슨 마음인고?

공供: 아까 아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송宋은 본디 부항浮荒⁹³⁾한 부류입니다. 지난 날 영사관領事館에서 봉공奉供⁹⁴⁾할 때 영사領事가 글 하나를 내어 보여주었는데 곧 송희옥宋喜玉의 필적筆跡이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운현변雲峴邊⁹⁵⁾과 상통相通한다 하였기에 내가 스스로 묵묵히 헤아려보니, 그가 이러한 말을 위조僞造함이 가히 시국時局에 힘을 빌리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불근不近⁹⁶⁾한 말을 지어낸은 실로 남자男子의 일이 아니요, 또한 이는 존엄尊嚴⁹⁷⁾을 모독冒瀆하고 공연히 시의時議를

90) 문초한 내용은 충청도 목천(木川) 세성산전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10월 21일에 김복용, 이희인 등 복점 지도자들이 세성산에서 공주전투에 앞서 서전을 벌였으나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병에게 패주한 일이 있다. 또 천안일대에 농민군의 활동이 심해지자 특별히 부대를 출동하게 했다.

91) 장찬(粧撰):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꾸밈.

92) 저뢰(抵賴): 변명하며 신문에 복종하지 않음.

93) 부항(浮荒): 들뜨고 거친 사람.

94) 봉공(捧供): 죄인을 신문하여 진술을 받음.

95) 운현변(雲峴邊): 운현궁(雲峴宮)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가리킴.

96) 불근(不近): 이치에 맞지 않음.

97) 존엄(尊嚴): 흥선대원군을 지칭하는 뜻.

야기惹起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이를 장찬粧撰함이외다.

문問: 남자男子의 말이 비록 백 마디가 사실이더라도 만약 한 가지 말에 거짓이 있으면 백 마디 말이 모두 거짓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어제 알지 않았드는가 행하지 않았다고 칭한 바는 어찌 모두 거짓이 아니겠느냐?

공供: 심신心神이 혼미昏迷함으로써 과연 착오錯誤한 바가 있음이외다.

문問: 송희옥宋喜玉의 갑오甲午 9월의 글에 있어 이르기를, 어제 저녁에 또 두 사람이 비밀秘密히 내려 왔는데 전말顛末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과연 개화변開化邊⁹⁸⁾에 눌러서 먼저 효유曉諭를 지킨 뒤에 비밀秘密 기별奇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누구에게 보낸 글이며, 또한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냐? 지난 날 네가 고한 바에, 작년昨年 10월 재기再起한 일은 일본日本 사람들이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대궐大闕에 들어가 이해利害 소재所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신민臣民이 일각一刻이라도 안심安心할 수 없어서 이에 이러한 거사擧事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니 대원위大院位⁹⁹⁾의 뒤를 따른 비밀秘密 기별奇別이 또한 너의 재기再起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공供: 저간這間에 비록 이들 무리의 내왕來往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 얼굴을 알지 못했으니 중대重大한 사건事件을 어찌 의논議論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자취가 수상尋常한 자는 하나같이 얼굴을 접하지 않음이외다.

문問: 남원부사南原府使 이용헌李用憲¹⁰⁰⁾, 장흥부사長興府使 박헌양朴憲陽이 해를 입은 것은 모두 누구의 소행이냐?¹⁰¹⁾

공供: 이용헌李用憲은 김개남金開男이 소행이요, 박헌양朴憲陽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었는지 알지 못함이외다.

문問: 은진恩津에 거거하는 김원식金元植¹⁰²⁾이 해를 입은 것은 누구의 소행이냐?

공供: 공주公州의 동학東學 괴수魁首인 이유상李裕相¹⁰³⁾이 소행이되 이 몸과는 관계關係가 없음이외다.

문問: 작년昨年 다시 기포起包할 때 묘당廟堂¹⁰⁴⁾에서 내려 보낸 효유문曉諭文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공供: 대원위大院位의 효유문曉諭文은 얻어 보았음이요, 묘당廟堂의 효유문曉諭文은 보지 못함이외다.

문問: 비록 묘당廟堂의 효유문曉諭文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대원위大院位의 효유문曉諭文을 보았다면 시사時事를 가히 알 것인데 사기事機¹⁰⁵⁾ 여하如何를 헤아리지 않

98) 개화변(開化邊): 개화파(開化派)를 지칭함.

99) 대원위(大院位): 흥선대원군의 별칭.

100) 이용헌(李用憲): 이용헌(李龍憲). 용(用)은 용(龍)의 오자임.

101) 김개남은 2차 봉기를 준비하면서 남원부사 이용헌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자 처단했다. 박헌양은 1894년 12월 14일 장흥전투가 벌어졌을 적에 농민군에 저항하다가 피살되었다. 전봉준으로서 장흥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102) 김원식(金元植): 김원식(金源植). 원(元)은 원(源)의 오자임.

103) 이유상(李裕相): 이유상(李裕尙). 상(相)은 상(尙)의 오자임.

104) 묘당(廟堂): 의정부(議政府).

105) 사기(事機): 일이 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기틀.

고 제멋대로 스스로 백성^{百姓}을 움직여 무단^{無端}히 소요를 일으켜 백성을 물과 불 구덩이에 몰아넣은 것은 이 어찌 신민^{臣民}이 가히 할 수 있는 일이나?

공^供: 속내를 자세히 모르고 제멋대로 백성을 움직인 것은, 과연 잘못을 저지름이외다.

아뢰^白

을미 3월 10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
[乙未 三月初十日 全琫準 五次 問目 日本領事 問招]

문^問: 금일^{今日} 또한 이전과 같이 사실을 조사할 것이니 숨김없이 바른대로 대답하라.

공^供: 모두 알겠습니다.

문^問: 삼례^{參禮}에 있을 때 작년^{昨年} 9월에 별도로 대서^{代書}한 사람이 없었고 접주^{接主} 중에 번갈아가면서 글을 썼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냐?

공^供: 별도로 대서^{代書}한 사람이 없었고 접중^{接中}에서 번갈아가면서 그것을 베꼈습니다. 처음에는 임오남^{林五男}으로 하여금 베끼게 하였으나 그가 무식^{無識}하여 이를 놓아두고 또 김동섭^{金東燮}으로 하여금 잠시 대서^{代書}하도록 하였습니다.

문^問: 대서^{代書}한 사람이 오직 김동섭^{金東燮}, 임오남^{林五男} 두 사람 뿐이냐?

공^供: 접주^{接主} 중에 문계팔^{文季八}, 최대봉^{崔大鳳}, 조진구^{趙鎭九}가 혹 대서^{代書}하였으나 불과^{不過} 몇 차례 쓰고 그쳤습니다.

문^問: 너와 최경선^{崔慶善}이 서로 친한 것이 몇 년이냐?

공^供: 동향^{同鄉}으로써 서로 친한 것이 5~6년 됩니다.

문^問: 최^崔는 일찍이 너와 서로 스승의 직분이 있었느냐?

공^供: 단지 친구^{親舊}로서 상종^{相從}하였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직분은 없었습니다.

문^問: 너의 공초^{公招}에 부실^{不實}한 곳이 있는 것 같아 허공^{虛空} 속에 재판^{裁判}을 질질 끌고 있다. 또 너에게 해^害가 됨이 없는데도 무슨 까닭으로 이같이 하느냐?

공^供: 별로 정황^{情狀}을 속인 것이 없습니다. 일전^{日前}에 송희옥^{宋喜玉}의 일은 잠시 또 은폐하였으나 또한 명확히 말하였습니다.

문^問: [편지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친필^{親筆}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황^{情狀}을 속인 게 아니면 무엇이냐?

공^供: 이미 공술^{供述}에서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일,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것이라고 하였는데, 유독 필서^{筆書}만 나의 필서^{筆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몸에 무슨^{利益} 이익이 있다고 이를 속이겠소? 과연 자필^{自筆}이 아닙니다.

문^問: 최경선^{崔慶善}의 공술^{供述}은 이것을 너의 필서^{筆書}라고 하였는데 너는 아니라고 말하니 어찌 정황^{情狀}을 속인 것이 아니냐?

공^供: 다시 최^崔에게 물어봄이 가^可합니다. 다시 그로 하여금 습자^{習字}¹⁰⁶⁾하도록 한다면 글씨체를 가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106) 습자(習字): 글씨를 씀.

문^問: 일전^{日前}에 너를 신문^{訊問}할 때 네가 말하기를, 삼례^{參禮}에 있을 때에는 서기^{書記}라는 명색^{名色}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서기^{書記}라는 명색^{名色}이 있었다고 말하니 어찌된 것이냐?

공^供: 지난날에는 대략^{大略}을 그것을 말했지만 지금은 상세^{詳細}히 묻기 때문에 그 때 잠시 대서^{代書}하는 자를 서기^{書記}라고 칭하였습니다.

아뢰^白

을미 2월 19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
[乙未 二月十九日 全琫準 五次 問目 日本領事 問招]

문^問: 송희옥^{宋喜玉}의 글 중에 이른 바 운변^{雲邊}¹⁰⁷⁾의 비밀^{秘密} 기별^{奇別}의 허실^{虛實}을 너는 무엇으로써 적확^{的確}히 아느냐?

공^供: 송^宋은 본디 부랑^{浮浪}하기 때문에 미루어 보아 말했던 것이요, 또 설사 운변^{雲邊}에서 흑시라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이 몸에게 먼저 알렸을 것이니, 송^宋에게 먼저 준 것은 마땅치 않음외다.

문^問: 송^宋이 너에게 수하^{手下}이냐, 수상^{手上}이냐?

공^供: 별로 상하^{上下}를 가히 칭할 것은 없으며 다른 것이 없이 곧 제등^{齊等}¹⁰⁸⁾한 사람이외다.

문^問: 송^宋이 다시 봉기할 때에 더불어 상의^{商議}하지 않았느냐?

공^供: 이 몸이 기포^{起包}할 때에 비록 더러 참석^{參席}하였으나 처음에는 좌^左도 가하고 우^右도 가하다는 말이었음외다.

문^問: 송^宋이 이 일에 만약 좌^左가 가^可하거나 우^右가 가^可하다는 말이 없었다면 거짓으로 운변^{雲邊}의 비밀^{秘密} 기별^{奇別}을 칭하여 다른 사람에게 글을 보낸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송^宋이 어떤 사람에게 글을 보내고 처음에 한 포^包를 일으킨 것은 비록 거슬러 헤아리기 어렵지만, 이 몸의 일에는 방관^{傍觀}했을 뿐입니다.

문^問: 송^宋과 네가 이미 같은 포^包가 아니라면 피차^{彼此} 행한 일을 반드시 서로 알지 못할 단서^{端緒}가 있을 것이다.

공^供: 그렇습니다.

문^問: 그렇다면 송^宋이 거짓으로 비밀^{秘密} 기별^{奇別}이라고 칭한 것을 네가 어찌 능히 밝게 알고 있느냐?

공^供: 송^宋은 처음부터 서울에 머문 일이 없었으며 또한 저명^{著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헤아려 말함외다.

문^問: 전후^{前後}의 공술^{供述}한 바를 합하여 보면 송^宋은 너에게 본디 서로 친한 자인데, 지난번에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또한 하나의 가히 의심할만한 것이로다.

공^供: 지난번 귀관^{貴館}¹⁰⁹⁾에서 공술^{供述}을 드릴 때 보여준 글은 부랑^{浮浪}한 자들과 관계

107) 운변(雲邊):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지칭함.

108) 제등(齊等): 동등(同等).

있는 것 같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바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는 자에게 보이
라고 대답하면 반드시 그 글의 내력_{來歷}을 물어보아도 의혹_{疑惑}을 분별하기 어려
울 것이기 때문에 잠시 거짓으로 고했을 뿐입니다.

문問: 그렇다면 너에게 이로운 것을 물어보면 대답하고 너에게 해로운 것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_可하냐?

공供: 이해_{利害}로써 마음을 삼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연으로 의혹_{疑惑}을 분별하기 어려
웠기 때문에 그러함이외다.

문問: 전라도_{全羅道} 사람들은 반복무상_{反覆無常}하다고 항상 일찍이 얻어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네가 고한 것은 또한 이러한 상투_{常套}를 답습_{踏襲}하고 있다. 그러하나 질문_{質問}
이 이미 오래되었고 정상_{情狀}이 스스로 드러났으니 비록 일언반사_{一言半辭}라도 반드시
거짓으로 고할 수는 없음이리라.

공供: 송희옥_{宋喜玉}의 한 가지 일은 비록 거짓으로 고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처음부터 한
조각의 말이라도 거짓을 꾸밈이 없음이외다.

문問: 지금 이 재판_{裁判}은 양국_{兩國}의 심판_{審判}이 걸려 있어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편벽_{偏僻}
되게 들어서 처리함이 없었다. 그러하나 감히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만들어내어
한 때를 넘겨 속이고자 한다면 탐관_{貪官}을 징치_{懲治}하고 간교_{奸巧}한 자를 출척_{黜陟}한
다는 말은 모두 가히 믿을 것이 아닐 뿐이다.

공供: 수개월 동안 잡혀 있었고 병_病 또한 몸을 묶어서 한 마디 말의 실수한 바가 없지
않았음이외다.

문問: 송_宋은 너에게 척족_{戚族} 친분이 없느냐?

공供: 처족_{妻族} 7촌_寸이외다.

문問: 기포_{起包}할 때 처음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

공供: 비록 처음 삼례_{參禮}에서 보았지만 실제로 포_包를 같이 한 일은 없음이외다.

문問: 처음 보았을 때에 무슨 의논을 한 일이 있느냐?

공供: 처음 보았을 때에 이르기를 이는 가히 행할 일이니 너 또한 추후_{追後}에 기포_{起包}하
여 위로 올라가라고 말함이러이다.

문問: 그 때는 어느 때오?

공供: 작년_{昨年} 10월 다시 기포_{起包}할 때이며 날짜는 상세히 알지 않음이외다.

문問: 네가 다시 기포_{起包}한 것은 무슨 일을 위함이오?

공供: 지난 번 고한 바에 이미 모두 하였나이다.

문問: 너가 송_宋과 더불어 삼례_{參禮}에서 서로 보았을 때에 혹시 운현_{雲峴}의 말을 칭탁_{稱託}
110)함이 없었느냐?

공供: 송_宋이 칭하기로 지난 번 운변_{雲邊}으로부터 내려와서 2월에 속히 위로 올라오는
것이 좋을듯하다는 말을 가르침으로 삼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몸이 서자_{書字}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몸이 문자_{文字}를 보여주지 않음을

109) 귀관_{貴館}: 일본영사관_{日本領事館}.

110) 칭탁_{稱託}: 어떠하다고 핑계를 댈.

책망_{責望}하였는데 횡설수설_{橫說豎說}함은 실로 황당_{荒唐}에 가까웠습니다. 또 운현궁_{雲峴宮}
을 가르침으로 삼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마땅히 행할 일은 내가 스스로
감당한다고 하였나이다.

문問: 삼례_{參禮} 기포_{起包}의 무리는 몇이었느냐?

공供: 4,000여 명이외다.

문問: 그 뒤 접전_{接戰}은 어느 날에 있었는고?

공供: 삼례_{參禮}로부터 출발한 뒤 20여 일에 처음 접전_{接戰}함이외다.

문問: 송_宋이 말한 운현궁_{雲峴宮}으로부터 내려왔다는 두 사람의 성명_{姓名}은 누구오?

공供: 그 때는 얻어 들어 알았으나 지금은 기억하기 어려움이외다.

문問: 두 사람의 성명_{姓名}은 비록 갖추어 듣지 못했지만 성이나 이름 사이에 끝내 가히
기억할 수 없느냐?

공供: 그 성_姓은 박_朴이나 정_鄭 같으나 아직 상세히 알지 않을 뿐입니다.

문問: 박_朴과 정_鄭이라면 박동진_{朴東鎭}과 정인덕_{鄭寅德}이 아니냐?

공供: 박동진_{朴東鎭}은 분명_{分明}하나 정_鄭은 아직 상세히 알지 않음이외다.

문問: 박_朴과 정_鄭이 송_宋을 만나서 무슨 말이 있었다고 말하였는고?

공供: 송_宋이 칭하기를 운현궁_{雲峴宮}을 또한 네가 올라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더이다.

문問: 송희옥_{宋喜玉}은 지금 어느 곳에 있노?

공供: 금번_{今番} 올라올 때에 들으니, 고산_{高山} 민병_{民兵} 111)에게 죽었다고 하였으나 상세
히 알지 않음이외다.

문問: 운현궁_{雲峴宮}의 효유문_{曉諭文}은 어찌 얻어 보았는고?

공供: 9월 태인_{泰仁} 본집에 있을 때에 접솔_{接率} 112) 한 사람이 베껴 와서 보여줌이외다.

문問: 그 때 한창 세력을 뻗어 기포_{起包}하였느냐?

공供: 그 때는 집에서 병을 치료하였는데 기포_{起包}에 뜻이 없음이외다.

문問: 그 도_道 안에 동도_{東徒}의 자요_{滋擾} 113)가 없었느냐?

공供: 그 때는 김개남_{金開男} 등이 여러 고을에서 소요_{騷擾}를 일으킴이외다.

문問: 여러 고을은 어느 고을인고?

공供: 순창_{淳昌}, 용담_{龍潭}, 금산_{錦山}, 장수_{長水}, 남원_{南原} 등이며 그 나머지는 상세히 알지 않
음이외다.

문問: 대원군_{大院君}의 효유문_{曉諭文}은 단지 한 차례 보았느냐?

공供: 그러함입니다.

문問: 효유문_{曉諭文}은 무슨 말로 꾸며져 있었노?

공供: “너희들이 지금 소란을 일으킨 것은 실로 수재_{守宰}의 탐학_{貪虐}과 중민_{衆民}의 원통_{冤痛}
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지금 이후에는 관_官의 탐학_{貪虐}을 반드시 징치_{懲治}하고 중
민_{衆民}의 원통_{冤痛}함을 반드시 펴 줄 것이니 각자 돌아가 생업을 편안히 하는 것이
가_可할 것이며 만약 따르지 않으면 마땅히 왕법_{王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함

111) 민병_{民兵}: 민보군_{民堡軍}.

112) 접솔_{接率}: 접_接에서 일을 보는 수하.

113) 자요_{滋擾}: 기노_{起鬧}. 소란을 일으킴.

이러이다.

문問: 효유문曉諭文에 도장의 자취가 있었느냐?

공供: 이 몸이 본 바는 베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나 관官에 도착한 원본原本에는 그것이 있었다고 하였고 방방곡곡坊坊曲曲에 붙여 내걸음이러이다.

문問: 방방곡곡에 내걸어 붙였다면 이는 누구의 행함이요?

공供: 관官으로부터 한 것이라 함이러이다.

문問: 효유문曉諭文은 누가 가지고 갔는고?

공供: 주사主事의 직함을 지닌 자가 가지고 갔다함이러이다.

문問: 그때 효유문曉諭文을 네가 보니 진짜더냐, 가짜더냐?

공供: 이미 관官에서 내걸어 붙였으니 어찌 이를 가짜로써 볼 것이요?

문問: 네가 이미 진짜로써 보았다면 어찌 다시 봉기를 일으켰느냐?

공供: 귀국貴國의 속내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그러함이외다.

문問: 이미 속내를 상세히 알아본 뒤에는 장차 무슨 일을 행할 계획이었노?

공供: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획을 행하고자 함이외다.

문問: 네가 봉기를 다시 일으킨 것은 대원군大院君의 효유문曉諭文을 믿지 못해서이냐?

공供: 이 전에 묘당廟堂의 효유문曉諭文이 한둘에 그치지 않았으나 끝내 실시되지 않아서 아래의 실정이 위에 도달하기 어려웠고 위의 은택恩澤이 아래에까지 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어코 일차一次로 서울에 이르러 민의民意를 상세히 개진開陳하고자 하려 함입니다.

문問: 이미 효유문曉諭文을 보고서 감히 일을 다시 일으킨 것은 실수한 바가 아니냐?

공供: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귀로 직접 듣지 않으면 가히 깊이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일을 다시 일으킨 것인데 어찌 실수한 바가 있겠소?

문問: 아까 고한 바에 실수한 바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일이요?

공供: 아까 실수한 바라고 칭한 것은 시사時事의 속내를 상세히 알지 못한 것을 가리킨 것이요 효유문曉諭文을 보고 안 보고를 이른 것은 아님이외다.

문問: 네가 다시 봉기한 것은 대원군大院君의 효유문曉諭文으로써 개화변開化邊¹¹⁴⁾이 압박壓迫한 바를 보고, 겸하여 운현궁雲峴宮이 너희들이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이 거사擧事를 행한 것이냐?

공供: 효유문曉諭文이 개화변開化邊의 압박壓迫인지 아닌지는 실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재봉기再蜂起의 거사擧事는 이 몸의 본심本心에서 나온 것이요, 또 비록 대원군大院君의 효유문字曉諭文字가 있었다 하더라도 깊이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힘써 재봉기再蜂起를 도모圖謀한 것이외다.

문問: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대궐大闕을 침범한 것은 어느 때에 들었노?

공供: 7~8월 사이에 들음이외다.

문問: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고?

공供: 청문聽聞¹¹⁵⁾이 낭자狼藉¹¹⁶⁾하였기 때문에 자연自然히 이를 앎이외다.

114) 개화변(開化邊):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등 내각(內閣)에 참여한 개화파(開化派)를 지칭함.

문問: 이미 창의倡義를 말한다면 들은 즉시 행할 것이지 어찌 10월까지 기다렸는고?

공供: 마침 이 몸에 병病이 있었고 허다許多한 사람들을 일시에 가지런히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겸하여 새 곡식이 아직 익지 않아서 자연自然히 10월까지 이름이외다.

문問: 대원군大院君이 동학東學에 관계된 일은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또 대원군大院君이 지금 위엄威嚴과 권세權勢가 없은즉, 네 죄罪의 경중輕重은 단지 이 장소에 있지 대원군大院君에 있지 않은데, 네가 끝내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고 대원군大院君의 암호暗護¹¹⁷⁾를 깊이 믿는 것 같으니 이는 과연 무슨 뜻이오?

공供: 대원군大院君이 다른 동학東學과 관계되어 비록 백십百十¹¹⁸⁾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이 몸은 처음부터 관계한 바가 없음이외다.

문問: 대원군大院君 동학東學과 더불어 서로 관계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아는 바인데 너만 홀로 듣지 못했느냐?

공供: 실로 아직 듣지 못한바 이외다.

문問: 대원군大院君이 동학東學 더불어 서로 관계되는 것은 처음부터 한 가지 일도 들은 바가 없느냐?

공供: 그렇소. 나에게 있는 것도 오히려 숨기지 않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의 일이요?

문問: 송희옥宋喜玉이 대원군大院君과 더불어 서로 관계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너도 또한 아느냐?

공供: 송희옥宋喜玉도 반드시 서로 관계가 없을 것이외다.

문問: 네가 어찌 그들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아느냐?

공供: 송희옥宋喜玉이 대원군大院君에 대한 증표證票가 있는지는 실로 상세히 알지 않으나 스스로 자세히 보니 반드시 서로 관계가 없음이외다.

아覽白

을미 3월 7일 전봉준 4차 문목 일본영사 심문

[乙未 三月初七日 全琫準 四次 問目 日本領事 審問]

문問: 너의 이름과 호號는 한둘이 아니던데 얼마나 되느냐?

공供: 전봉준全琫準 하나뿐입니다.

문問: 전명숙全明淑¹¹⁹⁾은 누구의 성명姓名이냐?

공供: 이 몸의 자字입니다.

문問: 전녹두全綠豆는 누구이냐?

공供: 그때 사람들이 지목한 이름이지 이 몸이 정한 이름이나 자字는 아닙니다.

115) 청문(聽聞): 퍼져 돌아다니는 소문.

116) 낭자(狼藉):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

117) 암호(暗護): 몰래 도움.

118) 백십(百十): 매우 많은 수.

119) 전명숙(全明淑): 전봉준. 『천안전씨세보(天安全氏世譜)』에는 숙(淑)이 숙(叔)으로 표기되어 있음.

문問: 너는 별호別號가 있느냐?

공供: 없습니다.

문問: 이 밖에 또한 별호別號 및 어릴 적의 자字의 칭호稱號는 없느냐?

공供: 없습니다.

문問: 네가 매번 사람들에게 글을 보낼 적에 이름으로써 채웠느냐, 자字로써 채웠느냐?

공供: 이름으로써 채웠습니다.

문問: 네가 작년 10월 다시 봉기한 날짜는 어느 날이냐?

공供: 10월 12일 사이 같으나 상세히 알지 않습니다.

문問: 삼례參禮에서 다시 봉기하기 전 너는 어느 곳에 있었느냐?

공供: 제 집에 있었습니다.

문問: 네가 전주全州 초토영招討營 병사兵士와 접전接戰하고 해산解散한 뒤에 너는 어느 곳으로 향했느냐?

공供: 10여 고을을 지나면서 귀화歸化를 권고하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問: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5월 초7~8일 사이입니다.

문問: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할 때 처음 도착한 고을은 어느 고을이냐?

공供: 처음 금구金溝로부터 김제金堤, 태인泰仁 등지等地입니다.

문問: 처음 금구金溝에 도착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금구金溝의 지경地境은 잠시 경과經過한 길이었으며 5월 초8~9일 사이에 김제金堤에 도착하였고 초10일 사이에 태인泰仁에 도착했습니다.

문問: 태인泰仁에 도착한 뒤에 경과經過한 바는 모두 어느 고을이냐?

공供: 장성長城, 담양潭陽, 순창淳昌, 옥과玉果, 남원南原, 창평昌平, 순천順天, 운봉雲峰을 경과經過한 뒤에 곧바로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問: 집으로 돌아간 것이 어느 달, 어느 날이냐?

공供: 7월 그믐, 8월 초 사이입니다.

문問: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닐 때 너 혼자 다녔느냐, 동행자同行者가 있었느냐?

공供: 기술騎率¹²⁰⁾이 아울러 20여 인이 있었습니다.

문問: 그 때 최경선崔慶善이 동행하였느냐?

공供: 그렇습니다.

문問: 손화중孫化中 또한 동행하였느냐?

공供: 손孫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문問: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할 때 손화중孫化中은 어느 곳을 향하였느냐?

공供: 그 때 손孫은 우도右道¹²¹⁾의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화歸化를 권고하였습니다.

문問: 손孫이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한 것은 너와 더불어 같은 날이냐?

120) 기술(騎率): 장수가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림.

121) 우도(右道): 전라우도(全羅右道). 전라도 서쪽 지대.

공供: 그렇습니다.

문問: 전주全州로부터 해산解散한 뒤에 너는 손孫을 보지 않았느냐?

공供: 4~5삭朔 동안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問: 4~5삭朔 뒤에는 어느 곳에서 만났느냐?

공供: 8월 그믐 사이에 순상巡相의 영令¹²²⁾를 가지고 나주羅州로 가서 민보군民堡軍을 해산解散하라고 권고한 뒤 돌아오는 길에 장성長城 땅에 이르러 비로소 서로 보았습니다.

문問: 손孫을 만난 뒤에 상의商議한 바가 있느냐?

공供: 그 때 이 몸이 바야흐로 순상巡相으로부터 별도로 부탁받은 일이 있으니 함께 영문營門¹²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상의하였습니다.

문問: 그렇다면 손孫은 무슨 말로 대답하였느냐?

공供: 바야흐로 병중病中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으니 병이 낫기를 기다린 후에 쫓아가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문問: 이 밖에 다른 상의한 바는 없었느냐?

공供: 그렇습니다.

문問: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대궐大闕을 범했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들었느냐?

공供: 7월 사이에 처음 남원南原 땅에서 들었습니다.

문問: 그렇다면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화歸化하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었느냐?

공供: 이는 도청도설道廳塗說¹²⁴⁾이었습니다.

문問: 이 말을 들은 뒤 무리들을 일으켜 일본日本을 공격攻擊하겠다는 거사舉事는 처음 어느 땅에서 의논하였느냐?

공供: 삼례역參禮驛입니다.

문問: 특히 삼례參禮에서 이 거사를 의논하였느냐?

공供: 전주全州 부중府中의 외곽外郭에서 저막邸幕이 조금 많은 곳으로는 삼례參禮만한 곳이 없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문問: 삼례參禮에 이르기 전에 혹 도회지都會地가 없었느냐?

공供: 원평院坪에 이르러 하룻밤 숙박을 거쳐 곧바로 삼례參禮에 이르렀습니다.

문問: 집으로부터 처음 출발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10월 초순 사이입니다.

문問: 네가 삼례參禮를 향할 때 동행同行한 자는 누구이냐?

공供: 동행한 자는 없습니다.

문問: 길을 가는 중에 또한 서로 만나 동행한 자도 없었느냐?

공供: 없습니다.

122) 순상(巡相)의 영(令): 순상(巡相)은 전라감사(全羅監司)를 지칭한다. 전봉준은 후임 전라감사인 김학진(金鶴鎭) 사이에 집강소 설치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그래서 전봉준은 여러 고을을 순행했으며 남원에서 1894년 7월 15일 김개남 손화중과 함께 관민상화(官民相和)의 계획을 논의했다. 황현, 『오하기문』 갑오년조 참조.

123) 영문(營門): 전라감영(全羅監營).

124) 도청도설(道廳塗說): 거리에 떠도는 소문.

문問: 그 때 최경선崔慶善은 동행하지 않았느냐?

공供: 최崔는 추후追後에 왔습니다.

문問: 삼례參禮에 이르러 누구 집에 모였느냐?

공供: 저막邸幕일 뿐입니다.

문問: 삼례參禮 땅에 본디 아주 친한 집이 있었느냐?

공供: 처음부터 아주 친한 자가 없을 따름입니다.

문問: 삼례參禮의 호수戶數는 얼마나 되느냐?

공供: 100여 호戶입니다.

문問: 네가 거하던 근처近處에는 100여 호戶의 시골 마을이 없지 않을 터인데 특히 여기
에 모인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이 땅은 도로道路가 네 곳으로 통하고 역촌驛村이기도 했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문問: 최崔가 삼례參禮에 이른 뒤 함께 머무른 것이 며칠이냐?

공供: 5~6일 함께 머문 뒤 곧바로 광주光州·나주羅州 등지等地로 향하였습니다.

문問: 무슨 까닭으로 인하여 광주光州·나주羅州 등지等地로 향하였느냐?

공供: 기포起包의 일 때문입니다.

문問: 최崔가 광주光州·나주羅州로 간 것은 네가 시킨 것이냐?

공供: 이 몸이 시킨바 아니요, 다만 그가 광주光州·나주羅州에 일찍이 친지親知가 많아서
기포起包가 쉬웠을 따름입니다.

문問: 그 때 삼례參禮에 모두 모였을 때 동도東徒 중에 가장 저명著名한 자가 누구이냐?

공供: 금구金溝의 조진구趙鎭九, 전주全州의 송일두宋一斗와 최대봉崔大奉 등 몇 사람이 소위所謂
가장 저명著名한 자였으며 그 나머지 허다許多한 자들은 지금 모두 기억하기 어렵
습니다.

문問: 그 때 삼례參禮에 소위所謂 의병義兵으로 모인 자는 몇 명이나 되었느냐?

공供: 4,000여 명이었습니다.

문問: 이 무리를 데리고 처음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처음 은진恩津, 논산論山으로 향하였습니다.

문問: 논산論山에 도착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지금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問: 어찌 대략 기억할 도리가 없느냐?

공供: 가량假量 10월 그믐 사이입니다.

문問: 논산論山에 이르러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논산論山에 이른 뒤에 또한 널리 소모召募¹²⁵⁾의 일이 있었습니다.

문問: 이곳으로부터 다시 어느 땅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곧바로 공주公州를 향하였습니다.

문問: 공주公州에 도착한 것은 어느 날이냐?

공供: 동짓달 초6~7일 사이 같으나 상세히 알지 않을 따름입니다.

125) 소모(召募): 농민군(農民軍)을 불러 모음.

문問: 공주公州에 이른 뒤에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공供: 공주公州에 이르지 못하고 접전接戰하였으나 끝내 패배敗北하였을 따름입니다.¹²⁶⁾

문問: 네가 매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반드시 친서親書로써 하였느냐, 설혹設或
대서代書로써 하였느냐?

공供: 혹은 친서親書였고 혹은 대서代書였습니다.

문問: 혹 대서代書할 때 반드시 너의 도서圖書¹²⁷⁾로써 채웠느냐?

공供: 피봉皮封에는 많이 도서圖書로써 채웠으나 혹은 이를 쓰지 않은 예가 많습니다.

문問: 네가 삼례參禮에 있을 때 네가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 매우 많은데 이것이 모두
친서親書였느냐, 아니면 대서代書였느냐?

공供: 모두 통문通文¹²⁸⁾으로써 보낸 것이지 사사로운 서간書簡으로써 한 것이 아니며
오직 손화중孫化中이 있는 곳에만 글을 보냈을 뿐입니다.

문問: 처음부터 한 자李라도 사사로운 서간書簡을 사람들에게 보낸 적이 없느냐?

공供: 만약 그 서간書簡을 본다면 가히 알겠지만 지금은 상세히 알지 않을 따름입니다.

문問: [영사領事가 서간書簡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친서親書이냐, 대서代書이냐?

공供: 대서代書입니다.

문問: 누구로 하여금 대서代書하게 하였느냐?

공供: 접주接主의 필적筆跡 같으나 지금 그 사람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問: 일찍이 네가 최경선崔慶善으로 하여금 대서代書의 일을 하도록 하였느냐?

공供: 최崔는 글에 능하지 않는 자입니다.

문問: 이 서찰書札은 삼례參禮로부터 나온 것이냐?

공供: 그렇습니다.

문問: 이 서찰書札의 달과 날은 분명히 9월 18일인즉 어찌 10월 삼례參禮의 회합會合에서
나올 수 있느냐?

공供: 지난 공술供述에서 10월이라고 하였는데 9월인 것 같습니다.

문問: [영사領事가 또 한 서간書簡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는 친서親書이냐, 대서代書이냐?

공供: 이 또한 대신한 것입니다.

문問: 그 서찰書札은 또한 대신 누가 쓴 것이냐?

공供: 이 또한 접주接主로 하여금 쓰게 한 것이나 지금 그 사람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
다.

문問: 오늘 너의 공술供述한 바가 반드시 일일이 바른대로 고한 연후에야 죄안罪案이 가
히 속히 결정될 것이며 만약 많은 단서端緒를 거짓으로 고한다면 일이 지리支離해
질 뿐만 아니라 또한 너의 몸에 해害가 많이 있을 것이다.

공供: 월月과 일日은 과연 상세하게 기억하기 어려우나 그 나머지 범상凡常한 일은 어찌
일호一毫라도 속여 고하겠습니까?

126) 충청감영을 점령하기 위해 공주성을 향해 진격하다가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패배한 사실을 말한다.

127) 도서(圖書): 도장(圖章)과 수결(手決).

128) 통문(通文):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글.

- 문問: 대서代書할 때 반드시 정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찌 가히 알지 못하느냐?
 公供: 그 때 이 몸이 본디 필적筆跡이 졸렬拙劣하여 매번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代書하도록 하였으나 본래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文問: 이 두 서찰書札은 모두 네가 시킨 바이냐?
 公供: 그렇습니다.
 文問: 삼례參禮에서 규합糾合한 일은 모두 너의 손에서 나왔느냐?
 公供: 그렇습니다.
 文問: 그렇다면 모든 기포起包에 관한 것은 모조리 네가 주도主導한 바이냐?
 公供: 그렇습니다.
 文問: [영사領事가 또 한 서간書簡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또한 네가 시킨 것이냐?
 公供: 그렇습니다.
 文問: [영사領事가 또 한 서간書簡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또한 네가 시킨 것이냐?
 公供: 그렇습니다.
 文問: 지난 날 공술供述한 바, 너와 김남金男¹²⁹⁾이 처음부터 상관相關이 없다고 말했으나 지금 이 서간書簡을 보니 그간 많은 상관이 있음은 어찌된 것이냐?
 公供: 김金은 이 몸이 왕사王事¹³⁰⁾에 힘을 합하자고 권고하였지만 끝내 들어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의相議한 바 있으나 끝내 절대로 상관相關하지 않았습니다.
 文問: [영사領事가 작은 조각으로 된 한 기록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두 종이의 필법筆法은 한 사람의 필적筆跡이나 앞의 글은 네가 한 것이라고 공술供述하고 지금의 글은 어찌 알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公供: 지금 이 글은 이 몸이 한 바가 아닙니다.
 文問: 아까 삼례參禮의 일은 모두 너에게서 나왔다고 말했으나 지금 보여준 이 녹편錄片¹³¹⁾이 너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모호模糊함에 그친다.
 公供: 녹편錄片 중에 서학徐鶴이라 한 것은 서병학徐丙鶴¹³²⁾입니다. 학鶴은 이 몸과 더불어 절대로 왕래往來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시킨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文問: 동도東徒 중에 접주接主를 차출差出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公供: 모두 최법헌崔法軒¹³³⁾에게서 나옵니다.
 文問: 네가 접주接主가 된 것 또한 최崔가 차출한 것이냐?
 公供: 그렇습니다.

129) 김남(金男): 김개남(金開男)을 지칭함.

130) 왕사(王事): 임금의 일.

131) 녹편(錄片): 대강의 내용만 간단하지 적은 쪽지.

132) 서병학(徐丙鶴): 서병학은 최시형의 직계로 1893년 봄 보은집회를 열었을 때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 뒤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자 관군의 밀정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뒤 한성부(漢城府) 도사(都事)가 되었다. 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참조.

133) 최법헌(崔法軒): 최시형(崔時亨)을 지칭함.

- 文問: 동학접주東學接主는 모두 최崔에게서 나왔는가?
 公供: 그렇습니다.
 文問: 호남湖南과 호서湖西 일체一切 똑같이 그러하냐?
 公供: 그렇습니다.
 文問: 도집都執, 집강執綱의 소임所任과 같은 것에 이르러도 또한 모두 최崔가 차출한 것이냐?
 公供: 비록 최崔에게서 많이 나왔으나 혹은 접주接主 등이 차출差出한 바 있습니다.

아림白
(번역: 이이화)

부록 2. 전봉준 판결선고서

三十七 全琫準(泰仁)

전라도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전봉준(全琫準). 나이 41세

위에 기재된 전봉준에 대한 형사피고사건(刑事被告事件)을 심문해보았더니, 피고는 동학당이라고 하는 비도(匪徒)의 거괴(巨魁)이고 접주(接主)로 불린다. 개국(開國) 501년 1월에 전라도 고부(古阜) 군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이 조병갑(趙秉甲)이 처음 임소(任所)에 와서 매우 가혹한 정치를 하여 해당 지방의 인민(人民)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해 11~12월쯤에 군수에게 가혹한 정치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잡혀 옥(獄)에 갇히게 되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청원(請願)을 하였으나 바로 그것을 물리쳐서 조금도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민들이 매우 분하여 여겼다. 그래서 수 천명이 모여 거사(擧事)를 하려고 할 때에 피고도 마침 그 무리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추대하여 모주(謀主), 주모자로 삼았다. 지난해 3월 상순(上旬)에 그 무리를 인솔하여 고부(古阜) 외촌(外村)의 창고를 열고 돈과 곡식을 내어 모두 인민(人民)에게 배급하였다. 1~2 곳에서 소요를 한 뒤에 한번 해산을 하였다가 그 뒤에 안핵사(按覈使)인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가 이용태(李容泰)가 고부에 들어와서 지난번의 소요가 모두 동학당의 소행이라고 여겨 동학의 수도(修道)하는 사람들을 잡아 살육을 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가 다시 그 무리를 규합하여 병사를 모을 때에, “불응하는 자는 불충불의(不忠不義)한 사람이니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위협하여 4,000여명의 무리를 얻었다. 각각 소유한 흉기(凶器)를 지니고, 식량은 그 지방의 부민(富民)에게서 거두어 들여 그 해 4월 상순쯤에 피고가 직접 무리를 인솔하여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부·태인·원평(院坪)·금구(金溝) 등지를 갈 때에 전라 감영의 포군(砲軍) 10,000여명이 동도(東徒)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한번 고부로 물러갔다가 하루밤낮을 싸운 뒤에 영문(營門)의 포군을 격파하였다. 앞으로 전진하여 정읍(井邑)·흥덕(興德)·고창(高敞)·무장(茂長)·영광(靈光)·함평(咸平)을 지나 장성(長城)에 이르러서 경군(京軍) 700여명을 만나 격파하고, 다시 밤낮으로 행진하여 4월 26~27일에 관군(官軍)보다 먼저 전주성(全州城)에 들어갔는데, 전라 감사는 벌써 도망하여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에 초토사(招討使) 홍재희(洪在義)가 홍재희(洪在義)가 군사를 데리고 성 아래에 가까이 와서 성밖에 큰 포를 놓고 공격하니 피고가 그 무리와 함께 응전(應戰)을 하여 제법 관군을 괴롭게 하였다. 이에 초토사가 격문(檄文)을 지어 성안으로 던지며, “피고들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렸는데, 피고들이 27조목을 가지고 임금에게 올려주기를 청원하기를,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국결(國結)

을 늘이지 말 것, 보부상(裸負商)의 폐단을 금지할 것, 도내(道內)의 환전(還錢)은 전 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浦口)에서 잠상(潛商)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동포전(洞布錢)은 호(戶)마다 봄과 가을에 2냥으로 정할 것,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官爵)을 팔며 국권(國權)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관장(官長), 수령이 된 자가 해당 경내(境內)에서 장사(葬事)를 치루거나 전답(田畓)을 사지 못하게 할 것, 전세(田稅)는 예전대로 할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줄일 것, 포구어염세(浦口魚鹽稅)를 혁파할 것, 보세(湫稅)와 궁답(宮畓)은 시행하지 말 것, 각 읍(邑)의 수령이 백성의 산에 투장(偷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초토사가 바로 그것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 해 5월 5~6일에 흔쾌히 무리를 해산하여 각각 생업에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그 때에 피고는 최경선(崔慶善, 본명 永昌) 이하 20여명을 데리고 전주에서 금구·김제·태인·장성·담양·순창·옥과·창평·순천·남원·운봉 등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하다가 7월 하순에 태인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그 거류민(居留民)을 나라 밖으로 몰아낼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전주 근처의 삼례역(參禮驛)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 해 9월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起兵)하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그리고 진안(鎭安)에 사는 동학 접주 문계팔(文季八)·전영동(全永東)·이종태(李宗泰), 금구에 사는 접주 조준구(趙駿九), 전주에 사는 접주 최대봉(崔大奉)·송일두(宋日斗), 정읍(井邑)에 사는 손여옥(孫汝玉), 부안(扶安)에 사는 김석운(金錫允)·김여중(金汝中)·최경선(崔卿宣, 위의 慶善)과 동일인·송희옥(宋憲玉) 등과 모의하여 지난해 3월 이후에 피고와 함께 일을 했던 비도의 괴수 손화중 이하 전주·진안·흥덕·무장·고창 등지의 원근(遠近) 각 지방의 인민에게 격문을 돌리거나 사람을 보내 유세를 하였다. 전라우도에서 4,000여명의 군사를 모아 곳곳의 관아에 들어가서 군기(軍器)를 강제로 빼앗고, 각 지방의 부민(富民)으로부터 돈과 곡식을 징발하여 삼례역을 떠나가면서 무리를 모집하였다. 은진(恩津)과 논산(論山)을 지나 무리가 10,000여명이 되었고, 그 해 10월 26일쯤에 충청도 공주에 이르렀는데, 일본군이 먼저 공주성을 점거하고 있어 전후 2차례 싸웠다가 모두 크게 패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일본군을 더 치려 하였으나 일본군이 공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그 사이 피고의 포(包)중에서 〈병사들이〉 점점 도망가고 흩어져서 수습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쩔 수가 없어 한번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군사를 모아 전라도에서 일본군을 막으려 하였으나 응모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의한 3~5명과 의논하여 각각 변복(變服)을 하고 조용히 경성(京城)으로 들어가 정탐을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상인(商人)처럼 하고 혼자 상경(上京)하려고 태인을 떠나 전라도 순창을 지날 때에 민병(民兵)에게 잡힌 것이었다.

위에 적은 사실은 피고와 함께 모의한 손화중(孫化中)·최경선(崔慶善) 등이 자백한

공초(供招) 및 압수한 증거 문서에 분명하다. 그 행위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베라”고 하는 형률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29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